

研究資料

83 - 2

第13次國際勞動統計專門家會議

雇傭統計概念定義(案)

1983. 7.

통계청자료실



B0023933

調查統計局 社會統計課

研究資料

83 - 2



第13次國際勞動統計專門家會議

雇傭統計概念定義(案)

1983. 7.

調查統計局 社會統計課

目 次

머리말.....	3
國際勸告案의 役割.....	3
沿 革.....	5
改正의 必要性.....	7
報告書의 範圍와 編制.....	12
第 1 章 現行國際勸告案.....	15
勞動力, 就業 및 失業統計에 關한 決議文	
— 第 8 次 ICLS (1954 年)	15
不完全就業 및 人力의 不完全活用度 測定 및 分析에	
關한 決議文—第 11 次 ICLS (1966 年)	20
第 2 章 各國의 慣行.....	23
産業化된 市場經濟國家에 있어서의 慣行.....	23
中央集權的 經濟體制 國家에 있어서의 慣行.....	26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慣行.....	29
各國 統計機關이 採擇하거나 試圖하였던 概念定義.....	32
第 3 章 國際比較性.....	43
國際比較性의 目的과 利用.....	43
國際比較性의 問題.....	44
各國 및 諸國際機構에서 使用되는 方法.....	47
區劃設定接近法	56

第 4 章 就業의 樣相과 測定目的	61
就業의 各種樣態	61
測定目的과 基本用途	64
第 5 章 體系, 概念 및 定義	68
經濟活動人口	69
賃金 및 非賃金勞動力	73
就業者, 有業者 및 關聯範疇의 計測	78
失業者와 無業者의 計測	85
不完全 就業者(可視的)와 業務量의 不充分度	93
就業과 所得에 關한 統計	97
第 6 章 主要特性과 分類	106
人口學的 特性	106
就業者 및 有業者의 特性	108
失業者와 無業者의 特性	113
非經濟活動人口의 特性	116
特殊集團에 關한 追加的 統計	120
第 7 章 資料의 蒐集과 公表	129
範圍, 資料源 및 蒐集計劃	129
測定上の 問題點	135
公 表	138
附錄・決議案 草案	143

머 리 말

1. 雇傭과 이와 關聯된 統計들은 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가 指向하는 目標와 目的達成을 促進하기 위한 많은 情報中에서 優位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ILO의 目標와 目的은 特히

(a) 完全雇傭을 이룩하고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며

(b) 各職業에 雇傭된 사람들에게 技術이나 業務遂行上 必要한 것을 充分히 充足시켜 주고 모든 共通的인 福祉에 最大限 貢獻할 수 있도록 世界的인 行事に 參與하는 國家들을 鞭撻할 義務를 包含하고 있다. 이러한 廣範한 目標를 向한 決定을 啓導하기 위하여 雇傭과 이와 關聯된 統計들은 現在의 雇傭條件이나 有關雇傭政策을 反映해야 한다. 이러한 條件이나 關聯雇傭政策은 時間의 흐름과 더불어 當然히 進歩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雇傭과 이와 關聯된 統計에 관한 ILO의 勸告도 지난 50年間に 많은 改正을 해왔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發展과 새로운 要求를 反映시켜왔다.”

國際勸告案의 役割

2. 雇傭과 이와 關聯된 統計에 關한 國際的 勸告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基本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이다.

國家統計의 發展을 위한 指針을 提供하며 統計의 國際間 比較性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國家統計의 發展

3. 한나라의 統計當局 특히, 統計의 發展이 덜된 나라들은 國際的인 勸告를 自國의 統計發展을 위한 指針으로서 利用한다. 따라서 國家統計의 發展은 各國들이 經驗한 結果나 分析이라던가 國際勸告를 利用한 結果에 對한 評價나 指針들을 相互交換함으로써 보다크게 促進된다. 統計發展이란 適切한 費用으로 資料를 蒐集, 公表하고 分析하는것을 包含하며, 現存하는 行政的 基盤으로부터 나오는 資料들을 보다 集約적으로 利用하는 것도 包含된다. 따라서 雇傭이나 이와 關聯된 統計에 關한 國際勸告는 보다 包括的이어야 하며 同時에 量과 質·出處와 費用 등을 감안해야 한다.

國際比較性的 向上

4. 國際勸告의 두번째 機能은 國際間的 比較성을 向上시키는 데 있다. 國際相互間에 比較가 可能한 雇傭이나 이와 關聯된 統計는 단지 國家間에서 뿐만 아니라 一國內에서의 利用이나 研究의 必要性 등 여러가지 多樣한 目的에 쓰인다. 특히 國際比較성은 經濟나 社會的 發展段階가 같거나 틀리는 隣接國이나 또 다른 나라들과의 相對的인 位置를 相互比較하며, 各國이 雇傭政策을 實施하여 經驗한 것을 比較하는 데 있다. 國際間에 比較possible한 統計는 地域別이나 全國的 開發政策을 樹立하고 評價하거나, 各國마다 利用possible한 人的 資源의 合理的인 利用을 위한 政策樹立에 도움이 된다. 더구나 國際勸告나 指針은 나라마다 틀릴 수 있는 用語나 慣行등을 標準化

하는데 必要한 基準의 役割도 한다.

沿 革

第 2 次 國際勞動統計官會議(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 ICLS) (1925 年)

5. 雇傭과 이와關聯된 統計에 관한 國際勸告를 作成하기 위한 ILO의 努力은 第 2 次 ICLS(1925 年)에부터 始作되었다³⁾. 이 會議의 重要한 關心事中的의 하나는 失業의 위험으로 부터 保護하여야 할 勤勞者數를 確認하기 위한 失業者의 把握과 失業保險金을 받는 失業者數와 그들에게 支給된 年間保險額 등을 把握하는 것 等이다.

第 6 次 ICLS (1947 年)

6. 會議案件에 就業과 失業統計에 관한 問題를 包含한 다음 會議은 1947 年 第 6 次 ICLS였다⁴⁾. 이 會議에서의 焦點은 社會的 問題로서의 失業으로부터 第 2 次世界大戰後의 再建을 위한 健全한 經濟計劃의 達成을 重要課題로 하는 雇傭問題로 돌려졌다. 同時에 새로운 概念과 方法이 開發되어 就業과 失業을 計測할 수 있도록 하였다. 一定期間內에 各者가 한 活動狀況에 따라 定義되는 “勞動力” 概念이 導入되었는데 이것은 1938 年の 國際聯盟統計專門家會議에서 센서스資料의 國際比較可能性을 提高시키기 위해 勸告된 “有業者人口 (Gainfully Occupied Population)” 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標本調査 方法의 開發은 보다 廉 費用으로 母集團이나 이의 特性을 廣範하게 包含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터놓았다.

第 8 次 ICLS (1954 年)

7. 第 6 次 ICLS 會議로부터 7 年後에 開催된 第 8 次 ICLS (1954 年)의 案件으로서 雇傭과 失業統計에 관한 問題가 또 다시 包含되었다. 이 會議의 重要關心事는 第 6 次 ICLS 에서 採擇된 雇傭과 失業統計에 관한 決議文에서 提示된 概念定義와 方法등을 再評價하는 것이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決議文을 實行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難點에 逢着하였으며 더구나 第 6 次 ICLS 自體가 國際勸告에 관하여 보다 충분한 知識과 經驗을 터득할 수 있도록 再檢討 해야 한다는 것을 提議하였다. 第 8 次 ICLS 는 勞動力, 就業 및 失業등에 관한 勸告案을 採擇하였는데 이것은 아직 有効하다⁵⁾

第 11 次 ICLS (1966 年)

8. 經濟 發展과 成長 및 不適切한 雇傭問題라던가 低水準의 人力 活用, 특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이러한 問題들에 대한 證 據하는 관심을 考慮하여 ILO 는 여러 가지 形態의 不完全就業을 計 測하고 分析하는 問題를 論題로 採擇하였다. 이 論題는 6 次와 8 次 ICLS 에서 討議되었고 第 9 次 ICLS (1957 年)에서 이 問題에 관한 國 際基準을 設定하기 위한 몇 가지 節次를 ^가 勸議案으로 採擇하였다. 이 勸 告는 1963 年에 開催된 不完全就業의 計測을 위한 專門家會議에서 檢討되었는데, 이 會議에서는 不完全就業現象의 複雜性과 어떠한 環境 下에서도 適用될 수 있는 單一的인 計測方法의 마련이 어렵다는 點 과 國際적으로 比較 가능한 統計를 作成하기가 어렵다는 點 등이 強

調되었다. 1966년에 開催된 第11次 ICLS에서 各國과 國際的 經驗을 土臺로한 不完全就業의 여러 가지 局面을 檢討하고 不完全就業과 人力의 不完全活用に 관한 計測과 分析에 대한 決議案을 採擇하였다. 이 決議案은 1957年の 決議案을 代身하였으며 現行 國際勸告로서 存續하고 있다.

改正의 必要性

9. 지난 15餘年間 새로운 條件이나, 새로운 關心事, 새로운 慣行이 出現하여 現存 國際勸告의 몇 가지 側面을 再評價하고 明瞭化하며 擴張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었음을 다시 認識케 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4 가지 主要 進展狀況이 나타났다.

雇傭環境의 變化

10. 오늘날 漸增하는 雇傭環境의 惡化 특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경우라던가, 産業化된 나라들에 있어서의 勞動市場의 特性變化라던가, 國際間的 勞動力 移動의 規模 등에 관한 關心이 提高되고 있다. 이러한 關心은 經濟 및 人口學的 側面과 關係가 있다. 이것은 勞動力의 構成과 크기 및 雇傭機會의 隔差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側面은 技術變化, 心理的 要因, 社會保障制度 등에 의하여 臨時雇傭, Part-time 雇傭과 같은 새로운 形態의 就業을 發生하게 하였고, 일거리에 대한 展望이 없어서 求職을 斷念하는 失望失業과 같은 形態의 失業도 發生시킨다는 것이다.

11. 또한 주로 開發途上國의 郡部地域이나 市部の 非組織化된 部門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雇傭機會를 가지고서는 그들의 經濟的 安定을 保障할 수 없는 많은 個人이나 家口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點이다. 勿論 이러한 問題는 오늘날 널리 認識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느냐 하는 것에 關하여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現存하는 國際勸告를 再檢討하여 이와같은 特殊한 雇傭條件이나 傾向과 이러한 것에 對處하기 위한 決定을 하는데 必要한 資料들을 提供할 必要性이 있다.

女性の 役割

12. 지난 10年間に 걸쳐 全世界人口의 절반以上을 차지하는 重要한 社會的 힘이 出現한 것을 볼 수 있다. 女性の 움직임이 그것인 바 이것은 社會·經濟的 生活 특히 經濟活動과 勞動力의 組織에 影響을 주었다. 이러한 思考가 統計에 示唆하는 것은 現存하는 概念과 方法論을 再檢討하여 女性들이 집안이나 집밖에서 經濟活動에 參與하는 것에 關한 概念化라던가 量의 計測을 向上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示唆는 情報基盤을 擴充하여 女性과 關聯된 特別한 雇傭의 問題를 보다 正確하게 反映하는 別途의 統計를 提供해야 한다는 點이다.

方法論的·技術的 發展

13. 또 하나의 發展은 調查技術理論의 發展과 電算機의 導入 및 그 利用의 擴大이다.

改善된 調査技術을 가지고 雇傭이나 이와 關聯된 特性을 計測함으로써 現行概念이나 定義上的 不適合性 특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雇傭事情과 一定範疇에 屬하는 勞動者에 適用할 때 생기는 不適合性を 是正할 수 있게 하였다. 時系列로 統計를 比較할 때, 많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概念上的 制約때문에 그들의 여러가지 體驗을 通하여 概念이나 定義를 빈번히 뜯어고친다는 것이 重要한 論點으로 浮上되었다.

14. 더우기 電算機를 利用할 수 있는 潛在性과 可能性이 커짐으로 해서 보다 細分되고 包括的인 資料라던가 統計目的의 行政記錄을 보다 많이 活用할 수 있는 可能性이 增加되었다.

15. 또 다른 特徵은 國家的 統合家口調査 發展計劃에 의한 統合調査計劃의 發展을 들 수 있다.⁶⁾ 이러한 計劃에서는 雇傭統計資料만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고 社會經濟的 變數 例를들면 所得과 分配, 生産的인 資産의 所有形態, 家內産業을 包含하는 家口單位生産活動이라던가, 人口學的 特性 및 移動, 家口와 家族의 構成, 女性과 어린이들의 地位, 作業條件과 健康條件, 教育水準, 文盲率, 交通施設과 서비스에의 接近이나 利用등과 함께 다루어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國家間 相互依存性的의 增加

16. 國家間的 相互依存이나 大陸間·地域間 協力體制가 增加함으로써 國際比較가 可能的인 就業과 失業統計에 관한 需要가

보다 많이 늘어났다. 國際比較性的 向上은 그동안 雇傭 및 關聯 統計에 대한 國際勸告의 主要 目的으로 되어 왔으나 지난날에 비하여 보다 절실하게 要求되고 있다. 이것이 示唆하는 바는 統計의 國際比較를 容易하게 하고 洗鍊되게 하기 위하여 就業과 失業에 관한 現存標準定義를 再檢討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LO 報告書와 會議

17. 勞動力, 就業, 失業 및 不完全就業統計에 관한 現存 國際勸告를 現實化해야 할 必要性은 ILO와 其他 國家 및 國際機構의 많은 會議나 報告書를 통하여 論議되어 왔다.” ILO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雇傭關係使節團의 報告書⁸⁾ 나 世界雇傭會議의 決議文(1976年)⁹⁾ 등은 雇傭의 一般的인 問題와, 都市地域의 非組織化된 部門, 특히 低所得層에 대한 雇傭計劃이나 政策을 樹立하는 데 必要한 適切한 統計資料가 그리 많지 않다는 點에 格別한 關心을 가져왔다.

18. 第 213 次 小會議(1980.5~6)에서 ILO의 理事會는 改正해야 할 必要性을 認定하고 다음과 같은 事項에 관하여 專門家會議를 開催할 것을 決定하였다.

“勞動力과 就業, 失業統計에 관한 定義, 分類, 對象, 特性 등에 관한 것을 現實化하고 改正하는 데 必要한 助言을 한다.” 專門家會議는 Geneva에서 1981年 4月 6日~10日間에 開催되었다. 이 會議에는 世界各地에서 10명씩 專門家들이 參席하였고 이 會合 以前에

ILO事務局과 아프리카, 아시아 및 太平洋, 南美地域擔當 3名の 家口 調査專門家들에 의하여 作成한 經濟活動人口를 計測하는 各國의 慣行이라던 가 經驗을 記述한 7種의 報告書가 作成되었다. 이 會議에서는 失業이나 就業 및 不完全就業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한 概念, 定義, 計測方法, 分析方法 등에 관한 各國의 經驗과 慣行을 檢討하였다. 이 過程에서 特히 開發途上國의 農村地域에 있어서의 家內事業部門에 대한 失業과 不完全就業概念을 包含하는 勞動力接近方法의 適用에 관하여 疑問이 提起되었다. 勞動力接近方法이 擇하고 있는 몇 가지의 假定과 慣行, 예를 들면 優先順位權에 관한 基準과 無報酬就業者의 處理 등에 관한 疑問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適切한 補充資料를 찾아서 各 經濟部門과 關聯되는 資料들을 把握할 수 있도록 하고 基本資料의 質에 대하여 適切한 關心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點이 提示되었다. 就業과 失業 및 特定形態의 不完全就業에 관한 補完적인 定義를 다루기 위하여, 補完적인 目的에 利用하기 위한 資料의 다른 總合 集計 方法인 區劃設定接近方法 (Building - block Approach)에 관하여 討議되었다. 이 討議의 內容에는 先入感에 의한 定義에 빠지지 않고 또 調査의 結果를 分析目的을 爲하여 充分히 細分할 수 있는 資料蒐集方法에 대해서도 考慮되었다.

19. 이 專門家會議報告書는 1981年 5월에 ILO理事會에 의해 報告되었고 事務總長이 “勞動力, 就業 및 失業에 관한 統計改善을 爲한 改訂國際勸告抄案을 第13次 ICLS以前에 提出할 것”을 指示하였다. 同 報告書는 專門家會議의 審議와 研究를 거쳐 作成되었다.

報告書의 範圍와 編制

範 圍

20. 이 報告書의 主要關心事는 各國의 統計機關들이 蒐集하고 發表하여야 할 統計의 概念·定義·範圍·質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計測에 관한 論題도 包含되어 있다. 會議가 끝난후 統計에 관한 資料의 蒐集·處理 및 方法과 分析에 관한 모든 分野를 包含하는 冊子를 作成할 豫定이다.

編 制

21. 이 報告書에 나머지 部分은 두개의 部門으로 編制되어 있다. 第一部는 第I章에 現行 國際報告案, 第II章에 各國의 慣行, 第III章에 國際比較方法을 論하고, 第二部에서는 第IV章에 就業의 樣相과 計測目的을 主로 記述하고 第V章에서는 改正概念과 定義에 관한 骨格을 記述하였으며, 第VI章에서는 主要特性和 分類 그리고 第VII章에서는 資料蒐集과 公表에 관하여 다루었다. 會議에서의 動議案件의 要點들을 抄案하여 報告書의 附錄에 收錄하였다.

註 記

(1) ILG : ILO 規則과 ILC (國際勞動會議 1980年 Geneva)의 議事規則, p.23.

(2) ILO : 勞動統計에 관한 國際勸告案 (1976年 Geneva)
pp. 25 ~ 36.

(3) 맨 처음 討議가 시작된 것은 1923年 第1次 ICLS에서 였으며 여기에서 1911年 國際失業協會 (International Unemployment Association)와 國際統計協會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가 戰爭때문에 中斷했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集中的으로 努力할 것을 提示하였다.

(4) 한편 國際聯盟의 統計專門家會議에서 “有業者人口”라고 불러주는 人口의 定義를 包含한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센서스資料의 國際比較性을 向上시키기 위한 動議를 提起하였다. 詳細한것은 國際聯盟의 有業者人口統計：統計專門家會議에서 勸獎된 定義와 分類 (1938年 II.A.12), 統計的 方法에 관한 研究와 報告, No I (1938年 Geneva) 를 參照.

(5) 1966年과 1979年에 UN의 統計委員會는 人口센서스에 관한 原則이나 勸告에 經濟活動人口의 計測을 위하여 作成한 定義와 根本的으로는 같은 定義를 採擇하였다.

(6) 全國的 家口調查事業 (The National Household Survey Capability Programme)은 UNDP 및 世界銀行이 合同支援하여 開發途上國들로 하여금 永久的이고 効率적인 全國的 調查機構를 設置케 하여, 그들自身の 開發計劃이나 政策 및 事業遂行에 必要한 集約적인 統計의 繼續的 供給을 可能케 하는 重要하고도 組織적인 事業이었다. 詳細한것은 UN: 全國家口調查事業：內容說明參照 (New York 1980年)

(7) ILO : 勞動力의 不完全活用の 概念, 雇傭에 관한 研究報告書 (Geneva 1971年) ; 就業과 不完全就業 및 失業에 관한 資料蒐集方

法과 概念·技術에 관한 ASEAN 세미나報告 (1977年 7月 25日 ~ 1977年 8月 3日 Jakarta) ; ILO : (1972年 4月 10日 ~ 21日) 第8次 UN經濟社會理事會에서 發展計劃을 위해 作成된 報告書,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雇傭의 適切性を 計測

(8) ILO 雇傭使節團報告書 : 콜롬비아 : 콜롬비아의 完全雇傭을 指向하기 위하여 (Geneva 1970年) ; 스리랑카 : 실론에 있어서의 雇傭機會와 展望에 對處하여 (Geneva 1971年) ; 케냐 : 케냐에 있어서의 生産的인 雇傭增進을 위한 政策, 雇傭·所得 및 平等 (1972年 Geneva) ; 이란 : 이란의 雇傭과 所得政策 (1973年 Geneva) ; 이디오피아 : 雇傭政策研究使節團報告書, 이디오피아에 있어서의 就業과 失業 (1973年 Geneva) ; 필리핀 : 필리핀의 雇傭·平等 및 成長을 위한 事業, 發展에 參與하면서 (1974年 Geneva) ; 도미니카共和國 : 生産的인 雇傭의 發展과 經濟的 創出, Dominica 共和國의 境遇 (1975年 Geneva) ; 수단 : 成長, 雇傭 및 均等, 수단의 包括的 戰略 (1976年 Geneva)

(9) ILO : 國際勞動, 雇傭, 所得配分 및 社會發展에 관한 3者間 世界會議에서 採擇된 原則宣言과 活動計劃 (1976年 6月 4日 ~ 17日 Geneva), 第30 ~ 31節

第 1 部

第 1 章 現行 國際勸告案

22. 雇傭과 이와 關聯된 統計에 관한 現行國際勸告는 다음의 決議文속에 包含되어 있다.

(a) 第 8 次 ICLS(1954 年 11 月 ~ 12 月)에서 採擇된 勞動力, 就業 및 失業統計에 관한 決議文

(b) 第 11 次 ICLS(1966 年 10 月)에서 採擇된, 不完全就業 및 人力의 不完全活用の 測定과 分析에 관한 決議文

23. 이에 덧붙여서 UN 統計委員會는 人口센서스에 있어서의 經濟活動人口와 非經濟活動人口에 관한 主題와 製表를 爲한 原則과 勸告案(1966 年 10 月 第 14 次會議 및 1979 年 2 月 ~ 3 月에 開催된 第 20 次會議)을 採擇하였다. 이에 앞서 1938 年에 國際聯盟의 統計專門家委員會는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센서스資料의 國際比較性 提高를 爲하여 有業者人口(The Gainfully Occupied Population)에 관한 定義를 勸告하였다.

勞動力, 就業 및 失業統計에 관한 決議文 第 8 次 ICLS (1954 年)

24. 이 決議文의 目的은 包括的으로 記述되어 있는 바, “勞動力, 就業 및 失業 등의 經濟·社會的 問題를 分析하기 위한 適切한 統計的 基盤, 특히 經濟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한 諸般政策의 樹立이나 施行을 위한 統計的 基礎를 마련하는 데 있다” 또한 統計라는 것은 “各 國家마다 社會·經濟的 構造로 보아서 特別히 必要한

資料를 提供할 수 있도록 發展되어야하며, 또한 國家間的 比較가 可能하도록 國際基準에 맞춰서 發展되어야 한다.”

定 義

25. 勞動力, 就業, 失業 등의 定義에 관한 決議文 內容중 關聯部分은 다음 拔萃文과 같다. 定義는 3가지 重要特徵을 갖고 있는데 첫째 特徵은 “活動” 概念에 의하여 一定年齡以上の 사람中 報酬나 收益을 위하여 일한 사람(就業者)과 即時 就業할 수 있으며 報酬나 收益을 위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失業者)으로 區分하여 이들을 勞動力에 包含시켰다. 두번째 特徵은 一定한 짧은 期間을 設定하고 이 期間 中에 한 活動에 따라서 分類하는 것이다. 세번째 特徵은 人口를 就業과 失業으로 區分하는 것인데 이러한 區分을 할 때 失業보다는 就業에 優先權을 주는 優先順位의 原則에 따라 分類하는 것이다.

26. 無給家族從事者, 一時的으로 일을 쉬고있는 사람, 一時解雇者, 일거리는 없으나 一定期間後에 새로운 일을 始作하기 위하여 準備하고 있는 사람 및 軍人등에 對하여는 必要한 例外 規定과 細部 事項을 定義속에 併記하였다.

統計의 範疇와 性格

27. 이 勸告는 다음 7가지 範疇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統計를 作成해야 한다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 즉, 民間勞動力, 就業者, 失業者, 事業體被雇傭者, 主要 非農業部門의 被雇傭者, 農業部門의

被雇傭者 및 軍人 등이다. 이들에 관한 統計에는 特別한 人口의 範疇나 統計의 出處 資料蒐集의 頻度 등에 따라 蒐集되는 15 가지의 特性을 勸告하고 있는 바 이러한 特性이란 性, 年齡, 婚姻狀態, 職業, 産業, 地位(雇傭主, 被雇傭者等) 地域, 適當就業時間, 일을 하지 못한 理由, 失業期間, 擔當業務, 事業體規模, 所有形態(個人, 公共, 法人等), 農·非農別雇傭 및 季節的 移動 等이다. 職業, 産業, 從事上의 地位(雇傭主, 被雇傭者等), 失業期間 등의 境遇에는 統計를 製表할 때에 지켜야할 바람직한 分類體系에 관한 特別指針이 주어져야 한다.

統計의 出處와 調査週期

28. 基準이 되는 資料와 經常的 系列資料로 區別할 수 있도록 統計의 出處와 最小限의 調査週期 등에 관하여 勸告하고 있다. 基準資料(Benchmark Data)는 적어도 每 10 年에 한번씩 實施하는 人口센서스나 事業體 센서스로부터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勸獎되고 있는 統計와 一致하기 위하여 可能的 詳細한 內容을 提供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經常的인 系列資料(적어도 1 年에 한번)에 관해서는 어떠한 特定出處를 提示하지는 않았으나 事業體調査와 勞動力 標本調査 등을 可能的 資料源으로 指摘하고 있다.

勞動力, 就業 및 失業統計에 관한 決議文

第8次 ICLS(1954.11~12)〔拔萃〕⁽¹⁾

勞動力의 定義

4. 民間勞動力은 다음의 第6節과 7節에서 規定하는 바에 따라 就業이나 失業의 條件을 充足시키는 모든 民間人으로 構成된다.

5. 總勞動力이란 民間勞動力과 軍人으로 構成된다.

就業者의 定義

6. (1) 就業者란 다음 範疇에 속하는 一定年齡以上の 사람을 말한다.

(a) 일하였음(at work): 1週間이나 또는 1日間과 같이 特定한 短期間內에 賃金이나 收入을 目的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

(b) 一時休職(With a job but not at work): 지금까지 일을 해왔으나 疾病이나 傷害, 勞動爭議, 休暇, 無斷缺勤 또는 日氣不順이라던가 裝備故障에 의한 一時的 操業中斷 등으로 一定期間동안 일을 쉬고 있는 사람.

(2) 自營業者와 雇傭主는 就業者에 包含되어야 하며 다른 就業者들과 마찬가지로 “일하였음” 또는 “一時休職”으로 分類해야 한다.

(3) 事業의 經營이나 農耕을 돕고 있는 無給家族從事者(Unpaid Family Workers)는 만일 그들이 一定한 期間內에 적어도 正常勞動時間의 半以上을 일하였으면 就業者로 看做한다.

(4) 다음 範疇에 속하는 사람들은 就業으로 看做하지 아니한다.

(a) 一定期間中 無報酬로 臨時 또는 無期限으로 一時解雇(lay-

註 1) 勞動統計에 관한 國際勸告案(pp.28~29) 參照

off)된 사람

(b) 職場, 事業體 또는 農場等に 從事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調査對象期間이 經過한 後에 새로운 職場 또는 事業體, 農場等に 從事(또는 運營)하기 위하여 準備中에 있는 사람

(c) 特定期間동안 家族이 經營하는 事業體나 農場에서 正常勞動時間의 未滿을 일한 無給家族從事者.

失業의 定義

7. (1) 失業者란 一定年齡以上の 사람으로서 特定한 1日 또는 1週間の 活動이 다음의 範疇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a) 雇傭契約이 끝났거나 一時的으로 停止되어 일거리가 없어 賃金이나 收入을 위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으로서 即時 就業이 可能的한 사람

(b) 特定期間中에 即時 就業이 可能的한 사람으로서 賃金이나 收入을 위하여 일거리를 찾고 있던 사람으로 就業經驗이 全然 없었던 사람이나 前에 被雇傭者가 아니었던 사람(즉 前의 雇傭主)과 停年退職한 사람

(c) 일거리가 없으며 즉시 就業이 可能的한 사람으로서 特定期間以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

(d) 一時的 또는 無期限으로 報酬없이 一時解雇된 사람

(2) 다음 範疇에 속하는 사람은 失業者로 看做하지 아니한다.

(a) 自己自身の 事業이나 農耕을 計劃하고 있으나 아직은 準備가 完了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賃金이나 收入을 위한 일거리를 찾지도 않고 있는 사람.

(b) 家族從事者였던 사람으로서 現在 일거리가 없으면서, 賃金이나 收入을 위한 일거리도 찾지 않고 있는 사람

不完全就業과 人力의 不完全活用度 測定 및 分析에 관한 決議文 第 11 次 ICLS (1966)

29. 1966 年에 採擇된 決議文은 主로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의 小農에서 重要關心事로 認識되고 있는 不完全就業의 計測과 分析을 위한 指針을 提供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其他 小規模事業體, 經濟的으로 後進地域, 産業화된 國家에 있어서의 石炭鑛業과 같은 斜陽産業, 農業이나 建設業에서의 季節的 就業, 性, 年齡, 國籍, 人種 등을 理由로 雇傭上의 差別을 받기쉬운 分野 등에서 일하는 不完全 就業에 관한 計測이나 分析을 위한 指針을 提供하기 위한 것이었다.”

概 念

30. 이 決議文은 不完全就業의 形態를 두가지로 區分하고 있다. 즉, 可視的인 것과 不可視的인 것이다. 이러한 概念에 대한 規定上 定義는 없으나 다만 몇가지 變數 즉, 就業期間, 所得, 職業上의 機能水準, 生産性 등으로 識別하고 있는 데 이들은 不完全就業을 計測하는데 包含되어야 할 基本的인 要素로 取扱하고 있다. 決議文 중 不完全就業의 概念에 관한 該當部分은 다음의 拔萃文과 같다.

方 法

31. 이 勸告案은 可視的 不完全就業과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의 分

析과 測定要素 및 方法에 대하여 仔細하게 記述하고 있다. 可視的 不完全就業은 두가지의 主要 要素로 나누어진다. 즉 (a) 不完全 就業者의 數와 (b) 不完全 就業의 量 (Man-Hours, Man-Days, Man-Years 等으로 表示함)이다. 첫번째 要素는 1週日間에 일한 時間 또는 日數, 1個月間에 일한 日數, 1年間에 일한 日數 또는 週間數 等에 의하여 就業者를 分類한 후 經濟的 또는 다른 理由로 正常 就業期間보다 일을 조금 밖에 못한 就業者를 把握하는 것이며, 두 번째 要素는 일한 期間 또는 일할 수 있는 餘裕期間別로 可視的 不完全 就業者의 分布資料를 分析하여 推計하는 것이다.

32. 不可視的 不完全就業者는 두가지 形態로 나눌 수 있다. 즉 僞裝的인 것과 潛在的인 것이다. 僞裝된 不完全就業은 所得이나 技術의 不完全 活用等에 의하여 分析하며, 潛在的 不完全就業은 低生産性에 의해 分析한다. 또한 “剩餘 勞動力(Labour Surplus)”과 “豫備勞動力(Labour Force Reserves)”의 概念을 紹介하고 있으며, 生産性を 包含한 여러가지 假定下에서 勞動單位의 有用성과 勞動單位의 實質的인 活用을 相互 比較하여 推計한다는 것도 言及하고 있다.

33. 事實上, 不完全就業者統計의 可能的 資料源으로 勞動力調査 또는 다른 調査가 있다는 것과 實質的으로 發生할 수 있는 어떤 限界性에 有意해야 한다는 것 以外에는 特別한 測定 方法이 言及 되어 있지 않다.

不完全就業 및 人力的 不完全活用の 計測과 分析에 關한 決議文

第 11 次 ICLS(1966 年 10 月)〔拔萃〕⁽¹⁾

不完全就業의 概念

4. 不完全就業이란 個人的 就業이 各自의 技術水準(訓練이나 作業經驗)등으로 비추어보아 一定한 規範이나 代替인 雇傭側面으로 보아서 不適格할 때 存在한다. 不完全就業의 두가지의 形態는 可視와 不可視로 區分된다.

5. (1) 可視的 不完全就業이란 주로 統計的 概念으로서 勞動力調查 또는 其他 調査로서 直接計測이 可能하며, 雇傭量의 不充分度를 反映하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就業을 하고 있어도 正常的인 就業時間이나 期間에 未達하는 일을 하고 있고 追加인 일거리를 찾고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狀態에 있을 때 일어난다.

(2)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은 주로 分析的인 概念이며 勞動資源의 잘못된 配分이나 生産要素中 勞動과 其他要素간의 構造的인 不均衡을 反映하는 것이다. 特徵的인 徵候로서 들 수 있는 것은 低所得, 技術水準의 不完全活用, 低生産性등이다.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의 分析的 研究는 繼續해서 考慮해야할 事項인 所得이나 技術的 水準(偽裝 不完全就業) 및 生産性計測(潛在的 不完全就業)등을 包含한 廣範하고 多樣한 資料의 檢討 및 分析에 의해야 한다.

註 1) 勞動統計에 關한 國際勸告, pp.33 ~ 34.

第Ⅱ章 各國의 慣行

34. 이 章에서는 改正이나 擴大가 要求되는 現行 國際勸告案의 主要事項을 分明히하기 爲해, 産業化된 市場經濟國家와 中央集權的 經濟體制의 國家 또는 開發途上國들에 있어서의 慣行을 再檢討한다.

産業化된 市場經濟國家에 있어서의 慣行

35. 1954年 決議文에 具體적으로 記述되어 있는 勞動力의 概念體系는 産業化된 國家에서 形成된것이기 때문에 當然히 當時 그 國家에서 重要했던 論點 例컨데, 失業과 이와 關聯된 社會·經濟的 重要關心事를 反映하기 爲한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當時와 같은 樣相의 失業問題에 當面하고 있는 國家는 없으나, 많은 國家에서는 勞動力의 概念體系에 基礎를 두고 資料를 蒐集하거나 蒐集할 計劃을 하고 있다. 이러한 體系에 關心이 持續되고 있는 理由중의 하나는 就業可能年齡人口를 就業, 失業 및 經濟活動人口로 區分하는 基礎的인 思考가 아직도 有効하며, 産業化된 國家들에 있어서의 勞動市場에 關한 基本的 要素를 把握하는 데 어느程度 有効하다는 判斷 때문인 것이다. (低開發國들의 都市의 組織化 部門에서도 또한 같다).

浮刻된 問題

36. 産業化된 市場經濟體制를 取하고 있는 거의 모든 國家들이 實施하고 있는 標本調査에서 勞動力을 計測하고 그 構造를 把握하기

위한 統計들의 定義나 特性은 1954 年の 勸告를 따르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1954 年以後에 일어난 社會經濟的 發展과 勞動市場條件의 變動으로 말미암아 多少의 修正이나 擴大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重要的 變動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勞動市場條件이 훨씬 流動的이며, Part-time 雇傭市場이 發展되고, 就業時間에 融通性이 있게 됨에 따라 지난날에는 定常的인 經濟活動에 전혀 參加하지 않았거나 多少 參加하였던 몇몇 部類의 사람들이 그들이 주로하는 活動(家庭主婦·學生等)과 收入있는 일과를 連結시켜 가면서 經濟活動에 參與하고 있다. 近來에 發展된 또하나의 樣相은 失業과 低所得關係의 性格變化이다. 1950 年代에 있어서는 失業保險給付對象이 制限되었기 때문에 失業이란 곧 所得과 일거리를 다 같이 剝奪당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社會保障制度가 擴大되고, 一定所得維持施策의 틀이 잡혀가고 있음에 따라 失業과 所得이 없다는 것과의 關係가 弱化되었으므로 失業資料의 解釋은 多少 變更되어야 했다. 이러한 發展은 求職斷念이라는 樣相의 發生과 더불어 求職活動의 期間이나 求職의 必要性등에 影響을 주었다.

現實化해야 할 部門

37. 勞動力統計에 關한 國際勸告에서 浮刻된 이러한 問題들을 그간에 開催되었던 여러 會議 즉, 人力統計에 關한 EEC와 ILO의 合同會議(1979年 7月 16日 ~ 20日 Geneva에서 開催), 雇傭과 失業統計에 關한 OECD의 實務會議(1976年 6月, 1977年 9月, 1979年 3月,

1980年4月, 1981年6月 Paris開催), 유럽공동體目標로서 就業 및 失業의 計測에 關한 EEC세미나(Luxembourg 1981年 12月 開催) 및 EEC地域의 198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國際勸告에 關한 유럽統計人 및 UN傘下團體會議에서 詳細히 檢討된바 있다.

38. 이들 會議에서는 國際比較性を 높이기 위하여 雇傭과 失業統計에 關한 國際勸告의 內容中 現實化해야 할 많은 部門이 具體化되었다. 즉, 現實化해야 될 部門의 樣相에 따라 네 部門으로 分類되었다.

첫째부문은 測定基準을 보다 明白히 하는것. 例컨데, 失業의 定義에 含축되어있는 求職基準이나, 即時 就業可能性, 또는 就業의 定義에 있어서의 無給家族從事者이외의 Part-time 就業者들에 대한 就業時間基準등 概念定義를 보다 明白히 해야한다는 點이다. 두번째 部門은 어떤 集團에 屬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處理方法을 一部變更하거나 精密하게 해야 한다는 點이다. 이들은 1954年 決議文에 明示된 集團의 사람들로서 軍人, 一時休職者, 無給家族從事者, 求職經驗이 처음인 사람, 臨時나 無期限 lay-off 된 사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準備中인 사람, 學生, 主婦, 見習工, 訓練中인 사람, Part-time 일거리를 찾고있는사람 등이다. 세번째 部門은 分類의 標準化에 關한 것인데 特定年齡集團에서는 就業時間 및 失業期間 등에 關聯된 것이다. 끝으로 네번째 部門은 1954年 決議로서 勸告된 統計의 範圍나 特性에 關한 것인데 날로 增加하고 있는 새로운 勞動市場資料에 대한 需要에 부응할 수 있도록 擴大되어야한

다는 점이다. 이 내용에는 보다詳細하고 보다細分된 Part - time 勞動力이나 轉職을 希望하는 就業者, 副業을 求하고 있는 사람, 求職을 斷念한 사람을 包含하는 非勞動力人口集團, 業務量에 관한 資料, 勞動力人口의 家族과 經濟上의 地位 특히 失業者의 地位, 勞動力의 流入, 流出 및 勞動力內部的 移動에 관한 것등이다.

中央集權的 經濟體制國家에 있어서의 慣行

39. 中央集權的 經濟體制下의 나라들은 그 大部分이 相互經濟援助委員會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CMEA) 에 屬한 나라들이다.¹⁾ CMEA 의 統計常任委員會는 經濟活動人口와 勞動力統計에 관한 몇가지 勸告를 한 바 있다.

經濟活動人口

40. 1975 年에 採擇된 人口센서스 計劃에 包含된 主題中の 하나는 人口를 經濟活動人口와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하는 것이었다.²⁾

CMEA 會員國에 있어서는 經濟活動人口를 :

- 勤勞者로 雇傭된 사람
- 農業 및 非農 生産者協同組合會員 및 家族中 實務會員
- 補助的인 農耕에 從事하고 있는 家口
- 自營事業 (個人農耕者, 小規模商業人, 自由專門職業人, 技藝人等) 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
- 家族扶助人 (定規的으로 일을 돕는 사람에 한함)
- 軍人 (軍의 下士官 및 將校)

- 終身年金給付勤勞者 : (Permanently Working Pensioners)
- 在監就業者 (Working Prisoners)
- 就業場所를 變更하면서 일하는 者

41. 臨時로 일을 쉬고있는 사람 (例: 農業에 있어서의 季節的 就業者)이나 다른 特定範疇에 屬하는 사람들을 經濟活動人口에 包含시킨다.

求職을 처음하는 者는 特別히 確認하여야 하며 經濟活動人口로서 計上하는 데에서는 除外한다. 그러나 이렇게 分類하는 範疇에는 各國의 慣行에 따라 몇가지의 差異가 있는 데 특히 求職을 처음하는 者, 徵募兵, 臨時年金給付勤勞者 (Temporary Working Pensioners) 등에 관하여서는 그러하다. 그밖에 센서스說問과 關聯된 것은 就業場所 (産業, 所有形態), 職業 및 社會的 階層 등에 관한 것이다.

42. 1978年 5월에 CMEA 統計常任委員會는 또한 勞動力統計의 主要動向系列의 編制를 위한 새로운 基準을 採擇하였다. 이러한 基準은 특히 (i) 登錄된 賃金 및 俸給就業者數 (ii) 就業時間의 活用⁽³⁾에 관한 事項이다.

登錄된 賃金 및 俸給就業者數

43. 어떤 組織이나 機構에 參與하는 勞動力으로 登錄된 사람의 數는 常傭 就業者 (Full-time 과 Part-time), 季節的 就業者 및 最小限 1日以上の 雇傭契約에 依한 臨時就業者로 構成되어 있다.

登錄은 新規 채용 (Recruitment) 日字를 基準하며, 登錄이 發効됨과 同時에 登錄者는 “日日基準”으로 點檢되어 就業者와 어떤理由로 일

을 취고 있는 사람도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이 내용에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학생, 일하고 있는退職者, 軍人, 여러가지 일을 겸해서 하고있는 사람 其他 特別한 範疇의 사람들에 관한 細部事項과 例外事項 등이 들어있다.

44. 이러한 登錄資料를 分析하는데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으며 특히, 平均人員數의 計算이라든가 社會·經濟的 範疇에 따른 分類에 의한 分析이 있다. 賃金 및 俸給就業者의 月平均登錄者數는 Part-time 就業者數를 正常 就業時間을 基準으로하여 Full-time 就業者數로 換算한 후 月曆에 따른 日數로 나누어 計算한다. 이때 休日은 就業日로 處理하며, 月平均은 4分期別, 2分期別, 年別로 算出하여 使用한다.

就業時間의 活用

45. 就業時間은 生産에의 活用程度를 計算할 目的으로, 生産에 實際로 活用된 就業時間과 活用되지 못한 時間에 關한 統計를 作成한다. 그리고 보다 正確한 資料가 必要하면 延作業時間數 (man-hours) 또는 延作業日數 (man-day)로 表示하도록 勸告하였다. 延作業日數는 實際로 하루에 몇 時間을 일하였는지 또는 몇일간을 일했는지에 相關없이 就業場所에 나타난 日數를 合計하여 計算한다.

46. 위에서 言及한 바와같은 資料의 蒐集方法이나 概念, 定義 등은 市場經濟體制下의 國家들에 있어서의 慣行이나 第8次 ICLS (1954年)의 勸告와는 다르다. 따라서 共通的인 基準을 設定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으나 經濟活動人口와, 就業의 構成要素(賃金所得者, 俸給就業者, Part-time 就業者, 就業時間等), 延作業日數 또는 時間數로 나타낸 일의량을 國際比較하는 것은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慣行

47. 거의 大部分의 開發國들이 多小의 差異는 있으나 國際勸告를 基本的인 指針으로하여 人口센서스나 勞動力調査 또는 다른 標本調査에 의하여 就業 및 關聯統計를 蒐集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나라들이 國際勸告의 適用에 懷疑를 갖게 되었거나 또는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接近方法을 使用하기도 하였다.

一部 産業化된 國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開發國에 있어서 現 國際勸告의 勞動力概念을 適用하기는 그리 쉬운일이 아니며 그다지 意義가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結果적으로 이러한 資料들은 貧弱한 것이라고 자주 特徵지워지고 있다. 이러한 特徵의 몇가지를 들어보면 (a)生存活動이나 自營業, 막노동 또는 無給의 家族勞動等の 比重이 큰 경우 (b)일거리의 季節性 (c)여러種類的 活動 또는 職業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不完全 就業狀態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 (d)制限된 職業情報體系 (e)制限된 社會保障制度, 그리고 (f)勞動市場의 分割 등을 들 수 있다.

基本的 體系의 不適合性

48. 生存을 위한 活動이나 無報酬의 家族勞動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境遇, 特히 開發國의 農村地域에 있어서는 여러 形態의

活動中에서 經濟活動을 區別해낸다는 것이 반드시 明確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먼거리로부터 물을 길어온다든지 땀감을 모아온다든지 野生菜蔬나 果實을 따온다든지 野生 動物을 잡는다든지 農作物을 保護한다든지 울타리를 고친다든지 하는일 등은 經濟活動이면서 동시에 家事일 수도 있다. 反對給付없이 하는 部落의 도랑치우기 저수탱크의 淨化作業 등은 經濟活動도 되고 奉仕活動도 될 수 있다.

事實上 大部分의 사람들이 經濟와 非經濟가 混合된 活動을 하고 있을 것이다. 農村地域에 있어서의 일거리의 季節性은 1週日과 같은 짧은 調査期間中에 한 活動의 形態를 가지고서는 年間活動狀態가 反映될 수 없음을 뜻한다. 制限된 人口에 地域規模가 적은 農村地域에서는 就業者들 自身이 그 地域內에 있어서 일거리의 有無에 대한 情報를 어느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求職活動을 하지않는 것이 普通이다.

49. 開途國의 都市地域에 있어서도 基本的인 勞動力概念을 適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非組織化된 部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都市의 非組織化된 部門에 속하는 人口는 대체로 自營業이나 臨時的인 일이나, 生産性이 낮은 部門에서 여러가지 活動과 일을 兼하여 하고 있다. 이는 勞動力人口를 就業者, 失業者, 非勞動力人口로 分類해보았자 都市의 非組織化部門의 雇傭條件을 適切히 反映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이와같은 部門은 社會保障制度나 失業保險制度가 없어 거의 大部分의 健壯한 成人들이 生存을 위해서 不法的이거나 社會的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라도 所

得을 올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하기 때문에 그 아무도 事實上 完全失業者라고 말할 수 없다.

不完全就業概念의 制約性

50. 勞動力概念定義의 不適合性에 對處하기 위한 不完全就業이나 人力의 不完全活用概念의 導入은 開途國에서의 適用에 있어서도 問題點을 모두 除去할 수는 없었다. 可視的 不完全就業의 概念을 具體化한 就業時間基準도 被雇傭人以外的 就業者群에게 適用할 때에는 問題가 생긴다. 農業部門이나 商業 및 서비스部門에 있어서의 大部分의 自營就業者와 無給家族從事者들은 실사 그들이 상당히 긴 時間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完全就業狀態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範疇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生産하는 製品이나 用役에 對한 需要가 적을때에는 짧은 時間內에 일을 해치우기보다는 時間을 끄는 傾向이 있다. 이들은 平常的인 環境下에서도 現存하는 일거리를 實際로 必要로하는 時間에 해치우기보다는 自己自身이 選好하는 作業要領이나 代替的 方法으로 하는 수가 많다. 또한 家口의 다른 構成員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調査上的 事實上 單位는 個人이 아니고 작업을 한 家口構成員全體가 單位가 되는 것이다.

51. 不可視的 不完全就業(僞裝 不完全就業)을 計測하는 데 있어서, 就業狀態의 適切性 與否를 나타내는 指標로서의 所得基準의 有用性에 대하여서도 疑問이 提起되었다. 즉, 所得이 理想的인 狀態下에서는 生産性を 反映해 주는 指標가 될 수 있다하더라도 制度的 要因, 物價의

變動, 其他 바람직하지 못한 條件下에서는 所得이라는 것이 生産性을 나타내는 充分한 指標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論議도 있다. 例를 들면 온종일 家事를 돌보고 받은 낮은 所得은 低水準의 生産性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制度的인 問題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自營業에 從事하는 就業者가 받는 所得의 差異는 生産性 때문이라기 보다는 주로 價格의 變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와같이 所得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勞動의 不適切한 利用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52. 概念에 관한 論題外에도 人力의 不完全活用과 不完全就業의 計測 및 分析에 관한 國際勸告는 이러한 概念을 運用하는 데 制約을 받는다는 點도 指摘되었다. 國際勸告에서는 여러가지 形態의 不完全就業을 어떻게 計測하느냐하는 點에 關하여 特別히 言及하지 않았으며, (可視의 不完全就業除外) 또한 이들을 어떻게 連結시키느냐는 點에 關하여도 言及하지 않았다.

各國의 統計機關이 採擇하거나 試圖하였던 概念定義

53. 이와같이 勞動力概念定義의 여러가지 制限性때문에 어떤 國家들은 새로운 概念을 만들어내거나 實驗할 必要性을 느꼈다. 各國들이 近來에 이르러 센서스나 各種調査에서 여러가지 概念을 採擇하거나 試圖해보았는데 이것들은 지금까지의 概念定義와는 다른 것이거나 이를 擴大한 것이었는데 特히 調査期間이나 勞動時間의 利用 또는 計測單位로서의 사람, 不完全就業의 편입과 測定에 있어서 그러했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要素를 代表하는 몇가

지 選擇된 概念定義를 簡略하게 檢討하고자 한다. 選擇된 概念이나 接近方法이란 現狀態와 平常狀態接近法, 勞動投下時間接近法, 勞動活用接近法 등이다.

現狀態와 平常狀態接近法

54. 勞動力接近法の 主要特徵의 하나는 一日이나 一週日과 같이 짧은 期間內에 行한 實際의 活動狀態를 基礎로하고 있는 點이다.

期間을 짧게 잡고있는 것은 人口의 現狀態를 把握하고, 그 就業特性을 計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計測을 여러번 反復하지않은 限 짧은 調査對象期間을 가지고서는 勞動力의 全般的인 構造를 把握하는데 不適當할 것이며 特히 就業이나 失業의 樣相에 季節性이나 不規則性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理由로 해서 어떤 나라들은 特히 센서스를 實施할 때⁴⁾ 지난달이나 지난 3 個月, 지난 1年間과 같은 長期間을 對象으로하여 人口의 平常活動狀態를 把握하는 方法을 採擇하고있다. 長期間의 對象期間을 가지고 平常狀態를 把握하는 接近方法의 長點은 1년에 한번 短期間의 調査期間中에 그 實態를 把握할 수밖에 없을 때 이 方法이 各個人의 모든 經濟活動에 대한 情報를 얻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難點의 하나는 1年동안의 活動狀態, 職業, 產業 등을 決定하기가 어렵다는 點이다. 勿論 短期間의 對查期間을 擇한다해도 같은 問題가 있으나 期間이 길수록 移動이나 變動이 보다 많을것이 確實하기 때문에 計測上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

55. 어떤 나라에서는 센서스나 同一 標本調査를 實施할 때 現狀態

와 平常狀態接近法을 함께 使用하는 일도 있는 데 例를 들면, 短期間을 基準으로해서 把握된 現狀態를 基礎資料로하고, 長期間을 基準으로해서 把握된 平常狀態를 補助資料로 하는 경우 또는 이와 反對되는 경우이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調査에 있어서 現狀態와 平常狀態를 併用하여 調査하는 方法은 短期의 對象期間에 의하여 勞動力範疇에 속하는 人口를 把握하고, 長期의 調査對象期間에 의하여 일을 한 經驗을 갖고 있거나 農事철 또는 다른 季節的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非勞動力人口範疇에 속한 사람들의 特性을 把握하도록 構成되어있다.

56. 現狀態와 平常狀態 接近方法中 擇一하느냐 또는 두方法을 併用하여 使用하느냐 하는것은 資料蒐集計劃上의 問題이며 이는 또한 調査目的이나 資料源 또는 制約事項 等に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勞働投下時間 接近方法

57. 勞働投下時間 接近法은 印度에서 就業과 失業에 관한 2회의 5年週期調査에서 採擇되었다. 이 接近法の 概要는 印度에서 實施한 過去の 就業 및 失業統計調査의 經驗을 土^⑤로 1965年⁵⁾에 열린 專門委員會에서 採擇된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接近法の 一部內容을 適用하여 實施한바도 있으며, 또는 計劃中인 나라도 있다. 6)

58. 이 委員會에서는 開途國에 있어서 大部分의 사람들이 完全就業도 完全失業도 아닌 狀態임에 注目하여 사람들을 業者와 失業者

로 分類하여 失業者를 非生産性的이며 아무 쓸모가 없는 集團으로 看做하는 思考를 排除하였다. 더우기 經常狀態를 基準한 單一方法으로 失業量을 計測한다는 것은 繼續적으로 失業狀態에 있는 사람들을 季節적인 失業狀態에 있는 사람들과 混同하게 됨으로 意味가 없을 것 같다. 委員會는 1週日中 단하루도 일하지않은 사람을 失業者로 하는것은 失業者를 過少測定하게 됨으로 就業者와 失業者로 分類할 것이 아니라 就業한 業務量의 單位를 延勤勞日數(man-days)로 記錄, 集計하여 勞動力人口의 延勤勞可能日數에 對한 百分比로 表示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方法을 利用하면 特定季節이나 特定期間中の 一日平均失業比率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은 供給可能勞動量의 不完全活用度を 나타내게 된다. 委員會는 또한 人口를 性別, 教育程度別로 나누어 農村失業의 季節別 推定の 必要性도 強調하였다. 이러한 勸告는 第27次 全國標本調査(1972 ~ 1973)에서 처음 試圖되었으며 就業과 失業統計에 貢獻한 바 크다.

그리고 第32次調査時에는(1977 ~ 1978) 몇가지 重要的 變動이 있었다.

59. 勞動投下時間接近法은 現狀態失業의 推定을 勞動投下時間(延勤勞日數로 測定된)을 가지고 一定調査期間中 勞動力의 總就業可能 勞動時間과 對比하여 比率로 나타낸 것으로 革新된 것이다. 이 比率는 勞動量의 不完全活用도를 測定하고자 하는 것이며 現狀態의 失業量 뿐만아니라 不完全就業量을 망라하여 包括하는 것이다.

勞動力活用體系와 不完全就業의 測定

60. 勞動力活用接近法은 1970年代初期에 開發되어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等 주로 東南亞地域에서 適用되어 왔다. 이 接近法은 不適當한 就業에 關한 指標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1966年 ICLS에서 最小限의 追加資料로 不完全就業의 概念을 具體化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1. 就業의 不適當性を 計測하는 데 있어서, 不適當한 就業이라는 것은 時間使用의 不適當, 所得水準의 不適當, 技術利用의 不適當 및 失業을 包含한 多面的인 것으로 看做되며, 또한 不適當한 就業이라는 것은 自意에 依한 것이 아니며, 身分, 保障이라든지 經濟的 福祉를 相關하지 않고 어떠한 範疇에 屬해있는 就業者에게도 影響을 주는 것이라고 看做되었다. 不適當한 就業은 사람 하나하나를 分析의 主對象으로하여 原因을 캐는 것이 아니라 徵候를 가지고 計劃하는 것이다.

62. 勞動活用接近法の 運營節次는 特定한 測定要件과 特殊製表體系가 必要하다. 測定要件은 適用하고자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不適當한 就業의 네가지 形態는 각기 그 測定을 위하여 두가지 要件을 必要로 한다. 즉 特殊한 徵候를 나타내는 指標와 不適當한 就業으로부터 正常的 就業을 가려내는 切捨點을 나타내는 指標이다.

63. 製表體系는 總不完全活用度を 計測할 것인가 아니면 純不完全活用度を 計測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純不完全活用度を 計測하고자 할 때는 個人이 分析의 對象이되며, 단지 한가지 形態의 不適當한 就業만을 各者의 特性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徵候를 相互 排他的인 獨立된 階層에 分類 되도록 製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여러가지 不適當한 就業중에서 어떠한 것이 더 重要한가를 反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4. 모든 就業者는 두가지以上の 不適當한 就業狀態에 同時에 屬할 수 있음으로 總不完全活用이라는 概念을 導入하게 된 것이다.

總不完全活用度を 計測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分析單位가 되는 것이 아니고 徵候가 分析單位가 되는 것이다. 所得이나 技術水準 側面에서 不適當하게 利用되고 있는 就業者는 두번 計算되고 있는 것이며 時間과 所得 및 技術水準側面에서 그러한 사람은 세번 計算되는 것이다.

65. 勞働活用接近法을 試圖한 經驗이 있는 나라들중에는 泰國이 1977年부터 年2回 實施하고 있는 勞動力調査에서 이 方法을 一部 採擇하고 있다. 勞働活用接近法으로 얻어지는 統計의 모양을 보여 주기 위하여 3回의 調査結果를 要約하여 아래에 收錄하였다.

不適當就業形態別 勞動力人口比率

(泰國 : 1977 ~ 78)

	1977.1 ~ 3月	1977.6 ~ 9月	1978.1 ~ 3月
勞 動 力	100.0	100.0	100.0
適 格 活 用	69.3	63.6	72.2
不 適 格 活 用	30.7	36.4	27.7
- 失 業	1.3	0.8	1.1
- 就 業 時 間	4.8	3.8	3.8
- 所 得	24.6	31.7	22.6
- 不 適 合 한 職 業 選 擇	0.0	0.0	0.0

資料 : 勞動力調査報告書, 全國(前期), 1977.1~3月; (後期), 1977.6~9月, (前期), 1978.1~3月; 통계국(방곡)

結果(純不完全活用概念에 따른)를 보면 失業은 泰國의 경우 不適當勞動活用中에 아주 적은 比重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所得으로 본 不適當活用이며 한편 全國水準에서 不適合한 職業選擇(教育水準과 職業間에)은 適切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指標의 選定과 優先順位 및 切捨點을 어떻게 定하였는가에 따라 이들 數值가 크게 左右된다. 若干 다른 技術的인 假定을 세워 計算한 美國의 統計를 가지고 說明해 보면, 不適當活用率은 1960年의⁹⁾ 25.1%에서 1976年에 33.8%로 上昇하여 美國이 泰國보다 相對的으로 더 많이 不適當한 就業者가 增加하고 있음을 示唆해주고 있다.

66. 여러가지 結果에서 綜合的인 結論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體系가 就業의 適當性에만 關心을 두고 있을 뿐 失業에 對하여는 關心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開途國의 環境에 특히 適當하다고 看做된다. 또한 勞動力接近法의 擴大使用이 可能하다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勞動力體系의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또한 所得과 不適合한 職業選擇에 의한 不適當한 活用(不可視 不完全就業)에 關해서도 批判되었다. 어느 경우어나 所得이 항상 生産性을 가장 잘 나타내는 指標는 아니므로 所得水準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勞動의 不適當한 活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도 지적되었다.

더우기 就業에 관한 資料와 緊密한 關係가 있는 所得資料를 蒐集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點이다. 또한 切捨點을 써야만 할 必要性 自體도 흔히 流動的이고 人爲的이라서 難點이 있다. 不適合한

職業選擇의 範疇에서도 定義와 解釋上의 問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範疇은 여러開途國에 있어서는 比較的 적은 小數集團에 屬하는 사람으로서 最小限 中高等教育이나 職業教育을 받은 사람들과 關聯되는 것이며, 또한 時間의 흐름과 더불어 教育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不適合한 職業選擇의 意味는 더욱 더 疑問의 餘地를 남게 하고있다. 한편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중 사람에 따라서는 教育에 投下된 것을 報償받을 수 있는 職業보다도 所得이 낮은 職業을 擇할 수도 있음으로 잘못된 就業現象을 解釋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게 된다.

67. 南美의 여러나라들은 다른 方法으로 不完全就業形態를 定期的인 勞動力調査에 統合하여 計測하고자 試圖하였다. 이것 역시 結果는 별로 신통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可視的 不完全就業은 計測이 어느 程度 成功的이었고 統合이 可能하였으나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을 計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음이 證明되었다. 이와關聯된 報告書¹⁰⁾에서 檢討된 13個國中 10個國이 可視的 不完全就業計測에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였고 이중 7個國이 각기 그 結果를 公表하였다.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에 관해서는(低水準의 所得側面에서) 3個國만이 分離된 統計를 公表하였다.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을 計測할 때 當面한 어려움은 특히 어떤 範疇에 屬하는 就業者에게서 把握된 所得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있었으며 低水準의 所得을 가지고 勞動의 不完全活用으로 解釋하는 데 問題가 있었다.

68. 아프리카 여러나라에서는 1970年과 1980年の 人口 및 住宅센서스의 一環으로 經濟活動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였으나 단지 數個國만이 不完全就業計測에 必要한 深層調査를 近來에 實施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들의 結果는 아직까지 公表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資料處理上에 隘路가 있고 이런 調査의 經驗을 綿密히 檢討할 때 여러가지 問題가 있기 때문이다.

69. 不完全就業의 測定은 開發國에서 뿐만 아니라 産業化된 나라들에 있어서도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거의 大部分의 나라들이 이러한 論題의 公式統計를 作成하지 않고있고 몇몇 나라에서만 定期的으로 公表되는 資料를 가지고 몇가지 代替的 測定을 하고 있을 뿐이다.(例,美國) 또한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近來에 可視的 不完全就業測定을 위한 實驗을 했는데 그 結果는 “過剩就業”(즉, 願하고 있는 時間보다 더 많은 時間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不完全就業”보다 더 많은 사람과 時間을 나타내고 있다는 點에 注目하였다.

70. 勞動力體系의 適用과 不完全就業의 測定을 위한 여러 問題들을 ILO 나 其他 會議에서 여러차례 되풀이 討議된 바 있으나 結論의 一致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點은 明確해진 것도 있다. 開發國에 있어서는 經濟에 異質性이 있고 都市地域에 産業化된 나라들의 勞動市場構造와 恰似한 組織化된 部門이 存在하므로 開發國에 있어서의 論點은 勞動力體系의 適用問題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같은 異質性에 어떻게 對處하느냐 하는것이 問題이다. 또한 關心의 焦點

은 不完全活用に 관한 絶對的인 概念이 아니라 就業과 所得間의 關聯性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註 記

(1) 불가리아,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西獨, 헝가리, 蒙古,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베트남 等

(2) 相互經濟援助委員會: “CMEA 會員國을 위한 센서스 實施 方法論” 公式統計作成上의 重要方法에 관하여 (헬싱키-모스크바 1980) 핀란드中央統計處 CMEA 事務局

(3) CMEA 事務局: CMEA 會員國의 基本勞動統計指標에 관한 方法的原則 (蘇聯 모스크바 1978. 6月), ILO 發刊 英, 佛, 스페인 語版 要約도 있음: 1980年 1/4 分期 勞動統計月報 XXVII-XXVIII 페이지 蘇聯의 勞動統計體系에 관한 英文最近刊行版은 R, I, Zhukov: 蘇聯의 勞動統計와 計定이나 O, I, Shafranova 著: “單一 勞動力調査” UN 亞細亞 太平洋經濟社會理事會와 蘇聯中央統計院이 共同主催한 勞動生産統計세미나 (1981.8.19 ~ 28 모스크바) 提出論文 參照.

(4) 人口센서스에 관한 國際的 勸告에 관하여는 UN발간 人口 및 住宅센서스에 관한 原則과 勸告 Series M, 제 67호 (New York 1980) Sales No.: E.80. XVI.18.

(5) 印度計劃委員會 失業推定을 위한 專門委員會, 1969年.

(6) ILO: 아세아에 있어서의 “勞動力調査” “家口調査”에 관한 ILO 專門家會議에 提出된 背景論文 MEHS/1981/D.6 (Geneva 1981年 4

月 6 日 ~ 10 日)

(7) 精密性 提高를 위한 半日間單位 活動狀態 .

(8) Philip M. Hauser : “ 勞動力利用의 測定, Malaysia 經濟概觀 (Singapore), 第 XIX 卷, 第 1 號 1974 年 4 月, pp.1 ~ 15. 이 冊에는 T. A. Sullivan 과 P.M. Hauser 가 勞動力 計測附錄 第 1 卷, 概念과 資料의 必要性, 就業과 失業統計委員會 (Washington, D.C. 1979 年), pp.246 ~ 270

(9) 上記冊子 263 Page .

(10) Argentina (V); Bolivia; Brazil; Columbia; Costa-Rica (V 및 I); Chile; Ecuador; El-Salvador; Mexico (V); Nicaragua (V 및 I); Panama; Peru (V 및 I); Venezuela (V). V 및 I 表示는 可視 및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에 관한 統計가 있음을 表示, 出處: ILO : “ 南美 3 個國에 있어서의 就業, 失業 및 不完全就業의 特性 ” ILO 主催 家口調査專門家會議 (Geneva 1981 年) 에 提出한 背景論文 MEHS 1981/D.7

(11) 이들調査에 관한 要約書 (Kenya, Lesotho, Morocco) 는 ILO 의 “ 아프리카 諸國에 있어서의 勞動力調査概要 (Geneva 1981 年 4 月) ILO 家口調査專門家會議에 提出한 背景論文 MEHS/1981/D.5 參照 .

第Ⅲ章 國際 比較性

71. 勞動力, 就業, 失業과 不完全就業을 國際間에 比較하는 데 必要로 하는 統計의 形態나 比較可能性은 統計의 表題가 같거나 類似한 것을 蒐集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의 統計를 國際間에 比較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이러한 目的達成을 위해 各別히 努力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固有한 組織上의 差異가 있고 測定하고자 하는 目的이 다르고 慣行이 틀리므로 國際間的 比較가 可能하도록 方法을 찾아야함과 同時에 各國의 獨自의인 必要성과 社會·經濟的 環境에 맞는 統計體系를 發展시키는 데 必要한 融通性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國際 比較性的 目的과 利用

72. 國際比較가 可能한 雇傭 및 關聯 統計는 그러한 比較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多樣的 目的에 利用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國際間이나 地域間에 比較possible한 統計는 國際的 開發戰略이나 地域別 勞動市場政策을 調整하고 鑑識하는데 必要하며, 資金의 汎世界的 配分이나 技術援助에 關한 決定을 促進시킨다. 또한 國際間的 人力移動을 鑑識하고 한나라의 政策이 國際的 勞動分業에 미치는 影響등을 研究하며 全般的이고 汎世界的인 雇傭展望을 세우고 社會의 安寧과 社會保障制度를 擴大하기 위한 앞으로의 展望을 豫測하는 데 必要하다.

73. 한나라의 國家的 次元에서 보면 國際間的 比較性을 國家政策 目標를 分析 比較하여 이의 達成을 國際的인 次元에서 比較할 수

있도록 하여 여기서 얻은 經驗이나 情報를 自國의 政策樹立과 評價에 利用될 수 있도록 해 준다. 많은 나라들이 國際的 經濟推移나 다른 나라의 經濟推移가 自國의 就業과 失業問題에 影響을 준다는 點에 各별한 關心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이나 國際機關에의 依存度가 크다는 것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人力計劃이나 이의 實踐에 있어서 歷史的 經驗이 限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人的資源과 財源의 制約으로 因한 政策決定上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開發國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74. 研究側面으로 보아서는, 國際적으로 比較가 可能한 雇傭 및 關聯統計는 勞動力이나 就業, 失業등을 研究하는 데 必要한 唯一한 資料인데 이것은 國家的으로 보아서는 一定한 것이지만 國家間에 있어서는 變動하는 것들이다.

75. 이에 더하여 어떤 境遇에는 國際間的 比較性보다는 國際적으로 綜合할 수 있는 統計가 더욱 必要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就業이나 失業水準 및 比率의 全世界的 또는 地域別 測定이나, 將來勞動力 計測 및 將來依存度 等に 이러한 總合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國際 比較性的의 問題

76. 雇傭 및 關聯統計의 國際比較性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두가지의 重要한 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國際 比較性的의 意味이고, 둘째로는 國際 比較성을 위한 概念에 관한 것이다.

國際比較性的 意味

77. 國際比較性은 두가지 側面에서 볼 수 있는 바 (a) 統計의 技術的 明細設計 (Technical Specification) 와 (b) 構圖解釋 (Contextual Interpretation) 의 問題이다. 技術的인 側面에서보면 2個國間の 어떤 特定問題에 관한 統計는 이 2個國家가 서로같은 技術的 明細設計에 의해서 作成되었다면 比較가 可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定義와 같은 時間 및 日曆 등을 가지고 調査된 것이라면 信賴性的 比較가 可能한 것이다. 勿論 實際上 이러한 比較性的 信賴度는 흔히 達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바라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技術的인 角度에서 比較性이 原則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必要性和 資料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78. 그러나 두개의 統計가 技術的으로는 比較가 可能하더라도 解釋上的 比較가 不可能한 것도 있을 수 있다. 一時解雇와 業務分擔을 例로 들어보자. 經濟與件이 좋지않을 때 工場은 (a)就業者를 一時解雇하거나 (b)就業者를 繼續 雇傭하나 日當 就業時間이나 週當就業日數를 줄인다. 이러한 두 境遇가 모두다 비슷한 經濟的 現象을 反映하는 것인데 現行 國際定義에 따르면 (a)의 境遇에는 失業으로 看做되고 (b)의 境遇에는 就業으로 看做된다. 이와같이 나라에 따라서 制度가 (a)에 치우친 나라에서는 定義와 技術的 統計등 다른條件이 같다고 假定한다면 (a)와 (b)의 中間的인 制度를 就하고 있는 나라나, (b)에 치우친 나라에서 보다는 失業率이 높게 나온다.

79. 또다른 要素들이 就業과 失業統計의 國際比較의 解釋上에 影響을 준다. 例를 들면 勞動力의 成長 또는 年齡別·性別 構成과 같

은 人口學的 要素이다. 또 다른 要素로서는 最低賃金制度, 失業保險 및 所得保障政策 등과 같은 制度的인 것이다. 기타 要因으로서는 自營業의 比率이라던가 終身雇傭이라던가 勞使關係등 社會·文化的 環境과 關聯된 要因이다.¹⁾

80. 事實上 統計의 國際的 比較性을 達成할 수 있는 바람직한 最善의 方法은 國家統計를 標準 定義와 技術的 明細에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比較를 위해서 利用될 標準概念의 選擇이 매우 重要한 것이다.

國際比較性的 概念

81. 오늘날 國際 比較는 大部分 失業率이나 勞動力參加率 같은 것에 基礎하고 있지만 다른 方法도 利用될 수 있다. 失業率보다도 範圍가 넓은 測定方法은 不完全活用形態 특히, 非自意的인 짧은시간의 就業과 같은 不完全就業 및 求職斷絶者 같은 것을 包含하는 測定方法이다. 이러한 廣範圍한 計測方法은 앞에서 指摘한 (一時解雇와 業務分擔) 比較不可能性을 最小化하여 보다 많은 나라들 간의 國際比較를 可能케 한다.

82. 거의 비슷한 方法이나 보다 洗鍊된 方法으로는 就業이 可能的 時間과 實際로 就業한 時間數와의 差로 나타내는 喪失就業時間數에 依한 方法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法을 많은 나라에서 충분히 信賴할 수 있을 정도로 適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²⁾

83. 人口-就業 構成比 卽, 就業된 勞動可能年齡人口의 構成比는 國際比較를 위한 또다른 有用한 尺度가 된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 이

러한 構成比는 增加하는 人口에게 就業을 提供하는 經濟의 能力을 測定하는 方法으로 看做되어 왔으며 많은 境遇에 있어서 失業의 國際比較를 하기위한 補充的 情報로 利用되어 왔다. 人口-就業 構成比는 몇가지 長點이 있다. 이 構成比는 分子나 分母 그 어느 쪽에도 失業者數의 把握, 즉 國家間의 測定과 比較가 가장 어려운 勞動力側面이 包含되어 있지 않은 點이다. 또한 分子나 分母의 數가 모두 크기 때문에 標本誤差를 줄일 수 있고 細分이 可能하다. 더구나 이 構成比는 短期性이나 週期性 要因의 影響을 덜 받으므로 長期나 構造的인 趨勢測定에 適合한 것이다.

各國 및 諸國際機構에서 使用되는 方法

84. 國際比較를 위하여 어떠한 概念을 採擇한다해도 한나라에서 나오는 資料에서 곧 比較가 可能한 統計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目的에 따라 比較가 可能한 資料를 蒐集하던가 또는 各國의 既存資料를 調整하는 方法이 考察되어야 한다. 現在 各國과 各國際機關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方法을 쓰고 있다. ILO 方法, EC 統計事務處, OECD, 美國 勞動統計局, 佛蘭西 國立統計·經濟 調查研究所 方法等 거의가 다 産業化된 나라들 것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이들 方法을 概觀하기로 한다.

ILO 方法

85. ILO는 1919년에 創設된 후 勞動統計를 標準化하고 國際間의 比較가 可能한 就業과 失業統計를 編制하는 일을 시작했다.

初期段階에 試圖된 方法은 失業保險金을 支給하는 勞動組合으로부터 蒐集된 統計를 編制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極히 制限된 몇 個의 經濟活動部門과 단지 西部유럽 6個國(美國, 獨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및 네덜란드)과 오스트레일리아 및 캐나다³⁾를 對象으로 하는 것 뿐이었다. 그후에 就業과 失業의 全般的인 水準을 나타내기 위한 國際指數를 作成하는 方向으로 바뀌었으며 利用된 方法은 物價指數 作成方法과 비슷하다⁴⁾

86. 現在 勞動力計測計劃의 一環으로 ILO는 國際적으로 比較가 可能한 各國의 性別·年齡別 勞動力 및 勞動力參加率과 地域別(아시아, 아프리카, 南美洲, 유럽, 北美洲, 大洋洲)⁵⁾로 性別, 農業·産業·서비스部門別 總勞動力의 改善된 推計値를 發刊하고 있다. 이 推計値는 各國의 勞動力을 計測하는데 必要한 基準資料를 提供하고 있으며, 各國의 人口센서스 結果를 利用하여 1950年, 1960年, 1970年의 中央年을 基準으로 推計된 것이다. (現在는 1980년까지로 延長) 勞動力 基礎資料로서의 國際比較性을 提高하기 위한 方法은 可能한 데까지 原資料를 基準概念(ICLS 1954 勞動力概念)에 맞추어서 範圍와 對象을 一致시키고 共通된 年齡分類에 맞추는 것이다. 必要한 資料가 利用可能할 때에는 調整하여 使用하지만 그렇치 않은 境遇에는 비슷한 資料나 隣接國 資料를 利用하여 다듬거나 歸屬計算을 하기도 한다. 調整을 해야할 事項에는 經濟活動, 無給家族從事者, 失業者, 軍人, 調査對象期間 및 勞動力의 下限年齡基準 등에 관한 概念을 包含한다. 性別, 年齡別 活動率을 推計하는 데 있어서 이

에 必要한 資料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特殊技法을 쓰고 있다.

EC 統計事務處 方法

87. EC 統計事務處 (SOEC)는 會員國들의 趨勢를 把握하고 委員會의 政策樹立에 必要한 統計情報를 마련하기 위하여 定期的으로 就業과 失業에 관한 統計를 蒐集하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10個會員國間의 比較가 最大限 可能하도록 統計를 處理하는 것이 특히 重要하다. 現在 作成되고 있는 統計에서는 標準化(登錄失業者)나 調和(活動部門別 被傭者 - SOEC 標準分類)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져, 各國의 利用可能한 資料를 共同體의 定義와 分類에 따라 編制하여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도 항상 充分한 程度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每2年마다 한번씩 勞動力調査를 實施할 것을 委員會規程에 插入하였다.⁶⁾ 이 調査는 一般的인 調査項目, 定義, 對象 및 資料處理節次에 基礎하고 있다.

88. 우선 關係統計當局은 SOEC가 組織한 調査의 內容과 對象, 調査項目, 符號記入, 標本의 概略的인 크기등을 合意하고, 다음은 各國의 統計當局은 標本의 抽出, 調査票設計 및 面接 등을 包含한 自國領土內에서의 調査體系를 設計하여 實施한다. 그후 그 結果를 標準 Punch Card의 設計와 標準符號의 記入要領으로 作成하여 SOEC에 提出하면 SOEC는 그의 責任下에 電算內檢과 資料處理 및 發刊을 한다.

89. 現在까지 共同體의 勞動力調査는 다음의 表와 같이 3段階로

實施되어 왔다. 3)

段 階	回 數	參 加 國
1960 年	1 回 調 査	西 獨, 佛 蘭 西, 伊 太 利, 네 덜 란 드, 벨 기 에, 룩 섴 부 르 크
1968 ~ 71	年 別	西 獨, 佛 蘭 西, 伊 太 利, 네 덜 란 드 (1968 年 에 한 함), 벨 기 에, 룩 섴 부 르 크 (1968 年 除 外)
1973	每 2 年 (홀 수 해) ※	南 獨, 佛 蘭 西, 伊 太 利, 네 덜 란 드, 벨 기 에, 룩 섴 부 르 크, 英 國, 아 일 란 드 (1973 年 除 外) 및 덴 마 크 (1973 年 除 外)

※ 調 査 의 時 期 는 各 國 마 다 다 르 나 대 체 로 봄 에 實 施 된 다.

90. 每 2 年 마 다 實 施 하 는 各 調 査 는 2 個 部 門 으 로 되 어 있 다 :

첫 째, 基 本 項 目 은 “13 歲 이 상 人 口 에 대 한 “人 口 및 經 濟 的 特 性 에
관 한 事 項 (約 37 個 중 몇 개 는 選 擇 項 目 이 며). 둘째, 補 充 項 目 은 職
業 및 一 般 訓 練 에 관 한 事 項 (1973 ~ 79), 就 業 環 境 및 職 業 訓 練
(1975) 그 리 고 退 職 者 와 年 金 受 惠 者 事 項 (1977) 으 로 各 調 査 時
마 다 달 랐 다. 그 리 고 各 國 은 이 에 追 加 하 여 特 別 한 關 心 事 를 調 査
票 에 添 加 했 다.

OECD 方 法

91. OECD 는 1962 年 이 후 各 國 의 就 業 및 失 業 統 計 를 調 整 하 였

으며, ICLS의 國際的 定義(1954年)에 基礎하여 24個 OECD 加盟國中 12個國(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란드, 佛蘭西, 西獨, 伊太利, 日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英國, 美國)에 관한 分期別 季節調整失業率을 作成했다. 이들 會員國들은 定期的인 家口標本調査를 實施하여 다른 出處에 基礎한 各國의 失業動向을 調整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92. 調整의 形態나 範圍는 나라의 形便이나 調査頻度, 各國이 採擇하고 있는 定義와 ICLS 定義와의 近似性, 修正에 必要한 補充資料의 利用可能性 等に 따라서 다르다.⁸⁾ 月間이나 季節別 勞動調査로 實施하고 있는 8개 나라에 있어서는 (a) 調査를 위한 失業의 概念과 ICLS 概念과의 差異를 把握하고 (b) 修正을 해야할 것인지의 必要性을 決定하고 (c) 關聯된 資料가 利用이 可能하도록 修正을 하는 것과 같은 節次로 調整을 한다. 이러한 節次를 使用할 때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및 美國과 같은 5個國은 資料의 修正이 必要가 없게 된다. 月間이나 季節別 勞動力 標本調査를 實施하고 있는 伊太利, 日本, 노르웨이 등의 3個國은 部分的인 修正만을 하게 된다. 勞動力 標本調査를 3個月以內의 間隔으로 實施하는 4個國(프랑스, 西獨, 스페인 및 英國)에 있어서는 修正方法은 보다 複雜하다. 앞서 指摘한 3가지 段階(a),(b),(c)方法등 概念上的 修正외에도 分期別 資料를 導出하기 위한 頻度修正을 해야한다.

93. 現在 試圖되고 있는 失業의 國際比較方法을 改善하고 調整

하기 위해서 OECD 와 그傘下의 就業 및 失業統計實務團은 加盟國에 있어서의 現價行을 檢討한 後 勞動力, 就業 및 失業統計에 관한 國際的 觀告와 關聯된 몇가지 結論에 到達하였다. 그 主要 內容은 (a)求職과 即時就業可能性 概念에 관한 觀告를 擴大할 것과 (b)“給付없이 臨時나 無期限으로 一時解雇된 者”의 統計的 處理를 實務團⁹⁾의 研究結果에 따라 修正할 것 等이다. (第IV章에서 具體적으로 言及할 것임)

美國 勞動統計局 方法

94. 1960年代 初期부터 美國의 勞動統計局 (Bureau of Labour Statistics: BLS) 은 繼續해서 國際勞動力 比較業務를 하여 왔다. 現在 8 個國에 對하여¹⁰⁾ 月別失業率과 이와 關聯된 統計를 美國概念에 따라 修正하고 季節調整하여 非定期的이기는 하나 대체로 2年間隔으로 發表하고 있다.¹¹⁾ 이 業務는 當初 美國의 높은 失業率과 市場經濟體制를 擇하고 있는 다른 產業國에 있어서의 失業率을 比較하여 方法上의 差異에 의해 發生하는 몫을 計算하여 그 內容을 評價하기 위한 것이었다.

95. 現在 BLS 에서 使用되고 있는 調整方法은 앞서 概觀한 OECD 方法과 비슷한 것이기는 하나 보다 많은 努力을 傾注한 것이다. (OECD 方法은 事實上 大部分이 BLS 方法에 따른 것이다). 現在 調整되고 있는 各國의 調査對象의 差異와 標準概念上의 問題의에도 어떤면에서는 BLS 方法은 OECD 方法과 다르다. BLS 가 調整한

失業率은 民間勞動力을 基準으로 한 것으로서 OECD 方法에 있어서의 總勞動力과는 다르다. BLS 의 調整方法은 보다 洗鍊되어있고, 여러 경우에 있어서 概念上 差異點을 勘案하기 위하여 보다 細分된 項目이 考慮되었다. 그리고 時系列도 길다. 즉, BLS 調整失業率은 1959 年부터 시작한 반면, OECD 는 1966 年부터 시작했다. 調整値는 分期別, 年別外에도 必要에 따라 月別로도 計算되어 있으며, 또한 年間基準으로 年齡別·性別 失業率이 調整되었다. 그리고 性別 勞動力參加率과 就業率도 또한 調整되어있다.

프랑스 國立統計·經濟調查研究所 方法

96. 1973 年의 實驗을 거친 후, 統計·經濟調查研究所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는 1975 年에 새로운 調査에 着手하였다. 이 調査에서 就業人口와 失業人口를 3 個의 다른 定義에 따라 計測하였는 바, (a) 센서스上的 定義 (b) 經常調査上的 定義 및 (c) ILO 定義에 따른 것이었다. ILO 定義는 國際比較와 이와 類似한 目的을 위해 使用되었다. 革新된 點은 이 세가지 概念을 같은 調査에 連結시킨 데 있다.

97. 센서스定義에 따른 就業과 失業은 센서스自體를 實施하고 調査하여 處理하는 節次와 똑같은 方法으로 設計된 2 個質問에 對한 答에 依하는 것으로서 (a) 調査對象期間中 主된 職業에 從事하는지의 與否 (b) 일거리가 없어 求職하고 있었는지의 與否에 관한 것이다.

98. 經常調査의 概念으로 就業이나 失業의 資料를 얻기 위해, 센

서스概念에 따라서 이미 非活動人口로 分類된 사람들을 再調査하는 2個의 項目을 追加하였다. 質問중의 하나는 “限界雇傭狀態에 있는 活動人口”를 索出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即時就業이 可能하고 求職中인 限界活動人口를 索出하기위한” 質問이다.

99. 追加的 質問과 이를 確證하기 위한 質問을 調査票에 設定하여 ILO 定義에 따른 就業과 失業의 計測이 可能토록 했다. 이러한 定義와 經常調査와의 關係 및 센서스의 定義를 다음 表에 表示하여 놓았다.

I. 雇傭測定을 위한 세가지 方法間的 相互關係

1. 센서스의 定義에 따른 就業中인 活動人口에 限界就業狀態의 活動人口를 더한 것
2. 經常調査의 定義에 의한 就業中인 活動人口에서 臨時的이 아닌 理由로 非就業中인 者, 部分的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때 때로 일거리가 있어도 그리 많지 않아 非就業中인 者, 其他 不明한 理由로 非就業中인 者, 週當 15時間 未滿 就業한 家族從事者를 빼고 센서스 定義에 의한 即時就業이 可能하고 求職中인 者로서 調査對象週間中 就業한 者를 더한것.
3. ILO 定義에 따른 就業者

II. 失業測定을 위한 세가지 方法間的 相互關係

1. 即時 就業이 可能하고 求職中인 者(센서스 定義에 따른)에 即時就業이 可能하며 求職中인 限界活動人口를 더한것.

2. 即時就業이 可能하며 求職中인 者 (動向調査의 定義에 따른) 에서 非賃金就業求職者, 調査對象期間直前 1個月間 求職하지 않은 者, 即時 就業이 不可能한 者 (輕微한 患者除外), 調査對象期間中 就業한 者는 빼고, 센서스定義에서는 就業者 이나 ILO 定義에서는 職業이 없으며 即時就業이 可能하고 求職中인 者와 얼마후 就業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은 사람 및 職場은 가지고 있으나 現在 事情이 여의치 않아 調査對象週間中 쉬고 있는 者를 더한것.
3. ILO 定義에 따른 失業者

資料 : 1981.3 實施한 雇傭調査結果 詳報

INSEE, Series D, No. 87, 1981. 12. pp. 32 ~ 33

評 價

100. 勞動力統計의 國際比較性을 達成하기 위한 方法은 세가지로 類型化 할 수 있는 바: (1) 標準調査方法 (SOEC) (2) 特殊調整方法 (ILO, OECD, BLS) 및 (3) 自動調整方法 (INSEE) 등을 들 수 있다.

101. 原則的으로 標準調査方法으로 調査하면 다른 여러가지 勞動力 概念과 構成에 關한 定義上的 比較가 可能하기는 하나 여러나라에서 頻繁히 이런 調査를 하기는 어렵다. 特殊調整方法도 制約이 있다. 이 方法은 複雜하고 여러가지 資料源과 각각 다른 期間에 의하여 蒐集된 資料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實際上 이러한 方法은 상당한 期間을 두고 適用하여야 하고 또한 少數의 基礎統計에만 適用될 수 있다. 그들은 有用한 情報와 暗示的인 假定에 크게 依存

하게 되는데 이들의 正確性에 대한 評價가 그리 쉽지않다. 關係要因을 年齡別, 性別 等으로 細分하는 것은 더욱 複雜하고, 資料에 대한 需要도 또한 不確實하다.

102. 自動調整方法은 性質上 完全한 比較가 可能도록 해주는 方法이다. 또한 標準定義를 調査票設計나 處理節次 等に 具體化하여 놓았으므로 年齡別이나 性別 等 關聯特性別로 細分集計하는 것은 덜 어렵다. 自動調整方法의 解釋은 就業과 失業에 관한 統計의 國際比較性を 提高하는 데 有用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目的을 위해서도 有用하다. 이러한 方法은 區劃設定 (Building-block) 接近法이라 부른다.

區劃設定接近方法

103. 基本的으로는 INSEE 方法과 같은 것이나 區劃設定接近法은 다른 目的이나 意圖에도 맞도록 就業이나 失業 및 不完全就業의 多様な 定義를 提供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을 適用하는데는 基本的으로 두가지 段階가 있다: (a) 就業이나 失業 및 不完全就業에 관한 適當한 定義를 規定하고 (b) 規定된 定義에 따라 測定을 하여 最少限의 構成要素의 組合 (區劃設定)을 導出하고 이것을 適切히 綜合한다. 區劃設定方法은 優先順位決定行爲가 必要하다. 이러한 優先權順位를 資料蒐集의 設計段階부터 併合해 두어야 한다.

104. 이러한 接近方法은 國際比較를 促進할 수 있을 것이다. 原則적으로 國際比較를 提高시키는 方法은 다음과 같다. 各國은 國際比較를 위한 就業, 失業 및 不完全就業에 관한 어떤 定義에 合義

한다. 全國單位の 調査나 資料蒐集方法을 設計하는 데 있어서 國際定義와 各國의 定義와는 對立된다. 國際定義와 各國의 定義間에 差異가 클 때에는 각각 따로 統計資料를 蒐集하고 發表하는 節次를 마련한다. 實際上 서로 符合되지 않을 것으로 豫想되는 重要構成要素는 勿論 처음부터 이를 識別할 수 있다. 例를 들면 無給家族從事者, 見習生, 一時解雇 및 求職斷念者 等に 관한 것이다. 흔히 各國의 統計目的을 위한 統一的인 措置方法에 國際的인 合議가 이루어질 수 없다해도 構成要素에 관한 定義나 措置方法을 就業, 失業 및 不完全就業에 관한 國際的 定義에 맞출 수 있다. 이러한 主要構成要素들을 各國形便에 따라 適切히 定義한 후 必要에 따라 別途로 提供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國際比較를 위해 만들어진 區劃設定接近法의 重要한 役割이다. 이와같은 接近方法은 다음 章에서 就業과 失業 및 不完全就業의 概念과 定議를 論議할 때 詳細히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接近方法을 充分히 展開하는 데는 많은 여러가지 基本的인 構成要素들을 識別하고 標準化하여야 하는 問題가 있어 보다 많은 研究가 必要한 것이다.

105. 區劃設定接近法은 國際比較가 可能한 統計를 作成하기 위한 目的以外的 다른 目的에도 利用될 수 있다. 特定 集團에 관한 定義나 措置方法이 變更되었을 때 이러한 變動을 時間的으로 比較할 때에도 使用된다. 雇傭條件의 變動이나 以前の 調査經驗에서 얻은 知識은 때때로 過去에 使用되었던 概念이나 定義를 다시 다듬고 修正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現象은 特히 勞動力資料 蒐集의 過渡期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環境下에서는 時系列的으로 一貫된 定義를 維持하는 것이 極히 어렵다. 그러나 一貫성이 維持되지 않는다면 勞動力 統計로서의 價値는 減少될 것이다. 區劃設定接近法의 適用은 過去の 記錄을 區劃을 設定하여 構成要素間的 相關性을 識別함으로써 어느程度 史的比較가 維持되도록 하는 것이 可能하며, 또 過渡期에는 新舊定義에 의한 資料를 모두 蒐集함으로써 史的比較를 可能하게 할 수도 있다.

106. 같은 要領으로 區劃設定法은 각각 다른 資料源에서 나오는 資料間的 差異를 綜合整理하거나 國內各界利用者の 要求에 따라 각각 다른 定義에 依한 就業, 失業 및 不完全就業의 推定을 위한 制表에도 適用될 수 있다.

107. 區劃設定法은 各國의 定義에 따라 勞動力과 그 構成要素를 把握하는 데 必要한 보다 많은 特性資料의 蒐集을 必要로 한다. 예를 들면, 일거리를 求하고 있고 即時 就業이 可能的한 사람을 求職者로만 記錄할 것이 아니라, 이를 求職活動과 即時就業可能으로 分離하여 따로 記錄하는 것이다. 勞動力 調査를 위한 區劃設定接近方法이 實際上 意味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當局이 事전에 準備를 해 두어야 할 일이 약간 있다. 區劃設定法은 대부분의 境遇 調査票의 設問體系가 바뀔때, 또는 어떤 項目을 詳細히 分類하는 境遇, 그리고 一部の 境遇는 追加設問을 導人할 때 必要하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註 記

(1) Lawrence J. Christiano : “ 勞動市場統計의 國際比較性 ”
勞動統計月報 (Geneva ILO) 1980 第二季報 XIII ~ XXIII項 (佛, 스페인 要約)

(2) 國際比較에 관한 別途의 方法으로 最近에 유럽 3 個國統計에서 提示說明된 바에 依하면 西方産業化國家의 勞動市場을 鑑識 (Monitor) 하며 勞動力需要弛緩에 관한 包括的 調査에 基礎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詳細한 것은 Angus Maddison 의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 (New Haven, Connecticut), 시리즈 26, 제 2 권, 1980 年 6 月版 pp.175 ~ 217 에 있는 “Monitoring the labour market : A proposal for a comprehensive approach in official statistics, illustrated by recent developments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을 參照할것.

(3) ILO의 International Labour Review (I.L.R, Geneva)
1921 年 1 月版 掲載인 “Statistics of unemployment among workers organisations”

(4) ILO의 上記 ILR 1932 年 10 月版의 “An attempt to construct international measures of unemployment” 同 1934 年 4 月版의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dex numbers of the general level of unemployment” 와 “Some problems in the construction of index numbers of unemployment”, 同 1937 年 5 月版의 “Some problems of intern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및 同 1939 年 7 月版의 “World indexes of employment”.

(5) ILO의 1971年 初版 Labour forces projection, 1965~1985, 1~Ⅵ章. 1977年 第2版 Labour force estimates and projection 1950~2000, I~Ⅵ卷

(6) SOEC의 1980年 룩셈부르크刊 Labour force sample survey 1973~1975~1977, p.25.

(7) SOEC는 標本調査에서 現在狀態에 맞추어 符號體系를 改編하려고 計劃하고 있다.

(8) OECD의 經濟概要(Economic Outlook) 1976年 7月版 第19卷 pp.106~110 掲載인 “Technical annex: Adjustment of unemployment rates to international definitions” 參照, 나라에 따라 重要變更을 擇하려고 하면 調整方法은 그에 맞추어 最近의 것으로 改補된 것이어야 한다. 이는 1976年以來 數次에 걸쳐 行하여 졌다.

(9) Bernard Grais: “The classification of persons [laid off] i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tatistics” 雇傭 및 失業統計에 관한 OECD 實務團 5次會議 準備文書(制限文書, MAS/WP 7(81) 4)

(10) 美國以外에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태리, 일본, 스웨덴 및 영국

(11) 最近資料로서 利用할 수 있는 것은 “Monthly Labor Review(워싱턴 D.C) 로 刊行되었는 바 調整方法에 관한 仔細한 說明은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unemployment”(워싱턴 DC. 美勞動統計局) 1978, 刊行番號, 1979 에 실려있다.

第 2 部

第Ⅳ章 就業의 樣相과 測定目的

108. 前章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勞動力, 就業, 失業統計에 관한 現行國際勸告의 基本的인 概念體系는 必要한 것이기는하나 不充分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基本的인 概念體系는 産業化된 나라들과 開發國의 都市에서 組織化된 部門의 勞動市場 構成要素를 記述하는데는 必要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體系는 先進國이나 開發國에서 關心을 갖고 있는 問題나 狀況에 對하여 充分히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基本概念體系를 就業, 失業 및 關聯特性에 대한 現實的인 水準과 分布狀況을 反映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客觀的인 基準에 따라서 資料를 蒐集할 수 있도록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本章에서는 簡單하게나마 就業形態를 檢討하고 主要測定對象과 利用面을 確認하여 다음 章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修正된 體系와 改正概念 및 定義 등으로 提案하고자 한다.

就業의 各種樣態

109. 就業은 여러가지 角度에서 觀察할 수 있는 바 角度에 따라서 어떤 特別한 統計의 나아갈 方向이나 計測方法 등을 示唆해 준다. 優先的으로 就業의 樣態를 識別할 수 있는 主要 側面은 (a) 生産的인 側面 (b) 所得側面 (c) 社會的 和合側面 (d) 人的投資 側面과 (e) 時間利用側面¹⁾이다.

生産的 側面

110. 就業은 生産을 위한 投入이다. 各自의 活動이 다른 生産要素와 結合되어 社會全體와 그들이 生産하는 部門別로 價値를 生産하는 것이다. 就業을 生産的인 側面에서 보면, 政策上 重要關心事는 生産過程에서 다른 要素들과 對應하여 勞働이 完全利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統計體系도 勞働의 供給, 利用 및 生産性에 關하여 實在的 및 潛在的 立場에서 資料를 蒐集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所得側面

111. 就業은 所得의 源泉이다. 사람들은 所得을 얻어서 他們自身과 他們家口의 經濟的 安寧을 期하기 위하여 일하고 求職도 한다. 特히 所得側面에서 보면 雇傭의 創出은 所得의 公平한 分配와 貧困의 根絶을 目標로 하는 것이다. 特히 重要한 것은 就業에 의해서만 經濟的 安寧을 維持할 수 밖에 없는 貧困한 사람들이나 家口들을 돕고, 報酬가 있는 安定된 就業을 提供해야 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就業과 所得을 連結시켜 關聯社會經濟的 對象에 關한 資料를 蒐集해야 하는 것이다.

社會的和合側面

112. 就業은 또한 各 個人을 社會와 和合시킬 수 있는 重要한 手段이기도 하다. 일자리를 求하는 사람들에게 提供할 雇傭機會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社會와 疎遠케하고 共同體를 分裂시

켜 큰 社會的 不幸을 招來케 한다. 예를 늘면, 社會的 和合側面에서 의 가장 重要한 關心事는 勞動力에로의 進入過程에서 일어나는 障 害要因의 深刻度, 頻度, 勞動市場의 分割狀況, 雇傭機會나 訓練 等に 對한 差別可能性에 관한 資料를 蒐集해야 한다는 것을 示唆한다.

人的投資側面

113. 個個人的 觀點에서 보면, 就業이란 創造와 責任意識을 開發 하는 手段이며, 또 技術이나 技能의 形態로서 自身の 人的 資本을 投資하는 手段이기도 하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가장 重要한 關心事는 見習이라든가 職業訓練, 勞働者의 熟練度, 就業의 流動性의 程度라든가 上向頻度(또는 下向頻度) 등에 관한 統計가 必要하다는 點이다.

時間利用側面

114. 就業이란 時間利用活動이므로 各 個人이나 家口에게 주어진 時間을 다른 活動과 競爭的으로 利用하는 活動이다. 따라서 이러한 時間利用活動은 배움이나 어린이 돌보기 또는 其他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活動과 서로 相衝하게되며 이러한 點이 政策의 主要關心 事가 되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雇傭統計는 비단 所得을 벌어들이는 活動 뿐만 아니라 教育, 社會奉仕活動이나 老弱 者나 어린이돌보기 등을 包含하는 家事活動도 包含하여야 할 것이 다 2).

115. 지금까지 指摘했듯이 就業과 關聯된 統計를 蒐集해야할 必

要性은 認定되나 測定할 資料의 當爲性이나 따라야할 범위는 多様하다. 이 報告書에서는 앞의 두가지 側面 즉 <生産的 側面>과 <所得側面>을 集中的으로 다뤘다. 지금까지 이 두가지 側面外에는 어느 나라도 이를 다룬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過去의 經驗에 依存하여 이를 다루어 볼 길이 거의 없다. 더우기 分析을 거친다는 것은 特別한 統計的 事例研究를 해야함으로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側面外의 雇傭에 관한 統計는 雇傭의 生産的 側面과 所得側面에서 捕捉한 統計들을 細分하거나 擴大하는 等의 方法으로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作成할 수 있을것이다.

測定目的과 基本用途

116. 이 報告書가 意圖하는 것에 따라 前節에서 概觀한 就業의 두가지 樣態를 中心으로 測定の 目的을 規定하여 두는 것이 便利할 것이다.

117. 生産的인 側面으로부터의 就業을 測定하고자 하는 重要目的은 / 勞働供給과 勞働投入을 計測하는 데 있다. 두가지 方法이 모두 高次元的인 것이다. 原則적으로 勞働供給이란 觀念은 經濟的 財貨를 生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기 위하여 一定期間中 勞働을 提供하는 人口를 말하거나 이러한 人口가 一定期間中 就業한 時間 또는 就業이 可能한 時間을 말하기도 하고 就業者가 일한 努力의 量이나 就業者의 訓練 및 技術水準 등을 말하기도 한다. 勞働投入 또한 各種要素를 包含하는데 就業人員數, 投入時間數, 生産性 및 技術의 活用度等을 內包한다. 人口 및 社會・經濟的 集團別로 適切히 細分하

여 測定함으로써 巨視經濟的 計劃이나 人力計劃 等を 樹立하는데 必要한 利用可能한 人力資源 또는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人力資源의 範圍와, 크기에 관한 情報 또는 雇傭構造에 관한 基礎的인 資料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勞動市場의 動向이나 雇傭條件, 趨勢等を 把握하기 위해서는 一定한 單純化가 必要하다. 거의 大部分의 産業化된 市場經濟體制의 國家에 있어서는 失業率이 現在의 經濟活動成果를 나타내는 指標라는 點에 의해 短期間을 測定對象으로 하고 있다. 이때의 統計的 主要關心事는 〈趨勢와 變動을 찾아내는 데 있다.

118. 勞動^을 生産을 위한 投入要素로 보는 統計는 政策으로 提示한 雇傭創出事業이 計劃目標를 達成하였는지 優先順位決定 目的을 達成하였는지 등에 관한 政府의 政策 및 事業成果를 評價하는 데도 利用된다. 例를 들면, 過去에 이룩된 經濟成長이나 生産의 有機的 構成 등을 過去의 時系列資料나 趨勢等を 利用하여 溯及해서 外生的으로 說明하고자 할 때나 이미 測定된 經濟活動人口의 크기나 구성에 影響을 주는 人口 및 經濟的 要素들을 內生的으로 研究하는데도 利用된다. 또한 將來豫測 資料는 例컨데, 將來의 生産을 構想하고 將來의 投入을 計劃하며 訓練하고 教育시키는 데 必要한 情報를 提供한다.

119. 所得側面에서본 就業의 樣態에 關係서는 各自에게 주어지는 雇傭機會를 土臺로하여 各自의 經濟的 安寧을 期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이들이 속하는 家口의 數와 그 特性을 把握하는데 主要目的이 있다. 萬一 開發政策의 目標가 雇傭創出의 促進에 있고 特히

일거리를 가장 必要로 하며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一定水準의 所得을 報償해줄 수 있는 雇傭機會를 提供하는 데 있다면 어떤 活動이 이러한 水準의 所得을 낳느냐 하는 點을 事前에 糾明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雇傭政策을 樹立하고 啓導하기 위해서는 可能한 限 所得資料가 雇傭資料와 連結되도록하여 적어도 概略的이나마 勞動의 所得成分과 各個活動과의 關係를 決定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問題의 比重을 決定하고 優先順位를 策定하기 위해서는 雇傭資料는 就業에서 벌어들이는 所得뿐만 아니라 家口에서 벌어들이는 所得과 이를 벌어들이기 위해 參與하는 人員數와 家口數를 함께 把握될 수 있게하고 또 이들中에서 가장 不利한 條件에 있는 範疇도 識別할 수 있도록 所得과 連結하여 把握되어야 한다.

120. 勞動을 所得의 源泉으로서 보는 統計는 또한 政府雇傭政策의 評價, 特히 勞動의 所得效果와 基本的 必要性 그리고 貧困者들의 生産的 資產으로서의 勞動을 評價하는 데도 利用될 수 있다. 이러한 資料를 遡及해서 보면, 各 個人이나 各 家口間의 所得水準 및 分配 等を 觀察할 수 있고, 就業과 失業의 水準이나 構成에 관한 所得保障 또는 再分配政策의 效果를 分析할 수도 있다.// 將來를 展望하는 適切한 推計는 將來의 給與나 所得水準을 推定하고 計劃하는데 必要한 基本的 情報를 提供할 수 있고 將來의 貯蓄 및 消費性向을 研究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提供할 수 있다.

121. 上述한 바와 같은 廣範한 目的과 利用外에도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資料는 特別한 目的을 위해 多樣하게 利用된다. 예를 들

면 美國의 失業統計資料는 各州나 地域社會에 必要한 雇傭 및 訓練에 所要되는 聯邦資金을 割當하는데라던지 또는 地方公共事業計劃 樹立을 위한 資料로 쓰인다. 勞動力資料는 또한 副次的인 說明變數의 하나로서 勞動市場의 分割理論의 試驗에서 부터 出產力과 人口移動 Model의 作成에 이르기까지 모든 種類의 調査를 위한 研究 努力에도 利用된다. 끝으로 記述的 및 分析的 目的으로 人口全體를 社會經濟的 條件에 焦點을 두고 研究하거나 人口의 어떤 特殊側面 卽 少年就業, 雇傭機會와 參加上의 人種 및 性에 따른 差別 같은 問題를 研究하는데 이용된다.

註 記

(1) 雇傭에 관한 이들 側面中 몇가지는 Amartya Sen 이 “Employment, technology and development” (國際勞動局의 世界雇傭計劃 [World Employment Programme ; Oxford, Clarendon Press, 1975] 體系範圍에 관한 研究에서 取扱하였다. 좀더 詳細한 內容은 Guy Standing의 “Basic needs and the division of labour”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Karachi], 14卷第3號 1980年3月號)를 參照할 것.

(2) 노르웨이에서의 이 方法을 說明한 것으로는 Eivind Hoffmann의 “Accounting for time in labour force surveys”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 [Geneva, ILO], 1981-1 pp.9~20)를 參照할 것.

(英文 및 佛文, 스페인語抄添附)

第V章 體系, 概念 및 定義

122. 現行 國際勸告에 具體化되어 있는 勞動力의 概念體系는 前章에서 言及된 여러가지 目的을 어느 程度 充足시켜 주고 있으나 몇가지의 修正補完이 必要하다.

主要 提案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現行 經濟活動人口의 概念體系에 現狀態活動人口(勞動力)와 平常狀態活動人口를 包含하도록 改編함.

(2) 勞動力을 “賃金勞動力”과 “非賃金勞動力”의 두가지 範疇로 分明히 區分한다. “賃金勞動力”은 다시 就業者와 失業者로 分類하고 “非賃金勞動力”은 “有業者(with work)”와 “無業者(without work)”로 區分함.

(3) 非經濟活動人口중 生産과 福利에 寄與하고 있는 사람들은 別途의 範疇로 分類할 수 있도록 함.

(4) 現行 國際勸告에 따른 狹義의 定義에 의한 失業과, 일거리를 求하지는 않았으나 賃金就業이 可能的 사람들을 包含한 廣義의 定義에 의한 失業의 두가지 計測을 準備함.

(5) 可視的 不完全就業(Visible underemployment)의 計測을 體系(frame work)에 包含시키되, 不可視的 不完全就業(Invisible underemployment)은 包含시키지 않음.

(6) 就業과 所得間의 關係를 測定할 수 있도록 別個의 體系를 마련하되 相互關聯性이 있도록 함.

經濟活動人口

123. 經濟活動人口는 調査對象期間으로 設定된 特定期間中 經濟財의 生産이나 서비스를 위하여 勞動力을 提供한 모든 男女로 構成된다.¹⁾ 이에는 民間活動人口와 軍服務者가 包含된다. 經濟財와 서비스를 定義하는 概念은 國際聯合(U.N)의 國民計定體系(SNA)에 있어서와 같다.²⁾ 調査對象期間은 短期(1週日以內)로 할 수도 있고, 長期(調査直前 1個月에서 12個月間 또는 前年度)일 수도 있다.

124. 經濟活動人口는 짧은 調査對象期間을 擇하는 現狀態接近方法(current status approach)과 長期間을 調査對象으로 하는 平常狀態接近方法(usual status approach)으로 測定할 수 있다. 짧은 調査對象期間을 基準으로 現狀態를 測定하여 얻어지는 結果를 “現狀態活動人口”(勞動力)라 하고, 長期를 擇하여 平常狀態를 把握하여 얻어지는 結果를 “平常狀態活動人口”라 한다 (第1圖參照). 어떤 接近方法을 擇하여 測定하느냐는 目的이나 資料蒐集計劃 等に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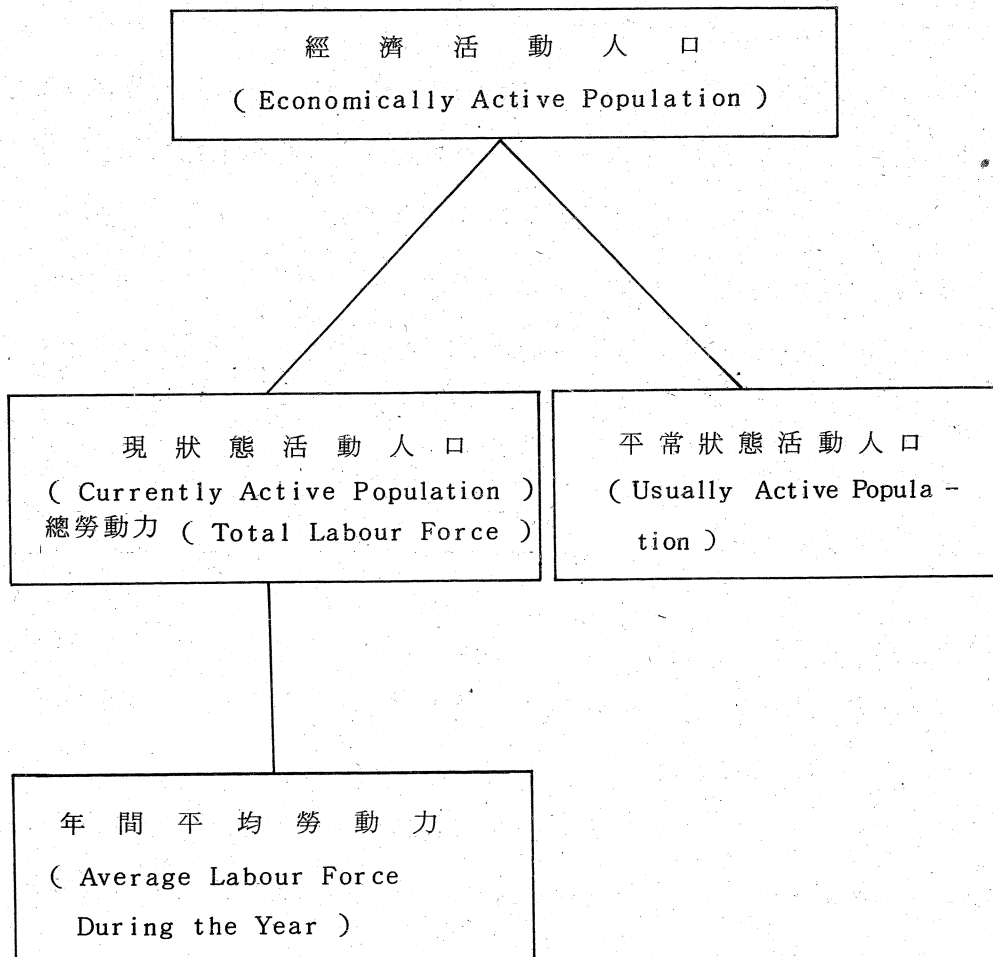
現狀態活動人口

125. 現狀態活動人口(勞動力)는 現在의 活動狀態를 精密히 測定하고자 할 때 利用된다.

특히 이 概念은 家口標本調査나 反復的인 資料蒐集計劃 例를 들면, 事業體調査와 같은 調査에 依하여 就業, 失業 및 其他 勞動

〈第1圖〉

- 經濟活動人口：
- 提案體系
- 第13次國際勞動統計會議（1982）



力과 關聯된 情報를 測定하기 위해 使用된다.

調査가 月別, 分期別 또는 年別로 定期的으로 實施할 수 있다면, 이러한 調査의 結果에 의하여 季節變動이나 最近趨勢에 대한 情報를 얻을 수 있다. 調査가 年中 反復적으로 繼續되지 않더라도 標本이 年間을 網羅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結果는 그 해의 平均 現狀狀態活動人口 (또는 平均 勞動力)에 對한 情報를 提供한다. “平均 勞動力”이란 概念은 季節變動의 影響을 받지 않을 뿐더러 長期의 期間을 調査對象期間으로 하는 平常狀態接近方法을 取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複雜한 問題의 影響을 받지 않는 安定된 年間 活動狀態를 測定할 수 있다는 뜻이다.

平常狀態活動人口

126. 平常狀態活動人口의 計測은 年間の 活動에 甚한 季節變動이 있을 때 이로부터 하나의 支配的인 代表的 樣相을 찾아내고자 하거나 人口센서스와 같이 年中에 여러 차례에 걸쳐 調査를 反復할 수 없을 때 “必要한 計測方法이다.” 따라서 1年이라는 期間에는 모든 農事절과 氣候上의 週期가 內包되고 있음으로 平常狀態活動人口를 計測하고자 할 때에는 調査對象期間을 1年間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27. 調査의 主된 目的이 現狀狀態活動人口를 計測하고자 하는 境遇에도 平常狀態活動人口에 관한 測定으로 補充 資料를 얻을 수 있다. 平常狀態와 現狀狀態와의 差異는 特히 分析的이고, 政策關聯의이며 또한 短期的인 調査對象期間中에는 非勞動力이었으나 平常狀態로 보

아서는 活動狀態에 있었던 사람을 가려 내는데에도 利用된다. 이러한 範疇에 속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지난해의 거의 大部分의 期間동안 經濟活動을 하였으나 調査當時에는 非活動狀態에 있었던 사람(例: 隱退者)

(b) 바쁜 季節(農繁期)에는 經濟活動을 하고, 바쁘지 않은 季節(農閑期)에는 活動을 하지 않는 사람

(c) 일거리의 有無에 따라 隨時로 勞動力과 非勞動力이 되풀이 되는 사람이나, 平常的으로는 活動狀態에 있는 사람이 어떤 理由로 해서 對象週間에는 活動을 하지 아니한 隨時 勞働者

128. 平常活動人口가 一般的으로 現狀態活動人口보다 크지만 平常狀態의人口가 반드시 調査時點當時에 現狀態活人口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新規勞動力이나 放學中 經濟活動에 參與하는 學生이 여기에 屬한다.

129. 一般的으로 平常狀態活動人口의 計測과 그 結果의 特性은 現狀態活動人口를 把握할 때 보다도 더 過去의 記憶에 依存하게 되므로 이러한 屬性의 應答誤差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就業이나 失業의 特性에 관한 詳細한 計測이나, 職業, 產業 等に 의한 細分은 平常狀態活動人口를 가지고는 試圖하지 않으며, 특히 1年間과 같이 對象期間을 길게 잡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軍人

130. 現狀態活動人口와 平常狀態活動人口의 資料를 編制할 때에는 軍의 構成員은 別個의 範疇로 區分하여 必要에 따라 이러한 範疇

의 사람들을 總活動人口에서 除外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國際比較의 目的上 모든 軍의 構成員은 就業者로 分類해야한다. 軍의 構成員은 調查當時의 最近 國際標準職業分類(ISCO)에 따라 定義될 수도 있다. 現行 ISCO에서는 軍人이란 “軍에 服務하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定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女性補助 服務者를 包含하여 志願이든 非志願이든 相關없이 民間部門에의 就業이 禁止된 사람을 말한다. 즉 正規 陸海軍의 軍人과 其他軍服務者 및 3個月 以上 期間過程의 訓練을 받고 있거나 服務中인 臨時兵力을 包含한다. 그러나 國防關聯 政府企業體의 行政要員과 같은 民間就業者는 除外된다.

例컨데, 警察官(憲兵除外), 稅關檢閱官, 武裝民間被傭人, 常時服務者가 아닌 豫備軍 또는 民間人으로서 短期間의 軍事訓練을 위하여 臨時 入營中인 사람들은 除外된다.³⁾

131. 軍兵力의 臨時構成員(특히 徵兵된 兵力)⁴⁾을 取扱하는 데는 나라마다 그 慣行이 相當히 다르므로 正規軍人과 臨時服務者를 可及的 別途로 編制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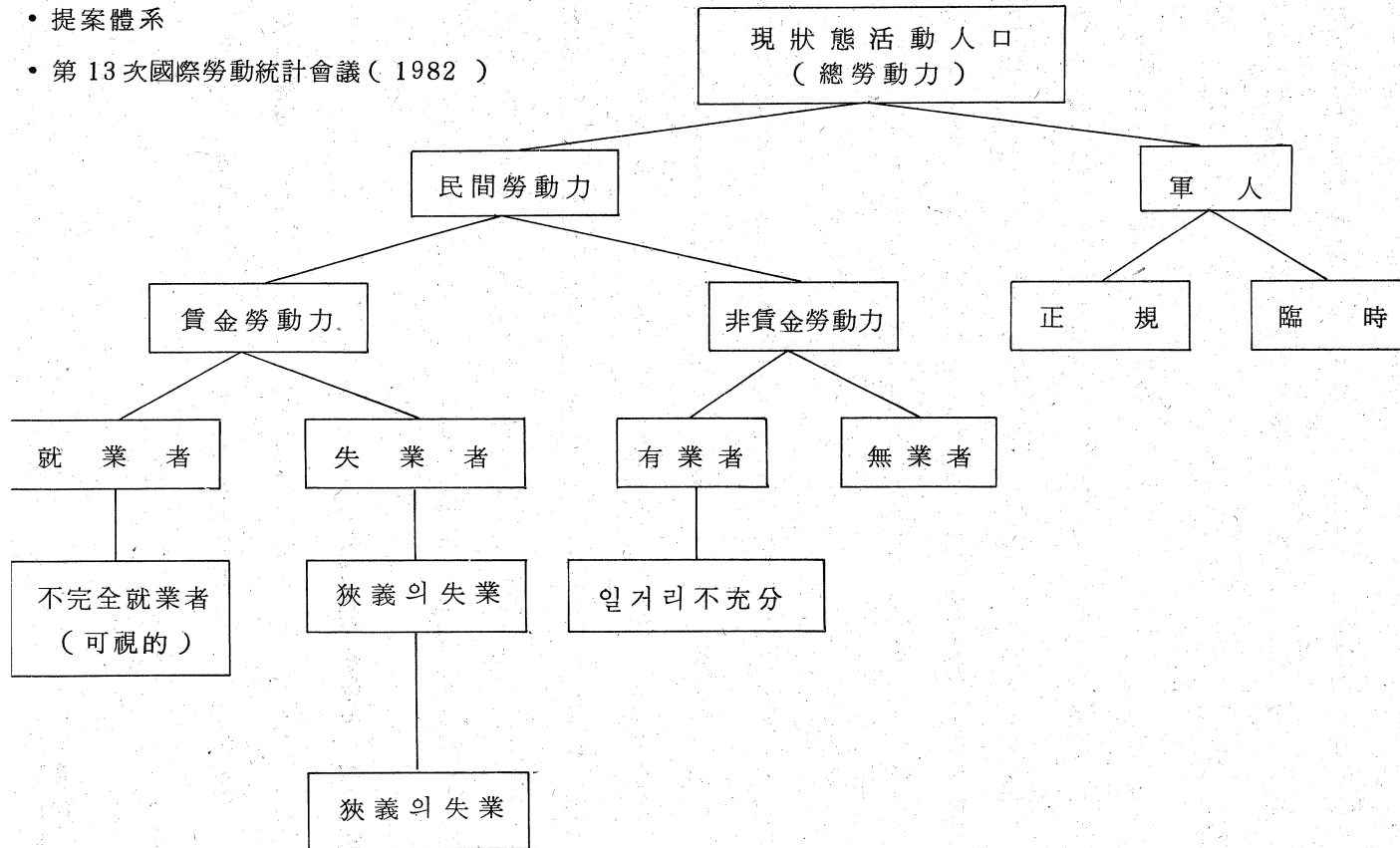
賃金 및 非賃金 勞動力

132. 民間勞動力(現狀態民間活動人口)을 두개의 範疇로 分類할 것을 提案한다. 즉, “賃金勞動力”과 “非賃金勞動力”이다. (第2圖 參照)

賃金勞動力

〈 第 2 圖 〉

- 現狀態活動人口：
- 提案體系
- 第 13 次國際勞動統計會議 (1982)



133. “賃金勞動力”이란 賃金就業者로 從事하고 있거나 그러한 일 자리를 求하고 있으며, 就業이 可能的한 사람 모두를 말한다. 一般的으로 經濟財와 서어비스 生産에 參與하고 이에 대한 代價를 直接 報酬로 받는 모든 사람들을 包括한다. 여기에는 또한 서어비스를 提供하고 受益者로부터 直接的으로 報酬를 받는 被傭者나 自營者(Own account worker) 즉 醫師, 辨護士, 理髮士, 택시 運轉士, 修理士 등도 包含된다.

非賃金勞動力

134. 또 다른 範疇로서 “非賃金勞動力”을 들 수 있는 바, 이들은 “民間勞動力中 經濟財의 生産이나 서어비스를 (提供한 代價를) 事業收入의 形態로 報償받는 사람들이다. 이 範疇에는 雇傭主, 自營業者 (“賃金勞動力”에 屬하는 自營者는 除外) 無給家族從事者 및 生産協同組合員 등이 包含된다. 여기에는 또한 自己의 事業이나 農場을 經營하기 위한 準備를 하고 있는 사람도 包含된다. 예를 들어보면, 가게主人, 新聞普及所主, 洋服店主, 農夫 등이 여기에 屬한다.

135. 提供한 서어비스에 대한 代價를 直接 報償받는 自營者와 그렇지 않은 自營業者를 區分하는 것은 實除上 매우 어렵다. 거의 모든 自營業者는 그들의 서어비스를 提供할 때 多少의 裝備나 固定資本을 함께 利用하게 되므로 그 얼마를 勞動投資代價로 보느냐 하는 것을 決定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어떠한 境遇에는 各要素에 對한 代價를 分類하는 데 主觀性이 內包된다. 現實的인 觀點에서 볼 때 賃金就業의 概念은 俸給과 賃金取得을 위해 被傭되

어 있는 狀態에 限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겠다.

區分の 必要性

136. 賃金就業에 대하여 狹義 혹은 廣義의 定義를 使用하든 하지 않든 勞動力의 賃金 또는 非賃金成分을 區別해 두는 것은 概念上의 觀點에서나 計測目的上 모두 必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議論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題目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137. 첫째는, 政策과 關聯된 問題이다. 勞動市場政策은 基本的으로 “賃金勞動力”과 關聯되는 것이다. 雇傭(job)의 創出과 公共事業計劃은 根本的으로는 賃金就業을 產出하는데 目的이 있다. 靑少年教育, 成人再教育 등은 主로 賃金 및 俸給勤勞者들이 技術水準向上과 士氣昂揚을 期하고 자 하는 것이다. 失業保險이나 以外の 短期性補償이나 最低賃金制와 같은 所得保障策은 被傭人에게만 適用이 限定되는 것이다. 이것은 勞動市場政策이 賃金勞動力以外的 다른 範疇에 속하는 勞動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效果는 主로 間接的인 것이라 하겠다. 政策이란 廣範圍한 것이다. 年中 내내 일할 수 있는 業務量을 마련하는 問題, 雇傭의 創出, 그리고 所得保障策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活動에 對한 所得產出能力을 向上하기 위한 手段과 方法 등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賃金과 非賃金勞動力에 관한 각각 다른 統計를 가지고 各種問題를 明確히 評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 두가지 統計值의 比率은 勞動市場開發을 위한 하나의 有用

한 指標가 될 수 있다.

138. 두번째는, 이들 두 範疇에 屬하는 사람들의 活動이 각각 다르며 또한 特性도 달라서 經濟에 미치는 影響 또한 重要하다는 點이다. “賃金勞動力”은 “非賃金勞動力”보다 景氣變動에 더욱 敏感하게 影響을 받는다. “非賃金勞動力”의 人口學的 構成을 보면 “賃金勞動力”과 相異하다. 하나의 理由로서는 農業就業者와 無給家族從事者의 거의 大部分이 女性이나 젊은 사람들로 構成되어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非賃金勞動力”의 또 다른 特性의 하나로서는 이 範疇에 屬하는 사람들에게는 表面上 失業이 없다는 點이다. 家族이 所有하고 經營하는 農場, 零細企業 및 商店 等에는 때때로 일거리가 뜸할 수도 있고 收入에 變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事業에서는 表面上 失業이란 存在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非賃金勞動力”을 “賃金勞動力”과 分類하고 다시 “賃金勞動力”을 就業者와 失業者로 區分하면 보다 意味가 있다. 이것은 失業率의 國際比較를 賃金勞動力의 失業比率로 比較하는 것이 容易하며 또한 國家間의 比較를 위한 正確한 失業의 測定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39. 세번째의 論點은 計測과 解釋의 正確性の 問題와 關聯된 것이다. 一般的으로 “賃金勞動力”은 “非賃金勞動力”보다 正確하게 計測할 수 있으며 또한 就業, 就業時間 및 就業所得에 關한 聯關資料를 “賃金勞動力”으로 부터 蒐集하는 것이 보다 實質的이고 意義가 있다는 點에 있다.

就業者, 有業者 및 關聯範疇의 計測

140. “賃金勞動力”과 “非賃金勞動力”의 區分에는 勞動力의 構成間에 共通點이 內在되어 있다. 이節에서는 ICLS (1954)의 就業의 定義를 “賃金就業者 (paid employment)” (被傭者)와 “自營就業者 (self-employed and others)”로 區分하도록 改正하였다 (第3圖參照). 改正過程에서 特히 無給家族從事者에 對하여는 相當한 補完과 修正이 加해졌다. 이에 追加하여 非經濟活動人口에서도 生産과 福利에 寄與한 사람들을 따로 가려내기 위하여 別途의 範疇을 設定하였다. 이 範疇에는 家事者, 地域社會自願奉仕者 및 UNSNA (UN 國民計定體系)의 定義에 의하여 生産活動 以外의 範疇에 分類되는 生計를 위한 일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도 包含하고 있다.

< 就業者 (Persons in employment) >

141. 第8次 ICLS (1954)에 따르면 就業者란 一定年齡以上의 사람으로서 다음 各 項에 該當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a) 일했음 (at work): 給與나 利潤을 얻기 위하여 “一週 或은 一日間의 特定期間中,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
- (b) 一時休職: 지금까지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特定期間中 疾病, 傷者, 勞動爭議, 休暇, 休業, 缺勤이나 日氣不順, 裝備故障 等과 같은 理由로 잠시 쉬고 있는 자

142. 이 定義에는 雇傭主, 自營業者 및 特定期間 中 적어도 正 常勤勞時間의 半以上을 일한 無給家族從事者가 包含된다. 그러나 그 外의 無給家族從事者와 無報酬의 休職者 그리고 現在 職場, 事業體

또는 農場은 없지만 앞으로 調査對象期間이 지나면 곧 새로운 일 거리를 始作하고자 準備하고 있는 사람은 除外된다.

143. 就業者의 定義를 賃金就業者에게만 限定하여 適用하고자 할 때에는 “일했음 (at work)”을 規定하는 內容中에서 “利潤 (profit)”이란 用語만 削除하면 된다. “給與를 받는 일 (work for pay)”이란 嚴密하게 보면 모든 被傭者만을 包括하나 廣義로는 自己 스스로 提供한 서비스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報償받는 自營者도 包含된다고 解釋되어야 한다.

144. 賃金就業의 定義에는 賃金見習生 뿐만 아니라 宿食의 形態로 報酬를 받는 見習生도 包含된다. 常勤制 (full-time)이든 時間制 (part-time)이든 간에 調査 對象期間中 就業한 學生은 包含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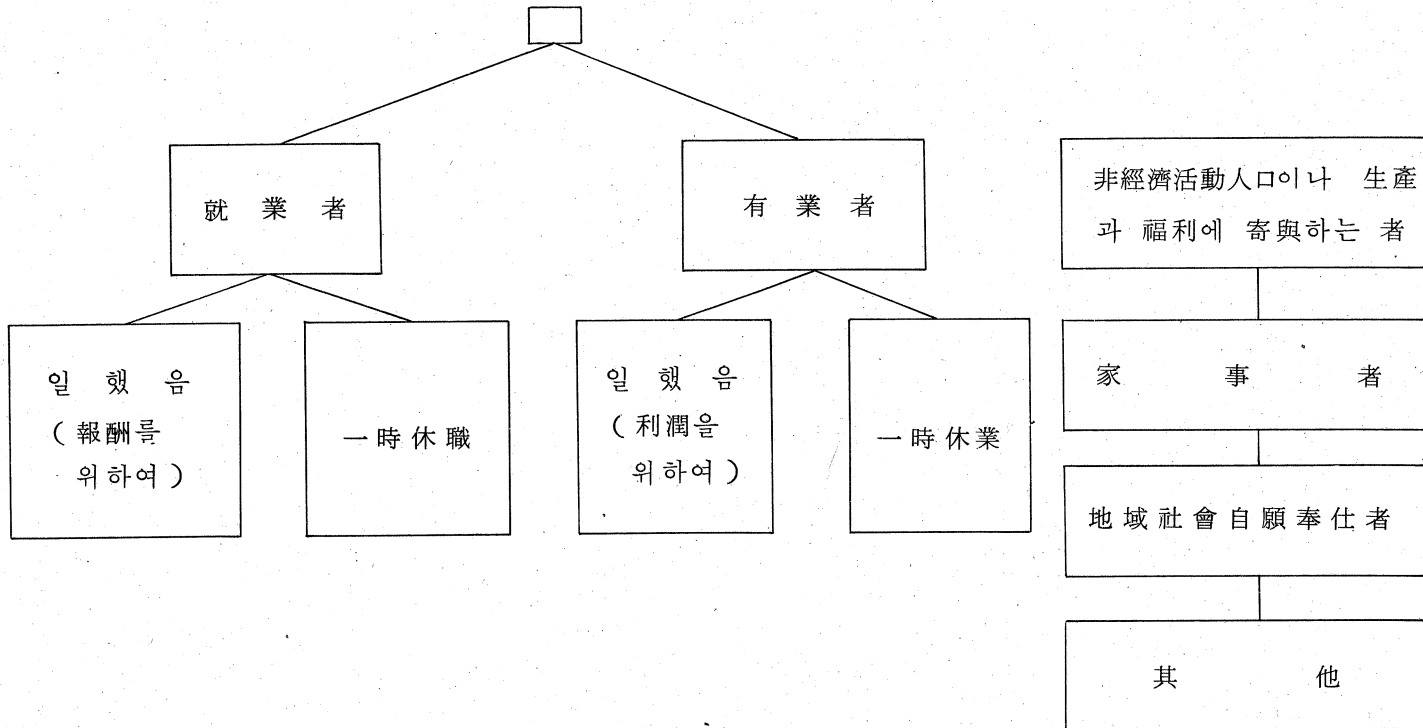
145. 不完全就業과 臨時的인 賃金勞動者를 完全히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조금이라도 일 (Some work)”이란 用語를 定義하는데 있어서 調査對象期間中 적어도 한 時間以上 일한 모든 사람을 包含하는 것으로 解釋되어야 한다.

146. “一時休職 (with a job but not at work)”의 範疇에는 一時解雇, 學業으로 因한 休職, 出產休暇 等に 있는 사람으로서 雇傭主의 確實한 復職保障을 받은 사람은 이에 包含된다. 復職保障의 確實性與否는 各國의 形便에 맞추어 다음 基準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6)

(a) 一時解雇, 休暇 또는 缺勤의 期間

〈 第 3 圖 〉

- 就業者, 有業者 및 非經濟活動人口中 生産과 福利에 寄與한 者 :
- 提案體系
- 第 13 次國際勞動統計會議 (1982)



(b) 復歸日字의 有無, 偶發的 事由로 因한 休務 또는 休職期間의 經過後 復歸에 대한 保障有無

(c) 賃金이나 俸給의 支給 與否

147. 이러한 基準들은 原則的으로 “職場은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者”를 把握하기 위하여 擴大適用되어야 한다. 만일 豫備軍에 나가 있어 休務中인 사람이 一但 軍兵力의 臨時構成員으로 分類되었으면 이 範疇에서는 除外되어야 한다.

有業者 (Persons with work)

148. 有業者란 1週間이나 1日間 等과 같이 特定短期間中 利潤을 얻기위하여 (또는 家計收入을 올리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일을 한 一定年齡層以上の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이 範疇에는 現在 受注된 일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特定期間中 疾病이나 傷害, 日氣不順, 休暇 또는 宗教的·儀禮的인 特別한 事由로 一時 休暇中인 사람들도 包含된다. 그러나 季節이 맞지 않아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調査對象期間이 끝나는데로 새로운 事業이나 農事일을 시작하고자 準備中인 者로서 現在 일거리가 없는 사람 (without work)은 除外된다.

149. 雇傭主, 自營業者, 無給家族從事者, 生産協同組合員 等은 “有業者 (with work)”로서 “일하였음 (at work)” 또는 “일하지 않았음 (not at work)”과 같이 境遇에 따라 分類될 수 있다.

150. 調査對象期間中 賃金就業者나 賃金就業者로서 利潤 (또는 家計收入)을 目的으로 일한 사람은 “有業者 (persons with work)”

로 分類하지 않는다. 이러한 範疇의 사람들은 賃金 勞動力의 就業
者와 失業者로 分類하며, 이와같이 이들을 別途의 範疇로 區分해
두면 必要에 따라 各各 다른 統計를 編制할 수 있다.

151. “有業者 (persons with work)”의 定義에서 利潤 (profit)
이라는 用語는 UN의 SNA 體係에서 定義된 바와 같이 通貨去來로
써 얻어지는 經濟的 利得의 二가지 側面을 網羅하는 廣義로 解釋
되어야 한다. UN의 SNA에서는 다음과 같은 形態의 生産과 自
家消費 (生計를 위한 生産)를 經濟的 產出로 看做할 것을 勸告하
고 있다.

- (i) 家口自體의 消費를 위하여 生産하는 第1次的產物 (即, 農水
産業, 林業, 伐木業, 鑛業 및 採石業 等の 產物)이거나 이
들: 家口에 의한 加工
- (ii) 自家消費를 위하여 生産하는 財貨나 用役으로서 商品化될 수
도 있는 財貨나 用役
- (iii) 固定資本形成과 所有居住의 維持

無給家族從事者

152. 無給家族從事者는 다른 範疇에 속하는 就業者和 똑같이 취
급되어야 한다. 調査對象期間中 正常勤勞時間의 半以上을 일하도록
되어 있는 無給家族從事者의 條件은 다른 就業者 (雇傭主, 自營業者,
被傭人, 生産協同組合員 等)를 規定하는 1時間以上을 일해야 하는
條件과 比較하면 適切치 못한 것 같다. 無給家族 從事者들이 많이

従事하고 있는 農業에서는 一般的으로 農事일을 家口單位로 하며 모든 家口員이나 또는 거의 大部分의 家口員들이 分擔하여 運營하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더우기 農業 및 이와 關聯된 經濟活動은 季節을 타는 것임으로 正常勤勞時間이란 別로 意味가 없는 것이다. 無給家族從事者の 最小 就業期間을 다르게 設定해 놓으면 就業時間 別 就業人員數 分布가 最小就業時間階層에서 흔들리게 된다. 또한 大部分의 無給家族從事者는 女性들이거나와 어린이들이므로 性別, 年齡別分布統計도 影響을 받게 된다.

非經濟活動人口中 生産과 福利에 寄與한 者

153. 經濟活動人口計測을 위하여 “일”이란 概念을 (UN의 SNA에서 定義된 바와 같이) 生産活動의 限界를 넘어서 擴大適用하면 그 概念의 本來의 뜻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느껴지나 非活動人口의 範疇에 屬하는 사람으로서 生産과 福利에 寄與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雇傭 및 이의 關聯統計의 體系內에 包含시켜 取扱되어야 하며 또한 別途로 統計를 集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部類의 사람들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家事者, 地域社會自願奉仕者나 어떠한 限界線上的 糊口之策的 生産活動에 従事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54. 家事란 家庭에서 이루어지는 奉仕로서 家口의 經濟的 福利에 寄與한다는 뜻에서나, 또는 아이들을 돌 보는 경우 人口의 再生産이란 뜻에서 生産的인 것이라 하겠다. 産業化된 나라에서는 많은 家內活動이 家口로 부터 市場으로 옮겨가고 그 產物은 國民計定에 計上된다. 그러나 開發國에서는 이와는 달리 特히 農村에서

의 活動은 家口에서 이루어지고 國民計定에서 除外된다. 人口센서스를 위한 UN의 原則과 勸告案에서도 家事者(home - maker)는 別途로 區分되며 性別에 關係없이 非經濟活動人口로서 자기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 例컨대 主婦 또는 집안 일이나 이들을 돌보는 家族으로 定義하고 있다.⁷⁾

155. 家口の 構成員들이 마을 開發을 위하여 報酬나 아무런 利得을 바라지 않고 마을 事業에 自願奉仕하는 活動 卽, 옹당이 埋立이라던지, 탕크淸掃, 마을길의 建設, 水利와 水害防止事業等은 開途國에서 흔히 하는 活動이다. 特히 農村地域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活動은 固定資本形成에 寄與한다는 點에서 確實이 經濟的 意義를 갖고 있으나 普通 經濟活動의 計測目的으로는 取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活動이 意義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把握할 수 있도록 別途의 統計를 編制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56. 開途國의 어떤 地域에서는 糊口之策의 生計를 위한 活動에 參加하는 많은 사람 特히, 女性과 아이들의 活動이 비록 一般的으로는 經濟活動으로 看做되지는 않지만 總生産의 意味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寄與를 하고 있고 또한 相當한 時間을 所要하고 있다. 이러한 일의 一般的인 活動形態는 다음과 같다.

- 住居와 農場施設物の 修理 및 營繕
- 大量의 農作物 貯藏作業
- 用水의 遠距離取水
- 衣服만들기
- 一次産物에 속하지 아니한 手藝品製作

이러한 활동 또는 이와 類似한 活動이 意味가 있는 것이라면 別途의 統計로써 이를 把握하고 이에 속하는 사람들은 集計하도록 해야 한다.

失業者와 無業者 (Persons without work)의 計測

157 . 第8次 ICLS 에서 定義된 바 있는 失業의 概念에는 基本的으로 세가지 條件이 內包되어 있다. 卽, 失業者로 定義된 사람은

"(a) 일거리가 없는 사람, (b) 卽時 就業이 可能한 사람, (c) 報酬나 利潤을 위하여 求職活動을 한 사람 等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例外가 있는데 (a)와 (b)는 無報酬로 臨時 또는 一定期間 없이 一時解雇된 사람들의 境遇는 包含하지 않는다. 그리고 條件 (c)는 特定 調査對象期間以後 一定日에 새로이 일을 始作하고자 準備中인 사람들의 境遇는 包含하지 않는다. 以上の 基本 條件과 例外事項은 그동안 批判을 받아 왔다.

現定義의 特性上 制約性

158. 求職活動에 重點을 두는 定義는 多少 制限的인 것으로써 特히 開發國에서는 이에 의한 失業者의 把握은 充分치 못하다는 論難이 있다. 求職活動은 根本的으로는 일거리에 관한 情報를 찾는 하나의 過程이므로 主로 賃金就業과 關聯되는것으로써 이러한 情報가 交換되는 通路가 있어야 하며 또한 利用되어야만 意味가 있다. 西歐産業化된 國家에서는 이것이 一般化되어 있으며, 大部分의 勤勞

者들이 被傭人이다. 그리고 公共 또는 民間 勞動情報交換이나 職業紹介所, 新聞의 就業廣告 등이 普編化되어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求職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利用한다. 開途國에서는 大部分의 就業者가 自營就業이거나 家內企業에 從事하고 있다. 또한 勞動情報交換이나 類似制度裝置도 充分히 發達되어 있지 않으며 있다고 하여도 흔히 都市地域에만 限定되어 있다. 農村地域에서는 地域의 特性때문에 大部分의 사람들이 그 地方의 就業可能性에 관한 거의 完全한 情報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체로 일거리를 찾는 實際的인 行動을 取할 必要가 없다.

159. 이와 類似한 理由로서 어떤 나라에서는 調査나 센서스 時에 失業에 관한 廣義의 定義를 採擇하고 있다. 例컨대 印度에서는 第 32次 全國標本調査實施當時 “被傭者”로 看做될 수 없는 사람이 調査對象期間中 “求職하였거나” 또는 “求職하지는 않았으나 即時 就業이 可能했던” 사람이면 “失業者”로 處理하였다. “即時 就業可能性”에 관한 概念은 定義되지 않았고 調査者和 應答者の 主觀的 決定에 거의 依存하는 것이었다. 다른나라들은 다른 概念을 追加設定했다. 例를 들면 “일을 願하였음”(자마이카, 필리핀) “일할 意思가 있음”(韓國)이라든가, 어떤 部類에 屬하는 勞動者를 包含토록 失業의 概念을 擴大하였다. 例컨데 “季節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란)이라든가 “일거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거리를 찾지 아니한 사람”이나 “適當한 일거리가 없을 것으로 믿어서”(홍콩) 등이다.

求職斷念者 (Discouraged workers)

160. 求職斷念者の 計測과 統計的 處理에 관한 問題(即 일거리를 願하기는 하나 일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믿기때문에 일거리를 찾아보지도 않은 사람)는 이미 西歐工業國에서도 提起되어 왔다. 現行國際基準에서는 이들 求職斷念者들을 失業者로 잡지 않고 있으며 또한 明確히 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의 包含問題를 提起한 論者들은 求職斷念者들을 그 나라의 潛在的 勞動力供給의 한 部分이며 經濟에서는 勞動力의 不完全利用要因으로 作用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就業이라는 期待에서 어긋난 失望의 結果로서 그들이 하지 못한 일과 벌지 못한 所得은 社會와 그들 自身の 損失이며, 이것은 失業으로 因하여 損失된 生産이나 所得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와 反對로 求職斷念者들은 失業의 概念에 包含시키는 것은 失業의 概念에 相當한 다른 要素들을 追加해야 될 것이므로 時系列을 混亂케 하고 失業의 期間과 理由를 分類하는 데도 問題가 생긴다는 主張도 있다.

161. 大部分의 西歐工業國家에서는 現行 公式失業統計에서 求職斷念者를 除外하고 있으나 어떤 나라에서는 그들을 區分하여 別途의 統計로 發表할 것을 試圖하여 왔었다.

一時解雇 (Layoffs)

162. 失業에 관한 現行國際定義에 對하여 提起되고 있는 또하나의 問題는 無報酬로 臨時 또는 期限없이 一時解雇된 사람들을 特別히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⁹⁾ 이의 要點은 아래와 같다. 經濟不

況期에 各國의 企業들이 失業補償制度에 따라 一時解雇 또는 日間이나 週間的 操業短縮의 方便을 쓰고 있으므로 一時解雇者에 대한 統計的 處理은 日間 또는 週間的 操業時間短縮의 影響을 받는 사람들과 均衡을 맞춰야 한다. 現在 一時解雇者는 失業者로 分類하고 있으나 日間 또는 週間的 操業時間短縮의 影響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就業者로 分類하고 있다. 그러므로 國際比較를 위해서는 適切히 定義만 할 수 있다면 一時解雇者를 반드시 失業者로 分類해야 할 必要는 없다고 勸告하고 있다. 卽, 雇傭主가 얼마나 그들에게 確固한 保障을 하였는지의 與否와 求職活動을 했는지의 與否에 따라 就業, 失業 또는 非勞動力으로 分類해야 한다는 것이다.

163. 提示된 一時解雇者의 定義는 就業者의 雇傭(또는 活動)契約이 雇傭主에 의해 一定 또는 無限定 停止되고 이 期間이 經過하면 같은 雇傭主에게 再雇傭될 수 있는 期待와 權利가 認定되는 것을 말한다.

164. 雇傭主로부터 確固한 保障을 받았는지의 與否는 各國의 現實에 맞추어서 아래에 例示된 基準에 따라 決定한다.

- (a) 一時解雇의 經過期間
- (b) 再雇傭日字의 有無 또는 解雇事由가 끝난 後에 復職할 수 있는지의 與否
- (c) 被傭者에 대한 賃金 또는 俸給의 支給與否

165. 雇傭主로부터 確固한 保障이 안된 一時解雇者는 만일 求職活動을 했으며 또한 卽時 就業이 可能하다면 失業으로 分類되며

即時 就業의 可能性은 있지만 求職活動을 하지 않았다면 非勞動力으로 分類한다. 그리고 僱傭主로부터 確固한 保障이 있는 一時解雇者의 경우에는 求職活動을 하지 않았으면 就業者로 分類된다. 나머지 하나의 條件 卽, 一時的 解雇者가 僱傭主로부터 確固한 保障이 있더라도 求職活動을 했고 即時 就業이 可能的 경우에는 國際比較의 目的을 위한 가장 適切한 分類로서 이들을 就業者의 範疇에 包含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合議에 到達하지 못하였다.

166. 失業의 計測에서 그 크기와 構成을 決定하는 여러가지 範疇의 重要性을 위의 說明에서 強調한 바 있지만 失業의 定義를 보다 同質的이고 彈力的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는 國際基準의 相當한 補完이 必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賃金勞動力에 包含되는 失業에 관한 適當한 두가지 計劃方法이 提議된 바, 그 하나는 狹義의 定義이고 또 하나는 廣義의 定義이다.(第4圖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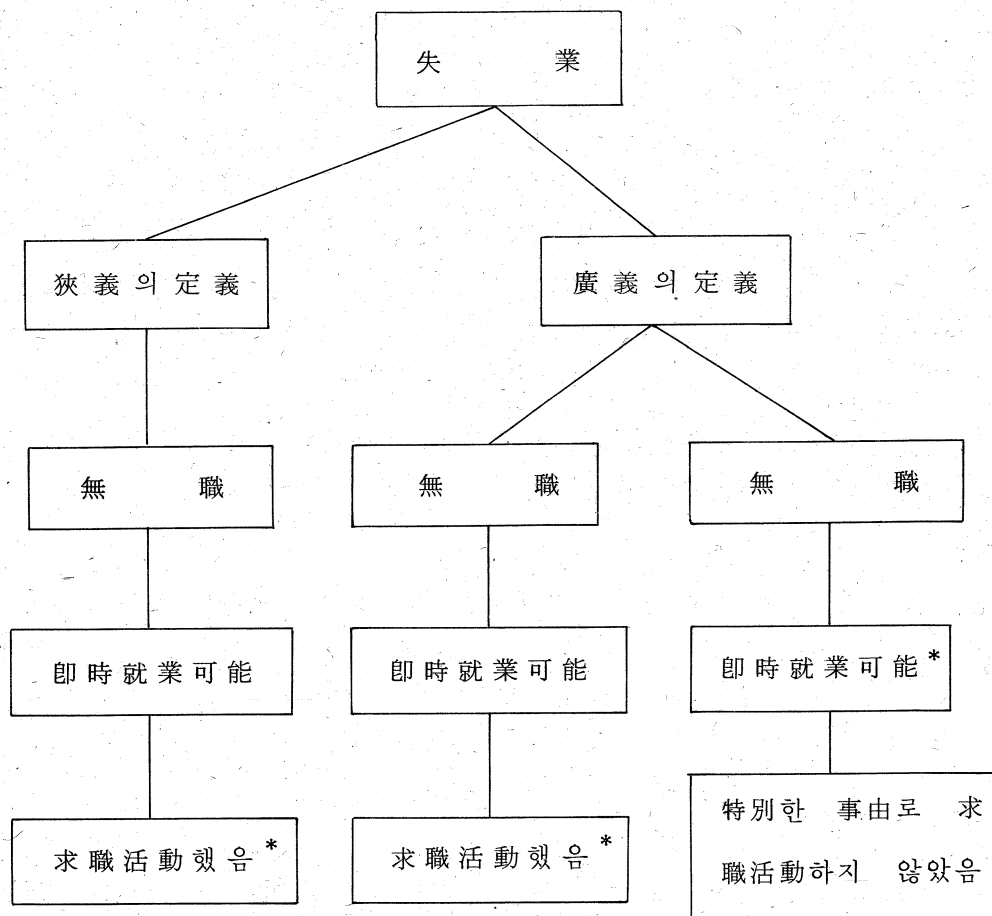
狹義의 定義 (Restricted definition)

167. 狹義의 定義는 現行國際基準에 根據를 둔 것으로서 基本條件의 特性을 보다 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해서 導入된 것이다. 失業에 대한 狹義의 概念을 擴大 適用 할 基本的 條件은 다음과 같다.

(a) 無職 (without employment) : 特定調査期間中에 報酬를 받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僱傭主와의 確固한 保障이 있는 一時解雇者를 包含하는 就業의 定義에서 列擧하고 있는 事由때문에 臨時的

〈 第 4 圖 〉

- 失業：
- 狹義 및 廣義의 定義案
- 第 13 次國際勞動統計會議 (1982)



※ 主要條件

으로 쉬고 있는 자가 아닌境遇

(b) 求職活動 (Seeking employment) : 지난 달과 같은 最近의 特定期間中 full - time 이나 part - time 의 일거리, 臨時的이거나 永久的인 일거리를 찾기 위한 節次를 取하였을 境遇이다. 여기서 말하는 節次란 다음에 列舉된 것들이 包含된다.

公私職業紹介所에 登錄을 하였거나, 雇傭主에게 直接 申込을 하였거나, 工事場이나 工場 등을 찾아서 알아 보았든지, 一定한 集合場所에 가보았거나, 新聞廣告欄에 求職을 해 보았거나 應募를 했거나, 親知를 통하여 附託하여 보았거나, 다른 類似한 方法으로 일거리를 찾아 보았을 境遇이다.

(c) 即時就業可能 : 即時 또는 곧 就業할 수 있는 處地에 있는 狀態 (輕微한 疾病을 除外하고)

廣義의 定義 (Extented definition)

168. 失業에 관한 廣義의 定義에는 狹義의 뜻으로 본 失業에 아래 條件에 맞는 사람들을 追加하여 包含한다.

(a) 無職 (without employment) : 制限된 定義와 같은 條件임

(b) 即時就業可能 (currently available employment) : 狹義의 定義와 같은 條件이나 失業으로 分類될 主要條件을 지금 갖추게 된 者는 除外된다. 이 뜻은 就業이 可能하였거나 適切한 報酬가 提議되어 왔다면 就業할 態勢를 갖추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였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c) 特定한 事由로 求職活動을 하지 않았음 : 最近 特定對象期間

中에 다음과 같은 事由로 何等의 特別한 求職方法을 取하지 않는
경우 :

(i)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ii) 어디서 일거리를
찾을지 몰랐기 때문에 (iii) 一時的 疾病으로 (iv) 日氣不順
으로 (v) 復職을 기다리고 있음 (vi) 求職申請에 대한 結果를 기다림
(vii) 其他 類似한 理由로써 就業可能性과 相反되지 않는 境遇.

이 세번째 條件을 補完하면 : (i) 公表된 現在就業可能性의 信憑性을
把握해 볼 수 있으며 (ii) 서로 다른 定義(狹義 또는 廣義의 定義)
에 따라 結果를 比較할 수도 있음.

169. 廣義의 概念에 따라 失業에 관한 統計를 編制하려면 狹義
와 廣義의 定義에 따른 것을 各各 分類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無業者 (persons without work)

170. 非賃金勞動力의 境遇 調査對象期間中 일이 없는 사람으로써
自己自身の 事業이나 農場을 하기 위하여 具體的인 準備節次를 取
한 사람들을 處理하기 위하여 “失業”이란 用語 代身에 “無業”이란
用語를 使用하도록 提案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對象期間中 일할
道具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또한 이 範疇에 包含될
수가 있다. 農事를 지을 土地가 없는 農夫, 漁業道具를 갖지 못한
魚夫 等이다. 10)

不完全就業者(可視的)와 業務量의 不充分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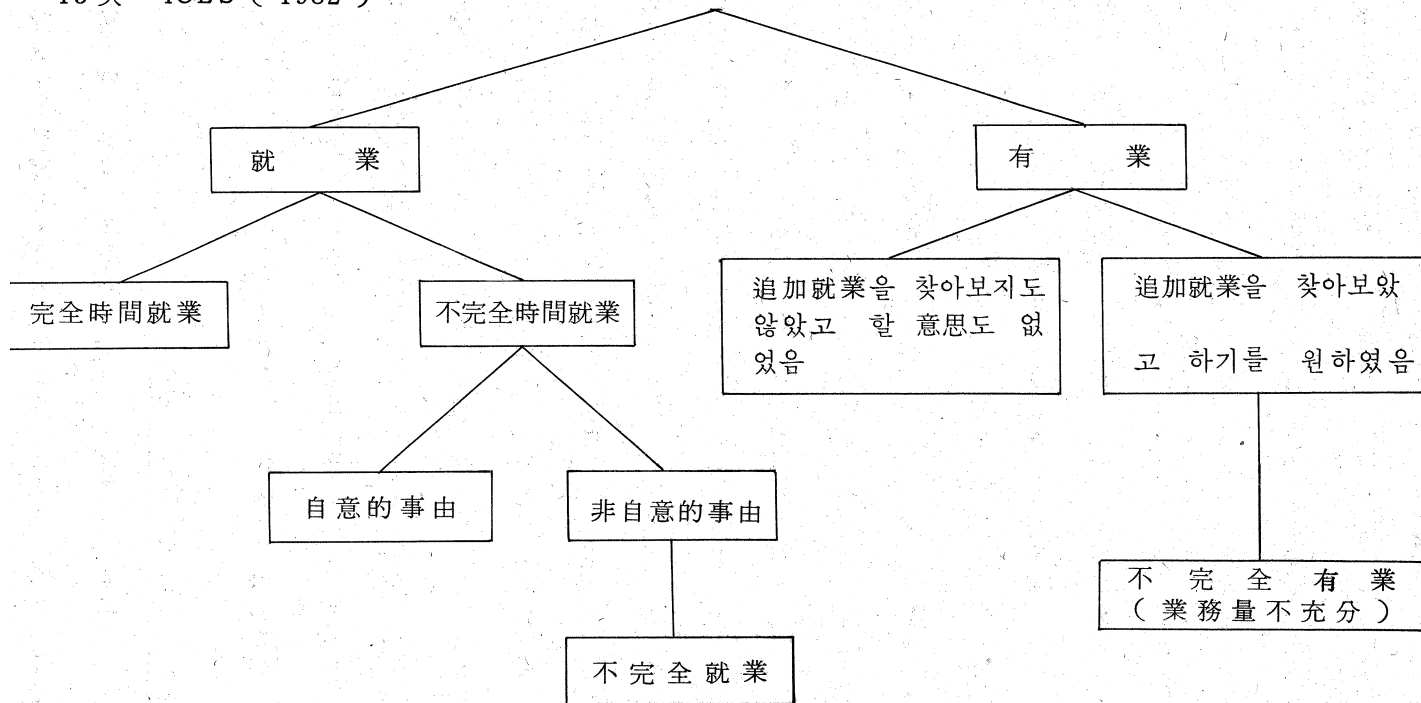
171. 勞動力, 就業 및 失業統計의 體系에 不完全就業을 包含시키는 問題가 1966 年의 ICLS에서 勸告된 바 있다. 이러한 決議案을 實用化하기 위하여 몇 나라의 勞動力 調査에서 實驗的 方法 또는 正常的 方法에 의하여 試圖되었다. (主要 接近法에 관하여서는 第II章에서 既言及) 이러한 調査로서 얻은 經驗으로 부터 可視的 不完全就業의 計測보다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의 計測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을 勞動力體系의 테두리 내에서 測定할 수 없었던 根本的 原因의 하나로서는 두 가지 樣相을 하나의 體系에 混合시키는 데 따른 不可避한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卽 하나는 單一變數(就業時間)의 點推定이 基本이며, 다른 하나는 就業時間이라든가 所得間의 關係와 같이 두개 또는 그 以上の 變數間의 關係를 推定해야 하는 點이다. 또하나의 基本的인 差異點은 所得中의 一部는 貯藏되어 對象期間이 다른 他期間으로 移轉될 可能性이 있는데 이러한 移轉屬性을 就業時間에서 찾아 볼 수 없는 點이다. 이와같은 技術的 研究가 可視的 不完全就業의 計測을 勞動力의 基本體系에 統合시킬 수 있는 어느 程度의 正當性을 뒷받침해 줄 수 있지만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의 境遇에는 그렇치 못하다.

不完全就業(可視的)의 統合

172. 따라서 可視的인 不完全就業에 관한 現行國際勸告를 따라 “可視的”이란 用語는 卞고, 就業의 構成으로 規定된 不完全就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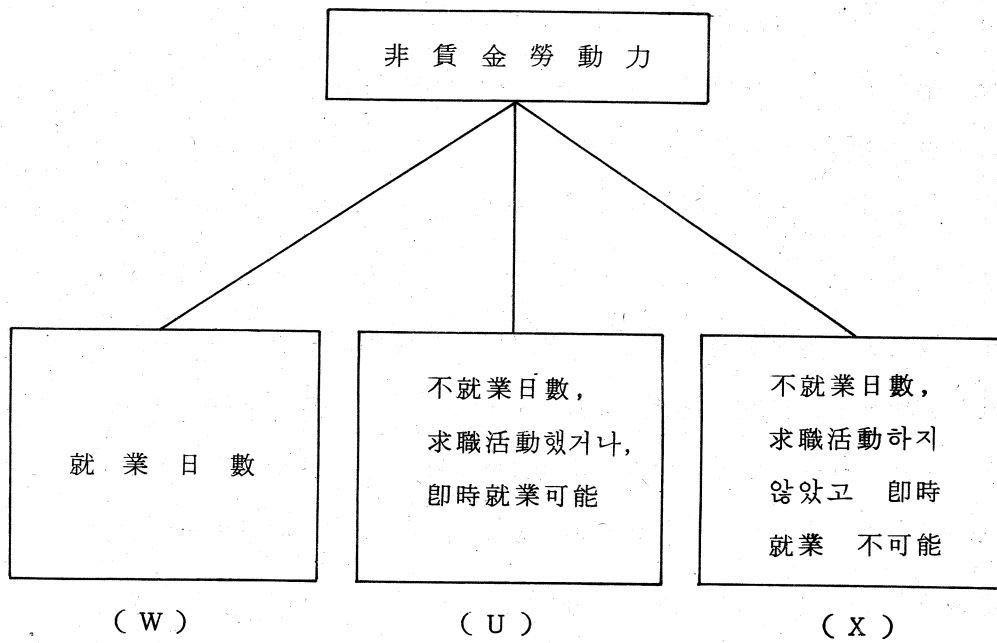
〈第 5 圖〉

- 不完全就業斗 業務量不充分度
- 提案體系
- 13次 ICLS (1982)



〈 第 5 圖 a 〉

- 業務量의 不充分度
- 代替體系
- 13次 ICLS (1982)



$$\text{業務量 不 充 分 度} = \frac{U}{U + W}$$

란 用語를 提議하나 아래에 言及되는 事項은 除外하고 賃金勞動力 體系에만 限定하도록 한다. 非賃金勞動力體系에 關한 接近方法은 다음에 取扱하였다. (第5圖 및 5a 參照)

173. 提議된 修正案에 따르면 賃金勞動力에서의 不完全就業은 “賃 金” 就業者가 非自意的 事由로 常時 (full-time) 일하는 사람 보 다 收入이 적거나 또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던지 追加로 일 할 수 있는 狀態에서 일어난다. 常時 (full-time) 就業의 概念은 나라의 事情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이는 週當 就業時間이나 (모 든 產業이 마찬가지임), 또는 일을 하는 사람 自身이 그 일 自 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것과 또 다른 基準에 의하여 定義될 수 있다. 非自意的 事由란 일거리가 뜸하다든지, 한가한 季節이라든 지, 資材不足, 施設裝備의 補修, 常時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얻 을 수 없거나, 調査對象期間中에 일거리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경우 를 말한다. 이러한 事由에서 除外되는 것은 日氣不順, 個人 또는 家族의 事情에 의한 경우 等이다.

業務量의 不充分度

174. 위에서 定義된 不完全就業의 概念은 이를 “非賃金勞動力” 에 適用하면 別로 意味가 없다. 그 理由는 大部分의 自營就業者 나 無給家族從事者가 應答한 就業時間量은 일의 量과 一致하지 않 기 때문이다. 大部分 이러한 部類의 就業者들은 그 就業樣相이 그 들 自身이 選好하는 일의 方式에 따라 決定된다. 그들이 生産하

는 製品이나 서비스에 대한 需要가 적을 때에는 짧은 時間內에 일을 해치우기 보다는 시간을 끄는 수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部類의 就業者들에게 있을 수 있는 業務量의 不充分度를 計測하려면 特定調査對象期間中 몇時間 程度를 일하였느냐 에는 相關없이 追加로 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거나 이러한 일에 即時 就業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現在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部類의 사람만을 計測할 것을 建議하였다.

175. 代替的인 方法으로서 보다 複雜한 接近方法을 생각 할 수 있다. 代替的인 方法(圖 5 a)이란 모든 非賃金勞動力에 屬하는 勤勞者의 勞動投入 時間을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集計하여 얻는 것이다. 모든 勤勞者들이 일 하였던 日數나 반나절數를 (W)로, 일하지 않았으나 即時 就業이 可能했던 日數나 반나절數를 (U)로, 即時 就業이 不可能했던 日數나 반나절數를 (X)라 하고, 이것을 合計하여 얻은 數值를 基礎하여 모든 勤勞者들에 대한 業務量의 不充分度를 公式 $U / (U + W)$ 에 依하여 總勞動活動可能時間에 對한 百分比로 推定할 수 있다.

이러한 方式은 앞에서 設明한 單純한 方法에 比하여는 보다 包括的인 것으로써 業務量의 不足度를 延勤務日數로 나타낸다.

176. 單純한 方法과 複雜한 方法中 어느 것을 擇하느냐 하는 問題는 그 나라의 事情, 目的 및 對象에 따라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就業과 所得에 관한 統計

177. 生産性이나 所得을 基準하여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을 計測하

는 것은 原則적으로 總量推計에는 合當하나 實際上 個別的 活動에 適用하거나 解釋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에 관한 어떤 絶對的인 概念보다도 就業과 所得과의 關係를 重點적으로 計測할 것을 提議하였다. ¹¹⁾ 就業과 所得間의 關係는 두 가지 形態로 區分될 수가 있다. 하나는 여러가지 相異한 活動의 所得創出能力을 把握하기 위한 目的으로 計測되는 就業과 就業所得과의 關係이고, 또 하나는 주어진 雇傭機會를 가지고서는 經濟的 安定을 維持할 수 없는 사람들의 數와 特性을 把握할 目的으로 計測되는 就業과 就業所得 및 家計所得의 關係이다. 이 두가지 境遇 중 그 어느 境遇에서나 解決되어야 할 重要한 問題는 統計資料源, 分析單位, 對象期間, 所得의 定義, 人口의 範疇 및 分析方法 等이다.

統計資料源 (Source)

178. 就業과 就業에서 얻는 所得 그리고 家計所得과의 關係를 測定하는 데 必要한 所得과 就業의 資料를 蒐集하는 方法은 實際的 觀點에서 決定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세가지 可能的 方法이 考慮될 수가 있다.

- (1) 勞動力 統計調査의 副次標本 (sub-sample)을 使用하여 所得資料를 蒐集한다.
- (2) 標準生計費調査를 擴大하여 必要한 就業資料를 蒐集한다.
- (3) 統合調査計劃에 의하여 두 調査를 합쳐서 어떤 때에는 就業所得과 家計所得을 測定하는 데 注力하고 어떤 때에는 就業

의 特性에 集中한다. 每回 調査時 마다 變數를 서로 連結 시키기 위하여 基本特性이 蒐集되어야 한다.

適切한 調査計劃의 選擇은 各國의 既存 調査能力과 規模 그리고 어느 程度 細分된 資料를 願하는가에 달렸다. 原則적으로 就業과 所得에 關한 統計는 적어도 每 5 年마다 蒐集되어야 한다.

分析單位 (Units of analysis)

179. 就業과 就業에서 얻은 所得은 一般的으로 各 個人과 關係 된다. 다시 말하면, 家口員의 勞動力參加에 關한 決定은 대개 家計所得과 家口에 대한 責任과 關聯된다. 그러므로 이두가지 單位를 混合함으로써 發生하는 問題를 避하기 위하여 各 個人을 基本 單位로써 考慮해야 하고 家口는 補助單位로 考慮되어야 함을 提議 하고 있다. 이렇게하여 家計所得은 한 個人의 家口에서의 經濟的 地位에 對한 情報를 얻을 수 있다는 意味에서 그 個人의 特性으로 解釋되어야 한다.

調査對象期間 (Reference period)

180. 所得과 就業間에 對等한 共通性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는 調査對象期間 길어도 두 變數가 같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短期間의 就業狀況에 對應하는 所得을 計測하기 위하여 短期의 對象期間을 採擇한다면 臨時的인 狀況만을 反映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所得과 就業의 關係가 歪曲된 狀況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면, 만일 對象期間이 1 年未滿과 같이 짧으면 나라

에 따라서는 많은 被傭者들이 13個月째 받는 給與가 稼 때에 計上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農業의 自營業者들은 收穫期가 끝날때 까지의 긴 期間이 지나야만 한번의 所得이 들어오는 것이 普通이므로 短期의 對象期間에 該當하는 所得의 浬을 調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經濟的 安定指標로서의 家計所得은 1週間과 같은 短期間 보다는 1年間과 같은 長期間을 對象으로 計測하는 것이 意味가 있게 된다. 따라서 就業과 所得이 關係되는 統計目的으로는 1年間을 對象期間으로 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181. 그러나 이러한 提案이 就業과 所得에 관한 資料를 얻기 위한 期間을 반드시 一年間으로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 對象年間に 자주 標本家口를 反復訪問하여 짧은 對象期間을 基準으로 調査하면 역시 必要한 資料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接近方法을 考慮할 때에는 이의 連結過程에서 일어나는 複雜性에 關係서도 檢討해 두어야 한다.

所得의 定義

182. 就業과 所得과의 關係를 分析하는 方法을 提案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가지 所得概念이 考慮되었다.

(a) 就業所得 : 모든 業者는 經濟財와 서어비스의 生産에 自身の 勞動을 投入하고 이의 代價로 所得을 얻는다. 만일 賃金就業에 관한 狹義의 定義를 適用한다면 卽, 賃金이나 俸給을 위한 就業에 의하여 얻는 所得은 被傭者報酬에 該當된다. 만일 賃金就業에 관한 廣義의 定義를 適用한다면 就業所得은 被傭者の 報酬額과 自身이 投入

한 勞動이나 서어비스에 對한 代價로서 現金이나 現物로 直接 받은 自營者報酬의 合計額이다. 여기에서 定義된 就業所得이란 農家나 其他 家內企業에서 일하는 自營業主나 無給家族從事者의 所得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就業者들은 自身の 勞動과 함께 土地나 其他 道具와 같은 生産財를 相當量 投入함으로써 結果적으로 이로부터 얻는 所得임으로 全적으로 投入勞動에 對한 反對給付라고 만은 할 수 없다. 더구나 家內企業의 運營에 있어서는 就業家口 員이 共同으로 參與하게 되며 일한 期間이나 일의 強度가 서로 다 를 것이므로 이와 같은 共同活動으로 얻는 所得은 各者에게 配分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들 就業者들의 主된 所得은 總家 計所得의 한 部分으로써 計測할 때 더욱 意義가 있을 것이다.

(b) 總家計所得：税金，社會保障金，年金寄與金 等を 控除하기 以 前의 家口の 所得으로서 勤勞所得，財産所得，當期移越金 및 其他 受 惠金の 總額이다.

(c) 總可處分家計所得：一般的으로 義務的인 支出이나 貯蓄分을 빼 金額으로서 家計消費支出이나 其他支出에 充當될 수 있는 金額이다. 이 金額은 總家口所得에서 直接稅와 社會保障金，年金寄與金 等を 控 除한 것이다.

183. 被傭者報酬，總家計所得 및 總可處分家計所得에 관한 概念은 第12次 ICLS (1973.10)¹²⁾에서 採擇된 家計調査에 關한 決議 案과 家計所得分布，消費 및 家口の 蓄財에 關한 統計作成을 위한 UN의 暫定的 指針¹³⁾에 定義된 바 있다.

人口範疇와 分析

184. 經常活動人口의 概念體系에서 提議된 “賃金”과 “非賃金”의 區分에 따라, 또한 就業, 就業所得 및 家計所得 間的 關係를 計測하기 위하여 人口를 두개의 範疇로 分類할 수 있다.

(a) 就業所得이 있는 사람: 對象年間中 주로 賃金就業으로 所得을 얻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即 狹義의 賃金就業定義를 適用했을 때의 被傭者) ¹⁴⁾

(b) 自營所得이 있는 사람: 對象年間中 주로 企業的 所得을 얻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即 雇傭主, 自營業者, 無給家族從事者, 生産協同組合會員 等이다) ¹⁵⁾

어떤 사람들은 調査對象年間中 두가지 活動을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所得에는 賃金就業所得이나 企業的 所得이 있을 수 있는 바 한가지 形態의 所得만 있는 사람과 두가지가 다 있는 사람들을 區分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對象年間中에 就業한 時間別로도 分類가 必要하다. 就業所得을 얻고 있는 사람의 境遇에는 對象期間中 常時 (full-time) 被傭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區分하는 것이 基本的으로 必要하다. 自營業으로 所得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境遇에는 1年 내내 일한 사람들과 年中 어느한 期間에만 일한 사람들의 基本的 區分이 있다.

185. 對象期間(年間)中的 就業所得者는 就業과 就業所得을 連結하여 주는 人口基盤을 構成한다. 就業週間數(月數나 日數), 週當平均 就業時間 等を 土台로 하여 1人當平均就業所得이나 時間當

平均就業所得 등은 經濟活動類型別로 計算하거나 分析할 수 있다. 自營者에 대해서도 같은 分析을 하고자 할 때에는 生産財나 그外의 投入된 資産에 관한 詳細한 情報가 必要하게 되며 이러한 情報은 全數規模의 特別調査를 實施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15)

186. 就業과 家計所得과의 關係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우선 1人當 可處分家計所得 階層別로 人口를 把握한 다음 (低賃金就業者把握을 위해서) 各 階層別로 家口構成과 家口員의 關係를 關聯시켜 家計所得源에 대하여 分析할 수 있다.

187. 이외에도 여러가지 分析들이 可能하다. 위에서 廣範하게 다룬 分析方法是 解設的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 많은 努力이 必要하다 하겠다. 特히 豫備調査같은 것을 實施하여 關聯人口 集團의 範疇를 把握하고 所期の 目的達成을 위한 이의 適切한 計測方法을 講究해야 한다.

註 記

1. 이것은 UN에서 採擇된 定義이다.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原則과 勸告案, Series M, No. 67 (New York, 1980) Sales No. : E. 80. XIII. 8, Para. 2.191, p. 93.

2. UN : SNA, Series F, No. 2, Rev. 3 (New York, 1968), Sales No. : E. 69. X VII. 3.

3. ILO의 國際標準職業分類, 訂正版, 1968 (Geneva, 1969), p. 267.

4. 어떤 나라에서는 正規軍인과 徵募兵을 다 함께 就業者로 보아 經濟活動人口에 包含시키고 있는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軍人만을 包含시키고 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徵募兵이라도 徵集되기 前에 일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繼續保有할 수 있어야 就業者로 보아 經濟活動人口에 包含시키고 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正規軍人 뿐만 아니라 徵募兵도 經濟活動人口에 包含시키고 있으나 就業者로 看做하지는 않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徵募兵을 經濟活動人口로 分類하지 않는다.

5. ILO의 勞動力統計에 관한 國際勸告案 (Geneva , 1976) , pp . 28 ~ 29 .

6. 이들 其準은 一時雇傭者의 統計處理에 關聯한 就業 및 失業 統計, OECD 研究團의 建議案을 採擇한 것이다.

7. UN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의 原則과 勸告案, op. eit ., Para . 2 . 196 , p . 94 .

8. 美合衆國과 關聯된 各種 概念 및 計測問題에 關한 詳細한 論議 T. Aldrich Finegun 著 勞動力의 計測中에 “ 求職斷念者의 計測 行動 및 分類 ”, 美國雇傭 및 失業統計委員會 (Washington D. C., 1976), pp . 194 - 235 . 附錄 第1卷 概念 및 資料의 必要性

9. OECD : “ 就業 및 失業統計研究團 (1981. 6. 9 ~ 11 會議) 의 一時解雇 및 短期就業에 關한 結論 ” 附錄 III . 內部資料, 就業 및 失業統計에 관한 國際的 指針, 就業 및 失業統計 研究團作成, MAS / WP 7(81) 10, 1981 .

10. 예를 들면 이範疇에屬하는就業者는, 홍콩의 年2回 半期別 勞動力調査에서 特히 失業者로 看做 分類되었다.

11. ILO의 勞動力의 不完全活用概念, 雇傭研究論文 (Geneva, 1971), p. 87. 內容은 다르나 비슷한 建議案을 美合衆國 就業 및 失業對策委員會에서 마련하였음. 이 建議案은 經濟的 窮乏과 3個形態의 勞動市場과의 關係에서 (低賃金, 失業 및 不充分的 勞動力參加로 나타내는) 비롯되는 經濟的 困窮이라는 題目으로 作成되었음. 勞動力의 計測 op.cit.

12. ILO의 國際勞動統計에 관한 勸告案, op.cit., pp. 83 ~ 91.

13. UN : 家計所得分布, 消費支出 및 家口の 蓄財에 관한 暫定的 指針, Series M, No. 61 (New York 1977) Sales No. : E. 77. XVII. 11.

14. 賃金就業의 擴大된 定義를 採擇하면 適切한 調整을 한다.

15. 計量經濟的 方法으로 自營業所得의 몫을 推計할 수도 있음.

Carmel Ullman Chiswick 著 : “泰國의 所得分布” 및 ILO 世界雇傭問題研究論文 WEP 2-23 / WP 97 (Geneva, 1981. 2) 參照.

第Ⅵ章 主要 特性과 分類

188. 前章에서 提議된 體系 (framework)에서 우리는 經濟活動人口와 非經濟活動人口의 몇 가지 範疇를 알아 보았다.

여기서는 아래의 主要題目들에 관한 몇 가지 重要한 特性과 分類體系에 관하여 詳述하고자 한다. 卽, 人口學的 特性, 就業者와 有業者의 特性, 失業者와 無業者의 特性 및 非經濟活動人口의 特性에 관한 것들이다. 追加로 特殊統計, 特히 靑少年, 女性 및 家口等에 관한 統計의 必要性을 強調해 두고자 한다.

人口學的 特性

189. 重要人口統計學的 및 이와 有關되는 特性은 다음과 같다.

性別 : 男子, 女子

年齡 (또는 生年月日) : 年齡階級

婚姻狀態 : 未婚, 既婚, 死別, 離婚, 別居

教育程度 : 不就學, 國民學校卒業 或은 中退, 中高等學校卒業 或은 中退, 大學卒業 或은 中退.

追加項目으로는 國籍 (또는 種族), 都市·農村 및 移住狀態 (住居地와 住居期間) 등이 包含될 수 있다.

190. 經濟活動人口統計를 위한 年齡階層別分類는 UN이 勸告한 年齡階層別 分類指針에 따라야 한다. 이 指針草案은 修正이나 補完의 余地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세 가지 水準의 分類를 마련하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한分野 卽, 勞動力參加, 就業, 失業, 不完全就業, 就業報償 및 非經濟人口 等の 分類를 위해서도 同一한 年齡階層으로 分類할 것을 勸告하고 있다. 이를 위한 年齡階層別人口의 分類에는 勞動力에 參加할 수 있는 여러가지 法定最低年齡이나 實際勞動可能 最低年齡 等이 考慮되어 있으며 開途國과 先進國間의 退職年齡에 대한 差異點도 考慮되어 있다.

따라서 以前의 다른 어떤 分野의 年齡階層을 分類할 때 보다도 많은 各歲別 年齡階層分類가 必要하다.

이와같은 方法으로 10歲~20歲 階層과 55歲~74歲 階層은 各歲別로 分類하고, 25歲~54歲와 75歲~84歲 階層은 5歲 階層으로 分類하는 高位細分이 必要하다.

年齡分布中 下位階級 즉, 10歲~24歲 階層은 各歲別 分類를 하여 어린이의 勞動과 高等學校를 卒業한 후 勞動力에 參與하는 人口를 分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中位細分에 있어서 各歲分類는 5歲階層으로 .5歲階層은 10歲階層 分類로 代替하고 있다. 세번째 分類水準은 15歲未滿, 15歲~24歲, 25歲~44歲, 45歲~64歲 및 65歲 以上の 5個層으로 分類하여 다른 分野와 比較가 可能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分類에 따른 年齡階層은 첫째 10歲以下~85歲以上, 둘째 15歲以下~85歲以上, 셋째 15歲以下~65歲以上으로 分類된다.

191. 經濟活動人口를 計測하기 위하여 設定된 最低年齡의 限界와 特性은 各 國家의 事情에 따라서 決定되어야 한다. UN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原則과 勸告案은 15歲以上の 年齡을 最低年齡으로 設定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最低年齡을 15歲以上の 年齡을 가지고 設定한 나라라도 15歲未滿의 少年經濟活動에 관한 追加的인 情報를 蒐集하거나 적어도 15歲以上の 階層을 國際比較가 可能하도록 公表하고 있다면 더 以上の 說明은 必要없다.

192. 어떤 나라에서는 最低年齡基準을 어떻게 設定하여 놓더라도 이 年齡層以下の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여러 經濟活動에 實際적으로 參加하는 수가 있다. 例컨대 商業的인 目的으로 生産하는 農場이나 其他 農業事業體에서 일하거나, 現場消費를 위해서 生産하는 家庭이나 小規模施設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公式的인 統計에는 사람들을 經濟活動에 包含하든 안하든 간에 이들의 數와 特性 및 條件等에 관한 資料는 蒐集되어야 한다.

就業者 및 有業者의 特性

193. 大部分 一定項目이나 細項은 두 範疇의 사람중 어느 하나에만 關係되지만 아래서 言及되는 特性은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提案體系에서 定義하고 있는 就業者 및 有業者 모두에게 함께 關係된다.

이들의 主要特性和 分類는 다음과 같다.

194. 單一 또는 複數職業保有狀態: 하나의 職業 또는 2個 以上の 職業 保有者, 實用上의 目的을 위하여 2個以上の 職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다.

(i) 調査對象期間中 就業者인 사람으로서 (a) 2人 以上の 雇傭主

에게 被傭된 사람 (b) 有給職에 被傭되어 있으면서 自營業을 經營하거나 獨自的 專門職이나 商去末에 從事한 사람 (c) 有給職을 갖고 있으면서 無給家族從事者나 生産協同組合員으로 일한 사람, 또는 (ii) 對象期間中 有業者인 사람으로서 또 다른 自營業을 經營하고 있거나 獨自的 專門職이나 商去來에 從事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一般家口에 被傭된 사람 (例컨대 家事使用人)이나, 對象期間中 職業을 바꾼 사람에 대하여는 明白히 區分해둘 必要가 있다.

195. 職業 : 國際標準職業分類 (ISCO)의 最近改正版에 規定되어 있는 分類로 轉換될 수 있는 職業群이어야 한다. 2個 以上の 職業을 가진 就業者의 경우에는 對象期間中 가장 많은 時間을 投入한 職業으로 分類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2個 以上の 企業을 經營하거나 專門職 或은 商去來 等に 從事한 有業者의 경우에는 역시 對象期間中 가장 많은 時間을 投入한 職業으로 分類해야 한다. 第2次的 職業에 관한 資料는 實用性이나 有意性이 있다면 이를 蒐集하여야 한다.

196. 産業 : 國際標準産業分類 (ISIC)의 最近改正版에 規定되어 있는 業種으로 轉換될 수 있는 産業分類이어야 한다. 報告된 各 職業에는 그에 相應하는 産業이 表示된다. 만일 主된 職業이나 副次的 職業이 2個 以上の 産業에서 이루어 진다면 各 境遇에 있어서의 主된 産業을 決定하기 위한 基準은 主된 職業을 決定하는 것과 같은 方法으로 決定되어야 한다.

197. 從事上の地位 : 雇傭主, 自營業者, 被傭者, 無給家族從事者, 生産協同組合員 또는 分類不能者는 모두 UN統計委員會에 의하여 定義되고 있다. 그러나 相當한 補完과 綿密한 檢討가 必要하다. 無給家族從事者의 境遇에 있어서 最低基準時間을 前記한 提案(第152項)에 따라 이를 排除할 수도 있다. 앞(第133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被雇傭者 範疇에 特定 自營者를 包含하고 있다면 適切한 變更措置를 取해야 한다.

農業從事者들에 대해서는 例컨대 自作農夫, 賃借農夫, 小作農夫, 日用農夫 等과 같이 適切한 分類가 되도록 研究하는 것이다. 同分類의 目的의 하나가 從事上の 地位와 다른 分類를 關聯시켜 社會經濟的 分類를 導出하기 위한 것이 라면 이러한 研究는 더욱 有用할 것이다.⁷⁾

198. 部 門 (Sector) : 公共企業과 民間企業(被傭者의 境遇) 및 家內企業과 非家內企業(有業者의 境遇) 部門, 이러한 部門과 其他 部門을 定義하기 위해서는 UNSNA의 定義를 參照해야할 것이다.⁸⁾

組織化된 部門과 非組織化된 部門에 관한 定義가 發展된 나라에서는 部門別 分類를 擴大하거나 勤勞者를 組織化部門의 就業者와 非組織化部門의 就業者를 區別할 수 있도록 別途 分類를 利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

199. 實際就業時間 (Actual hours worked) : 就業者를 짧은 時間 일하는 사람, 時間制 (Part-time), 常勤制 (Full-time) 또는 長時間 일하는 사람 等과 같이 就業時間規模別로 分類한다. (例, 調査期間中

의 就業期間을 8時間未滿, 9~15, 15~34, 35~39, 40~47, 48~56, 59時間以上 等으로 分類한다) 複數職業保有者의 境遇에는 모든 일에 實際로 從事한 總時間과 主된 일에 從事한 實際時間 두가지를 다 計測해야 한다. 就業時間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平素就業時間(Usual hours of work)과 正常就業時間(Normal hours of work)의 概念을 利用하는 것이 有用할 것이다.¹⁰⁾

어떤 나라에서는 特히 有業者에 대하여 勞動活用時間比率를 測定해 두는 것이, 더욱 意味가 있다. 이의 計算을 위하여는 就業한 日數나 만나질 數, 일거리가 없이 求職活動을 하였거나 即時 就業이 可能하였던 日數나 만나질 數 또는 求職을 하지도 않았고 即時 就業도 可能하지 못하였던 日數나 만나질 數를 把握해야 한다.

이것은 前述(175項)한 業務量의 不充分度를 計測하는 데에도 利用될 수 있다.

200. 不就業 理由: 職場은 있으나 일하지 않은 理由를 區分하기 위한 分類로는 (a) 疾病이나 傷害 (b) 勞動爭議 (c) 休暇나 休日 (d) 一時解雇 및 (e) 其他 등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出產休暇나 이와 類似한 理由로 休職한 者를 把握하기 위하여 別途의 範疇를 設定한 나라도 있다. 事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不就業事由의 分類는 (a) 疾病이나 傷害 (b) 休日, 宗教나 社會的 儀式 (c) 日氣不順이나 裝備故障 等이라 할 수 있다.

201. 就業이나 일(work)의 本質: 就業이나 일의 本質에 관한 樣相을 나타내는 다음의 세가지 分類中 하나나 둘이 考慮될 수 있다.

(a) 時間制 (Part-time), 常勤制(Full-time)(b) 繼續 , 臨時, 季節的 (c) 正規, 非正規 등과 같다. 이에 관한 國際的 또는 國家單位標準定義는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各各 다르다.

實用上의 目的을 위해서는 세 가지 形態의 分類가 可能한 바, 이는 각각 (a) 實際 (또는 平素) 就業時間 (特定就業時間未滿이거나, 같거나 또는 그 以上인 境遇) (b) 雇傭契約이나 事業計劃의 性格 (無期限例를 들면 一年 또는 그 以上인 경우 : 有期限, 一年未滿 또는 어느 季節에만 局限等) 및 (c) 所得의 받는形態 (月給, 隔週給, 週給 등의 定期給形態의 日數, 時間數 基準에 의한 非定期給 또는 能率給) 맨 마지막 것은 正規職 또는 非正規職 被傭者에게 該當되는 것이며 有業者에게는 該當되지 않는다.

202. 正常勞動時間未滿就業理由 (Less than full-time work) : 非自意的인 經濟的 理由와 其他 理由가 있는바, 經濟的 理由란 일거리가 閑散하거나, 閑散한 季節, 原資材不足, 施設이나 裝備補修, 常勤制일거리 (full-time work)를 얻지 못한 경우 等이며, 其他 理由로는 日氣不順, 個人이나 家族의 일 또는 다른 責任上 不可避한 事由等이다. 이 分類는 就業者의 不完全就業狀態를 計測하는데 利用될 수 있도록 設定되어야 한다. 業務量의 不充分度를 計測하는데 반드시 必要한 것은 아니나 有業者들에게도 類似한 分類를 適用할 수 있다.

203. 追加就業 (또는 轉職) : 追加的인 일거리를 찾거나 또는 願하고 있는 경우, 追加的인 일거리를 찾지도 않으며 願하지도 않는 경우로 分類. 이 分類는 實際就業時間에 相關없이 有業者에게 適用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業務量이 不充分한 사람들의 數를 計測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해 준다. 追加的인 일거리를 찾고 있거나, 追加就業을 希望하는 理由를 把握할 수 있는 보다 細密한 分類가 必要하다. 類似한 分類로써 就業者 特히 時間制就業者(Part-time worker)로써 常勤制就業(Full-time worker)을 願하는 사람이나, 常勤就業者로서 時間制就業을 願하는 사람들에게 適用될 수 있다. 自身の 資質로 보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願하는 常勤就業者, 다른 地域에서 일하기를 願하는 사람 또는 副業을 願하는 常勤就業者들을 把握하는 것도 또한 重要하다. 이러한 部類에 屬하는 사람들에 관한 情報은 職業의 滿足度를 提高시키기 위한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204. 追加的 特性和 分類에는 賃金就業에서 얻는 所得(調査對象期間에 該當되는 給與)이나, 熟練度(非熟練, 未熟練, 熟練), 訓練形態(業務關聯訓練, 非關聯訓練, 見習生訓練 等) 및 일하는 場所(洞內 居住地域內, 其他地域等)을 包含할 수 있다.

失業者와 無業者의 特性

205. 아래에 提示된 項目들은 分類目的을 위하여 도움이 되며, 또한 境遇에 따라서는 狹義 또는 廣義의 定義의 失業者와 有業者를 區分하는 것도 可能케 해준다.

206. 就業經驗(work experience) : 前에 일한적이 없음, 前에 일한적이 있음; 失業者의 特性으로서 “ 就業經驗 ” 이란 用語는 一定期間以上 例컨대

2週 또는 4週以上 繼續하여 常勤制로 民間部門에 就業한 境遇로 解釋할 수 있다. 이러한 解釋은 民間賃金勞動力에 新規로 參與하는 人力을 把握하기 위하여 必要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有業者의 特性으로서의 “就業經驗”은 一定期間中 繼續해서 常勤制就業을 한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다. 僱傭主와 의 就業保障關係에 관한 더욱 詳細한 情報는 最終就業時期를 質問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6個月 以內, 6個月 以上 12個月 以內 等の 設問이다.

207. 前職業 : 前述한 第 195 項의 職業群參照, “就業經驗”의 用語解釋에서와 같이, 前職業은 가장 最近에 常勤制로 民間部門에 就業한 것으로서 一定期間 以上 繼續하여 일한 境遇라야 한다.

208. 前產業 : 前述한 第 196 項의 產業分類와 業種群임. 前產業은 調査된 前職業과 相符하는 것이라야 한다.

209. 前從事上の 地位 : 前述한 第 197 項의 從事上の 地位範疇와 같음. 前從事上の 地位는 前職業과 相符하는 것이라야 한다.

210. 前部門 : 前記 第 198 項의 部門範疇와 마찬가지로임. 前部門은 調査된 前職業과 相符하는 것이라야 한다.

211. 失業 또는 일을 그만 둔 事由 : 收入이 不充分하여 그만 두었음, 業務環境이 좋지 않아 그만 두었음, 一時解雇, 業務終了, 獨自的인 事業 또는 農事를 願했음 等이다. 이 項目은 失業 또는 事業을 그만두게 된 環境에 대한 情報를 얻는데 뜻이 있다.

賃金就業을 위하여 求職活動을 하였거나 就業可能性이 있었던 自營就業者(其他 被傭者가 아닌 사람)가 相當數 있다면 이들의 特殊한 環境을 把握하기 위하여 追加的인 範疇가 考慮되어야 한다.

212. 失業期間과 일을 그만 둔 期間: 1 週間未滿, 1 週~ 1 個月, 1 個月~ 3 個月, 3 個月~ 6 個月, 6 個月~ 12 個月, 12 個月~ 24 個月, 24 個月以上 等으로 分類. 失業期間이란 “現失業狀態가 始作된 날부터 調査時點까지의 期間”을 말한다.¹¹⁾ 이에 관한 說明은 狹義의 失業者 定義에서와 같다.

같은 說明이 廣義의 定義에서의 失業期間이나 無業者의 境遇의 일을 그만둔 期間에도 利用될 수 있지만 이 概念은 實際上 正確性的 觀點에서 볼때 適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213. 主要求職活動方法: 公·私職業紹介所, 雇傭主, 工事場, 工場을 直接訪問, 新聞廣告, 親舊나 親知에게 付託, 自己事業準備, 自己農場經營準備 等이며, 마지막 두가지 範疇는 無業者에게만 適用된다.

214. 非求職事由: 居住地域內에는 適當한 일거리가 없을 같아서, 求職하는 길을 몰라서, 疾病, 一時解雇 되어 復職待期, 求職結果待期, 調査對象期間이 끝나는 대로 就業될 것으로 보고 待期中 等이다.

215. 求職하던 일거리의 種類와 就業可能性의 本質: 前記201 項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가지 形態의 分類를 생각할 수 있다. (a)時間制, 常勤制 (b)繼續, 臨時, 季節的 및 (c)正規, 非定規 等이다. 마지막 分類는 賃金就業이 아닌 일거리를 찾고 있거나 就業이 可能的한 사람에게는 適用되지 않는다.

216. 追加項目으로서는 찾고 있는 일거리의 職業, 産業 및 部門과 就業場所(地域內 또는 地域外)應諾할 수 있는 報酬의 最低水準(日給, 또는 月給) 그리고 現在의 生計手段(失業保險受惠, 貯蓄, 負債, 親戚의 補助)等이다.

非經濟活動人口의 特性

217. 많은 나라들에서 非經濟活動人口의 活動狀態, 就業經驗, 勞動市場에 對한 態度 및 其他 特性 等에 관한 資料의 重要性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資料들은 여러가지 定義에 따라 豫備勞動力의 規模나 그構成을 推定할 수 있게 함으로써 勞動市場政策이나 人力計劃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로 活用된다. 現狀態의 非經濟活動人口의 分類를 위한 세가지 重要特性으로서는 (a) 現活動狀態 (b) 平常活動狀態 및 (c) 就業經驗 等を 들 수 있다.

218. 現活動狀態 (Current activity status) :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UN의 原則 및 勸告案으로 提示된 바 있는 機能的 範疇에는 主婦, 學生, 不勞所得者 및 其他 公共 또는 民間으로부터의 補助를 받는 사람과 不就學兒童 등이 包含된다.¹²⁾ 이 勸告案에서는 어떤 사람의 境遇, 2個 以上の 範疇에 分類될 수 있음으로 하나의 範疇에 分類되도록 優先順位를 設定해야 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例컨대 學生이면서 同時에 家事를 돌보고 있는 경우) 前記한 바와같이 (第 153 ~ 156 項) 非經濟活動人口이기는 하나 生産과 福利에 寄與한 家事者에 對하여 센서스의 機能的 分類는 “社會活動 自願奉社者”와 “家族의 生計를 위한 活動에 從事한 者”를 區分할 수

〈第 6 圖〉 主 要 特 性 과 分 類

<p>年齡階層分類： 分類水準</p> <table border="1"> <thead> <tr> <th>高 位</th> <th>中 位</th> <th>低 位</th> </tr> </thead> <tbody> <tr> <td>~ 10</td> <td>~ 15</td> <td>~ 15</td> </tr> <tr> <td>10-24 (1 歲)</td> <td>15-24 (5 yr)</td> <td>15-24</td> </tr> <tr> <td>25-54 (5 歲)</td> <td>25-54 (10 yr)</td> <td>25-44</td> </tr> <tr> <td>55-74 (1 歲)</td> <td>55-74 (5 yr)</td> <td>45-64</td> </tr> <tr> <td>75-84 (5 歲)</td> <td>75-84</td> <td>65+</td> </tr> <tr> <td>85+</td> <td>85+</td> <td></td> </tr> </tbody> </table> <p>1 歲 = 各歲分類 5 歲 = 5 歲階級 10 歲 = 10 歲階級</p>	高 位	中 位	低 位	~ 10	~ 15	~ 15	10-24 (1 歲)	15-24 (5 yr)	15-24	25-54 (5 歲)	25-54 (10 yr)	25-44	55-74 (1 歲)	55-74 (5 yr)	45-64	75-84 (5 歲)	75-84	65+	85+	85+		<p>性 別： 男 女</p> <p>婚姻狀態： 未 婚 既 婚 死 別 離 婚 別 居</p>	<p>教育程度： 不 就 學 國民學校： - 中 退 - 卒 業 中・高等學校： - 中 退 - 卒 業 大學以上： - 中 退 - 卒 業</p>
高 位	中 位	低 位																					
~ 10	~ 15	~ 15																					
10-24 (1 歲)	15-24 (5 yr)	15-24																					
25-54 (5 歲)	25-54 (10 yr)	25-44																					
55-74 (1 歲)	55-74 (5 yr)	45-64																					
75-84 (5 歲)	75-84	65+																					
85+	85+																						
<p>複數職業狀態： 1 個職業事業 2 個以上職業事業 - 2 個以上的 雇傭主를 가진 複數 職業 - 就業과 自己事業 - 就業과 家內事業 또는 組合 - 2 個以上的 自己事業</p>	<p>職 業： ISCO로 轉換可能 - 主된 職業 最長時間 從事한 職 業/事業에 該當 - 副次的 職業</p>	<p>就業 或은 事業의 性格： 就業時間基準： - 時間制 - 常勤制 契約基準 - 繼續的： - 臨時的： - 季節的： 給與基準： - 正規 - 非正規</p>																					
<p>從事上的 地位： 雇傭主 自營業者 被傭者 無給家族從事者 生產組合員 分類不能 追加的 範疇 또는 細分範疇 無給家族從事者： - 正常勤務時間의 1/3 以上 일하였음. - 正常勤務時間 1/3 未滿 일하였음. 見習生： - 有 給 - 無 給 農業從事者： - 自作農 - 賃借農 - 小作農 - 日傭農業勞動者 - 其 他</p>	<p>產 業： ISIC로 變換可能 - 主된 產業 主된 職業에 該當되는 產業 - 副次的 產業</p> <p>部 門： 公 共： 民 間： - 家內事業 - 非家內事業 追加範疇： - 組織化 - 非組織化</p>	<p>일하지 않은 理由： 就業者： - 疾病 或은 負傷 - 勞動爭議 - 休暇 或은 休日 - 一時解雇 - 其他, 例 出產休暇 或은 이와 關係되는 缺勤 有業者： - 疾病 或은 負傷 - 休日, 宗教 或은 社會儀式 - 日氣不順, 裝備故障 - 其他</p>																					
<p>實際就業時間： 모든職業 ◦ 平常就業 時間 即, 適當 平均就業 時間 주된職業 (特定한 몇週 동안의) ~ 8 時間 ◦ 有業者의 경우에는 就業時間 대신 勞動投入 8 ~ 14 // 時間 比率를 調査할 수 있다. 15 ~ 34 // 35 ~ 39 // 40 ~ 47 // 48 ~ 56 // 57 +</p>																							

<圖 6 - 繼續>

<p><u>正常勞動時間未滿就業理由:</u> 非自意的인 理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이 없음 또는 한가한 季節 - 資材不足 - 工場 或은 裝備修理 - 常勤制 일자리를 얻지못함 - 其他 <p>其他理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氣不順 - 本人 或은 家族의 問題 - 其他 	<p><u>追加就業(或은 轉職):</u> 有業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追加的인 일거리를 찾아보았거나 할 수 있음 - 追加的인 일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음 <p>就業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常勤을 願함 - 일을 더 많이 하기를 願함 - 副業을 願함 - 他地域에서 일하기를 願함 <p><u>前從事上의 地位:</u> 調査된 前職業에 相應</p>	<p><u>就業經驗:</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에 일한 적이 없음 - 前에 일한 적이 있음. 即, 常勤制就業으로서 一定 期間以上 民間部門에 繼續 就業한 境遇 - 最近 6個月內 - 6個月以上 12個月內 - 12個月以上 <p><u>前職業:</u> ISCO로 轉換可能한것</p> <p>最近 就業經驗과 相應</p> <p><u>前 部門:</u> 調査된 前職業과 相應</p>
<p><u>前產業:</u> ISCO轉換可能한것</p> <p>調査한 前職業에 相應</p> <p><u>失業 或은 일을 그만 둔 期間:</u></p> <p>1 週未滿</p> <p>1 週~1 個月</p> <p>1 個月~3 個月</p> <p>3 " ~ 6 "</p> <p>6 " ~ 12 "</p> <p>12 " ~ 24 "</p> <p>24 個月 그以上</p>	<p><u>失職 또는 일을 그만둔 環境:</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所得이 적음 - 作業條件 좋지 않음 - 一時解雇 - 일이 끝났음 - 學校를 卒業했음 - 自己事業 或은 農場經營을 願함. - 其他(例, 有給就業을 希望) <p><u>非經濟活動人口의 現活動狀態:</u> 非經濟活動的이나 生産이나 福祉에 寄與:</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事 - 社會活動 또는 自願事仕 - 其他 <p>其他 非經濟活動人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生 - 所得受領者 - 其他 	<p><u>主要求職方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共職業紹介所에 登錄 - 私設 " " - 僱傭主, 工事場, 工場 等を 直接訪問 - 親舊 或은 親戚에게 付託 - 自己 事業 또는 農場의 設立 準備 - 其他 <p><u>非經濟活動人口의 平常 活動狀態:</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年の 大部分期間에 經濟 活動을 했음 - 前年の 바쁜 季節에 經濟 活動을 했음 - 前年の 大部分 期間이나 바쁜 季節에 經濟活動을 하지 않았음.
<p><u>求職하지 않는 理由:</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適合한 일자리 없을것 같아서 - 求職하는 길을 몰라서 - 自身の 疾病 - 一時解雇로 復職待機 - 求職結果待機 - 對象期間後 事業開設豫定 - 其他 	<p><u>非經濟活動人口의 就業經驗:</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에 일한적이 없음 - 前에 일한적이 있음 • 最近 6個月內 • 6~12 個月等 	
<p><u>求하는 일거리의 性格 또는 就業可能性</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時間制 - 常勤制 - 繼續的 - 臨時的 - 季節的 - 正規 - 非正規 		

있도록 別途의 範疇를 設定하도록 하고 있다. 廣義의 機能的 範疇의 어느 하나에 分類하기 위한 優先順位의 基準도 非經濟活動人口이지만 生産과 福利活動에 參與하고 있는 사람을 항상 優先하도록 設定되어야 한다.

219. 廣義의 定義에 의한 失業을 調査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非經濟活動人口를 就業希望與否와 非求職事由에 따라 더욱 仔細히 分類해야 한다.

220. 平常活動狀態 (Usual activity status) : 세가지의 主要 範疇 즉 (i) 지난해의 大部分의 期間을 經濟活動했음 (ii) 지난해의 바쁜 계절에만 經濟活動 했음 (iii) 지난해의 거의 大部分 經濟活動을 하지 않았음으로 分類할 수 있다. 範疇(iii)은 機能的 範疇에 따라 다시 家事, 學生等과 같이 더 細分할 수 있다.

221. 就業經驗 : 就業經驗의 分類는 前述한 206項의 內容과 같이 卽, 前에 일한적이 없음, 前에 일한적이 있음 (지난 6個月內, 6個月~12個月以內 等) 으로 定義할 수 있다. “ 就業經驗 ” 과 “ 平常活動狀態 ” 와의 現存關係는 非經濟活動人口의 追加的 範疇를 別途로 把握하기 위해서나 또는 特別한 範疇의 勤勞者 (例, 季節的 就業者 求職斷念者 等) 를 確實하기 위해서나, 調査된 資料의 不合理한 點을 찾아내기 위하여 有用한 것이다.

222. 考慮되어야 할 追加項目으로서는 “ 求職意思 ” , “ 最近에 就業하였던일의 職業, 産業, 從事上の 地位 및 部門 ” 또는 “ 지난해의 主要活動內容 ” 그리고 “ 從事하였던 일의 特性 ” 等이다.

223. 지금까지 言及한 主要特性和 分類를 第6圖에 要約해 놓았다. 이렇게 蒐集된 資料는 個別的인 觀察에서 廣範圍한 分析을 可能케 하며 또한 多様하고 復合的인 分類의 統計表를 作成할 수 있게 한다.

特殊集團에 관한 追加的 統計

224. 이 節에서는 靑少年, 女性 및 家口에 관한 追加的인 統計의 必要性을 強調하고자 한다.

靑少年에 관한 統計

225. 오늘날 世界勞動力 1/4 以上이 靑少年(10歲~24歲)들이다. 이러한 比率은 開發國에서 더욱 높으며, 앞으로의 20年以上 같은 水準이 持續될 것이라는 展望이다.¹³⁾ 大部分의 나라에서 失業은 젊은 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特히 開發國의 所得이 낮은 農村地域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就業하여 가난한 家口의 生計를 돕는데 큰 몫을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過程에서 그들은 教育이나 知識 開發의 機會를 剝奪 當하고 있다. 가난으로부터 어린이들과 그들의 家族을 保護하고 배움에서 돈벌이로 順調롭게 轉換할 수 있게 하기 위한 効果的인 對策樹立을 위해서 靑少年 統計, 特히 教育과 經濟活動參與에 관한 情報를 蒐集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226. 少年: 보통 15歲未滿의 人口를 少年으로 定義할 수 있는데, 일하는 어린이들의 數와 特性(年齡別, 性別, 教育程度 等)¹⁴⁾ 및 그들이 從事하고 있는 일의 程度와 形態 그리고 家族의 構成,

所得 및 社會經濟的 狀態를 包含한 그들 父母의 特性 等에 關한 統計가 必要하다.¹⁵⁾

227. 靑年 : 젊은이들 (15 歲 ~ 24 歲) 의 教育程度와 經濟活動에 關한 資料가 必要하다. 特히 義務教育年齡을 넘어선 젊은이들로서 就業도 하지 않고 就學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對하여 軍服務나 失業等 現狀態基準으로 分類된 젊은이들의 數와 特性 (性別, 年齡, 教育程度等) 等에 關한 統計가 必要하다. 就業하고 있는 學生 (時間制, 常勤制) 또는 求職活動을 한 學生에 關한 統計도 또한 必要하다. 이 統計에서는 時間制就業學生과 常勤制就業學生들을 區分해야 하며 授業期間의 就業과 放學期間의 就業 與否가 또한 把握되어야 한다.

228. 見習生 : 見習生制度가 傳統的으로 普遍化되어 있는 開途國들이나 또는 이것이 擴大增加趨勢에 있는 工業國家를 莫論하고 見習生에 關한 資料는 역시 重要하다. 이러한 見習生 制度는 訓練制度의 첫段階로서, 學校에서 職場으로의 轉換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그리고 少年失業의 救濟를 위한 方法으로서의 機能을 한다.

見習生數와 職業, 見習期間等과 같은 特性에 關한 基礎 統計가 必要하다.¹⁶⁾

女性에 關한 特殊統計

229. 每年 繼續해서 많은 女性들이 勞動市場에 新規參加하거나 再參加하고 있다. 開途國에 있어서 國家發展을 위한 女性들의 役割이 增大되고 있음을 認定하여 女性에 關한 特別한 關心이 政策이나 戰略

問題로 重要視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女性의 生活에 관한 다른 側面과 함께 經濟活動參加에 관한 資料는 女性의 開發參與 및 男女平等의 增進을 위한 計劃을 發展시키는데 必要하다.

여기에는 두가지 基本要件이 包含되어 있다. 하나는 女性에 관한 統計의 正確性 提高이고 다른 하나는 女性에 對한 特別한 關心事를 다른 追加統計의 開發이다.

230. 女性의 經濟活動參與에 관한 보다 正確한 統計를 얻기 위하여는 既存統計의 性 屬性의 固定 觀念이나 偏倚의 크기나 特性, 根源을 客觀적으로 把握할 수 있는 特殊調査를 實施한다든가 이러한 偏倚를 줄일 수 있는 適切한 方法을 發展시키는 것이 重要하다. 또한 特別히 設計된 活動/投入時間 調査를 實施하거나 應答者와 調査者를 달리 選擇하여 調査하는 實驗을 해보거나 또는 概念과 運營上 變化의 有意성을 檢證하는 것이 必要하다.¹⁸⁾

231. 女性就業에 관한 基本的인 比較統計를 얻기 위하여는 經濟活動人口와 非經濟活動人口이면서 生産과 福利에 寄與한 사람들에 관한 統計를 蒐集, 分析하고 公表해야 한다. 그리고 可及的 性別로 別途統計를 作成하고 境遇에 따라서는 婚姻狀態別 統計를 作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性別로 細分된 統計는 勞動의 性別 分業關係를 評價하는데 必要하다. 예를 들면 失業의 事象이 男性들 보다도 女性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지의 與否, 女性이 主로 從事하는 經濟活動部門의 所得水準이 男性들의 境遇보다 越等히 낮은 것인지의 與否 등을 決定하는데 必要하다. 그리고 婚姻狀態別로 細分된 統計도 必要하다. 예를 들면 女性의 經濟的 活動과 家族形成間의 相互

聯關性を 分析할 때 等이다.

232.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基本統計를 細分하여 導出할 수 있는 女性에 관한 統計에 追加하여, 女性問題를 研究하기 위한 補充的인 統計가 必要하다. 例를 들면 家庭에서의 責任과 關聯한 女性의 經濟活動參與 關係를 把握하기 위한 統計이다. 이와 關聯해서 最近의 ILO 勸告는 아래와 같은 必要性을 列舉하고 있다.

(a) 家族을 責任지고 있는 女性就業者 및 求職活動者 數와 그들의 子女나 다른 扶養家族의 數 및 年齡等에 관한 適切한 統計를 蒐集하고 公表한다.

(b) 特히 地域社會에서 組織的인 調査를 實施하여 “어린이 돌보기”나 家事서비스 및 이의 施設에 관한 必要性和 選好性을 確認한다.

特히 어린이들을 혼자서 돌보고 扶養하는 責任을 지닌 女性들의 數와 特性을 計測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러한 統計에는 個個人 뿐만 아니라 家口全體에 관한 統計資料도 包含하여 蒐集된다.

家口單位 統計

233. 家口單位 統計는 經濟活動人口統計의 補充的인 重要構成要素이다. 全 世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一般家口나 集團家口에서 살고 있다. 어떤 家口員의 經濟活動參加 與否는 다른 家口員들의 形便에 따라 決定된다. 어떤 境遇 特히 開發國의 農村地域에 있어서는 經濟活動이 家口單位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家口員이 事業經營에 參與한다.

이들 家口員의 經濟的 地位는 一般的으로 家口の 所得이나 資産에 依하여 左右된다. 家口單位 統計는 就業과 所得과의 關係를 分析하는데 必要하며 이의 必要性에 關係서는 이미 第V章에서 強調한 바 있다.

234. 家口單位 統計는 두가지로 區分된다. 첫째는 計測單位가 家口인 統計이다. 家口는 人口學的特性, 經濟學的特性 및 其他特性으로 分類된다.

이러한 統計는 家口員數 및 家口構成別로 分類한 家口數에 關한 것이다. 人口學的 側面에서 보면, “크기”란 家口員數를 가리키는 것이며, “構成”이란 一般的으로 家口の 形態, 卽 核家族 또는 大家族 與否를 가리키며 또 核家族인 境遇에는 아이들이 없는 夫婦인 가 또는 아이가 있는 夫婦인가를 가리킨다.²⁰⁾ 그리고 經濟的 側面에서 보면 “크기”란 家口員中 돈벌이하는 사람數 例컨데 돈벌이하는 사람 없음, 돈벌이하는 사람 1人, 2人等を 가리키는 것이며, “構成”은 家口構成과 돈벌이하는 사람과의 關係 例컨데, 男便만이 돈벌이 함, 婦人만이 돈벌이 함, 또는 맞벌이夫婦 等を 가리키는 것이다. 또 다른 分類도 考慮해야 하는데 例를 들면, 失業者의 有無와 失業者數에 依한 分類라든가 家口主(또는 應答者)의 就業特性 즉, 職業, 産業, 從事上의 地位에 依한 分類 等이다.

235. 家口單位統計의 또다른 形態는 各 個人을 測定單位로 하는 統計이다. 各 個人은 그가 構成하는 家口와 關聯하여 分析된다. “이러한 形態의 主要統計는 다른 就業者가 없는 家口內에 살고 있는

性別 就業者數에 關한 것이 라든지, 또는 就業者가 한 사람도 없는 家
口內에 살고 있는 性別 失業者數 關한 것이다. 이런 形態의 또
다른 統計는, 子女數나 所得水準別로 分類된 男女 失業者數에 關
한 것이다.

註記

1. 詳細한 것은 UN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原則과 勸告 參照, Series M, No.67 (New York,1980), Sales No.: E.80. XⅢ.8.
2. UN統計委員會 21次會議: 年齡階級分類에 對한 暫定的 指針, (New York, doc.E/CN.3/550, 7月29日, 1980) pp. 22-23.
3. 現在 最新版은 ILO의 國際標準職業分類, 改正版, 1968 (Geneva, 1969) .
4. 就業과 所得에 關한 統計로써 主職業의 決定은 調查對象期間에 가장 많은 報酬를 받은 職業에 따름 .
5. 現在 最新版으로 UN의 經濟活動의 國際標準產業分類, 統計論文, Series M, No.4, Rev.2 (New York, 1968) , Sales No:E. 68. XⅦ. 8.
UN의 全經濟活動國際標準產業分類, 統計論文, Series M, No.4/Rer.2/Add 1 (New York,1971), Sales No. : E.80 .XⅦ. 8. 參照
6. 參照: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原則과 勸告案, op.Cit., Paras.2.206-2.208 .
7. 中央 및 西部아프리카의 非賃金所得人口의 地位別 分類에 關한 詳細한 研究은 P.Verneuil 著, 中央 및 西部아프리카의 非賃金所得者의 構成, AMIRA No. 29, 11月.1979. (파리, 經濟調查統計局, 11月. 1979) . 參照
8. UN의 國民計定體系, Series F, No.2, Rer.3, (New York 1968). Sales No.: E.69. XⅦ.3, 表 5.1.
9. ILO의 開發途上國에서의 都市非組織化 部門, ed. S.V. Sethuraman

(Geneva, 1981) 2章。勞動統計會報中 (Geneva, ILO, 1/4 分期, 1980。) K.M Bashir 著「都市非組織化 部門統計」。參照

10.賃金 및 俸給勤勞者를 特別對象으로 한 實際就業時間과 平常的 就業時間의 概念은 第10次 ICLS會議 (1962.10)에서 採擇된 就業時間統計에 關한 決議案에 定義된 바 있음. ILO의 國際勞動統計勸告案 (Geneva, 1976), pp.58 - 60 參照. 實用上的 目的을 위하여 平常的 就業時間의 概念은 對象期間을 長期間으로 하였을 때의 平均實際就業時間으로 定義하고 있음.

11. ILO의 國際勞動統計勸告案, op.cit., p.30

12. UN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原則과 勸告案, op.cit., Paras.2.196 과 2.197.

13. ILO의 1950-2000 勞動力 推計 및 豫測 (第2版, 1977), Vol.V 世界要約編, pp.55 - 56.

14. 教育水準의 定義는 UN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原則과 勸告案, op.cit., Paras.2.168 - 2.171 參照.

15. 어린이의 職業에 關한 資料의 要求條件, 概念 및 定義의 詳細한 解說은 ILO의 어린이職業, 貧困과 低開發, eds.Gerry Rodgers와 Guy Standing, Geneva, 1981 參照.

16. 産業化된 市場經濟國家의 見習生制度의 比較研究에 對한 詳細한 것은 外國의 見習制度, 美勞動省, 雇傭 및 訓練行政廳, R and D 論文 77 (Washington D.C., 1980) 參照. 이 研究에 見習生의 就業定義가 定立되어 있음.

17. 이것은 UN의 性屬性의 固定觀念과 偏倚 및 全國資料便覽
(New York, doc. ST/ESA/STAT/99, 11 June 1980)을 參照 .

18 . 이것에 關한 調査票의 實驗的 作成에 對하여는 ILO의 女性
의 役割과 人口學的 變動에 關한 研究 : 家口, 女性, 男性, 地域社會
의 背景說明을한 調査票 , Richard Anker 著 (Geneva, May 1980) 參照 .

19 . 國際勞動會議 : 家族의 扶養責任을 가진 就業者에 關한 勸告案 ,
1981 (No. 165).

20 . 詳細한 것은 UN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를 위한 原則과
勸告案 , op.cit., paras. 2.73 - 2.85 參照 .

第Ⅶ章 資料의 蒐集과 公表

236. 綿密히 設計된 資料蒐集計劃은 適合하고 正確한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統計를 編制하고 이를 다른 關聯統計와 調和시키는 데 가장 必須的인 것이다. 이 章에서는 資料蒐集에 관한 範圍, 資料源 및 蒐集計劃과 主要計測問題 및 公表樣式 等に 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範圍, 資料源 및 蒐集計劃

範圍

237.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統計는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 즉, 모든 就業者, 不完全就業者 및 失業者와 有業者, 不完全 有業者 및 無業者 그리고 모든 從事上의 地位(雇傭主, 被傭人 等)를 包括해야 한다. 또한 非經濟活動人口이면서 生産과 福利에 寄與하고 있는 사람들은 勿論 다른 모든 非活動人口도 包含해야 한다.

資料源

238. 經濟活動人口統計의 資料源은 3個의 範疇로 大分할 수 있는 바, 人口센서스를 包含한 家口調査, 事業體調査 및 行政記錄들이다. 範圍나 對象, 費用, 融通性 等の 觀點에서 어느 한 資料源과 다른 資料源을 比較하여 보면 서로 長短點은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資料源은 資料蒐集의 代替的인 道具로서가 아닌 補完的인 道具로서 매우 有用하다. 어느 한 資料源에서 나온 統計를 다른 出

處에서 나온 統計와 連結시켜 利用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서로를 比較함으로써 評價目的에도 使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爲하여는 概念이나 定義 및 分類를 可能한 限 잘 調和시켜야 한다.

239. 家口調査와 事業體調査를 比較하는 데 있어서 몇가지 考慮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 家口調査는 基本的으로는 各 個人의 活動 狀態를 測定하는 것이며, 事業體調査는 給與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就業者를 把握하는 것이다. 따라서 事業體調査에 있어서는 無給의 一時休職者는 調査에서 漏落되는 反面, 複數職業 保有者는 重複計算이 된다. 家口調査는 原則적으로 非經濟活動人口를 包含하여 目標人口 全部를 包括하나 事業體調査에서는 一般的으로 被傭者에 限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一定規模以上 事業體의 被傭者만을 調査한다. 모든 範疇에 속하는 勤勞者나 非經濟活動人口를 家口調査에 依하여 把握할 수 있다는 事實은 總勞動力과 潛在勞動力 및 各 人口集團의 勞動市場活動에의 依存度を 計測할 수 있는 唯一한 長點이 된다. 調査項目에 있어서는 家口調査方法이 事業體調査方法보다 融通성이 많다. 家口調査方法에 있어서는 各 個人을 直接 調査할 수 있음으로 人口學的 特性, 教育水準, 技術水準 및 人口移動狀態 等に 關한 資料를 勞動力의 基本的 特性和 함께 補充적으로 蒐集할 수 있다. 그러나 事業體調査에 있어서는 調査項目이 一般的으로 給與臺帳과 關聯 記錄에 나타나 있는 事項에 局限한다. 더우기 標本으로 調査하는 境遇에는 家口調査方法은 地域標本을 利用할 수 있는 可能性때문에 一般的으로 標本들 (Sample frame)이 지니는 缺陷의 深刻성이 事

業體標本調査의 境遇보다는 훨씬 덜한 長點을 갖고 있다.

240. 한편 事業體調査方法에 依하면 家口調査方法에 依하는것 보다 經濟의 組織化 部門에 있어서 보다 正確한 就業者統計를 蒐集할 수 있으며, 特히 特定産業만을 對象으로 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 理由는 特定産業部門의 調査結果에 對한 標本誤差 管理를 家口調査에서 보다 事業體調査에서 더욱 效果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事業體調査는 關聯記錄과 給與臺帳에 依하여 調査하는 것이기 때문에 各 個人의 記憶力과 調査員의 面接에 依하는 家口調査로 얻어지는 結果보다 測定誤差 (Measuerment error)가 훨씬 적게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事業體 調査에서는 給與額, 就業時間 또는 就業日數 等に 關한 보다 正確한 情報를 얻을 수 있으나 家口調査에서는 이러한 情報를 蒐集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部分的인 理由이기는 하나 事業體調査는 接觸對象이 적어서 家口調査보다 調査費用이 적게 들고 結果를 보다 迅速히 얻을 수 있다.

241. 行政記錄으로부터 蒐集되는 統計는 大部分 失業保險記錄과 職業紹介所登錄에 依存한다.¹⁾ 이러한 記錄들은 産業化된 나라들에 있어서는 失業統計의 資料源으로서 널리 利用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記錄들을 地域失業統計 算出에도 利用하고 있다. 그러나 失業保險이나 職業紹介所の 記錄에서 얻는 統計에는 制約性이 있다. 이러한 記錄에는 學生, 主婦, 隱退者 등으로서 求職하고 있는 範疇의 사람들이 빠져 있을 수 있다. 더우기 이러한 記錄은 나라마다 그 包括範圍가 다르며, 施行中에 있는 法規에 크게 左右될 뿐만아

나라, 一國內에 있어서도 關係法規가 變更되면 이에 따라 그 包括範圍도 달라지게 된다.

242. 以上과 같은 理由로, 家口調査에 依하여 蒐集되는 統計가 國際比較目的을 위해서는 보다 適切하다 하겠다.

蒐集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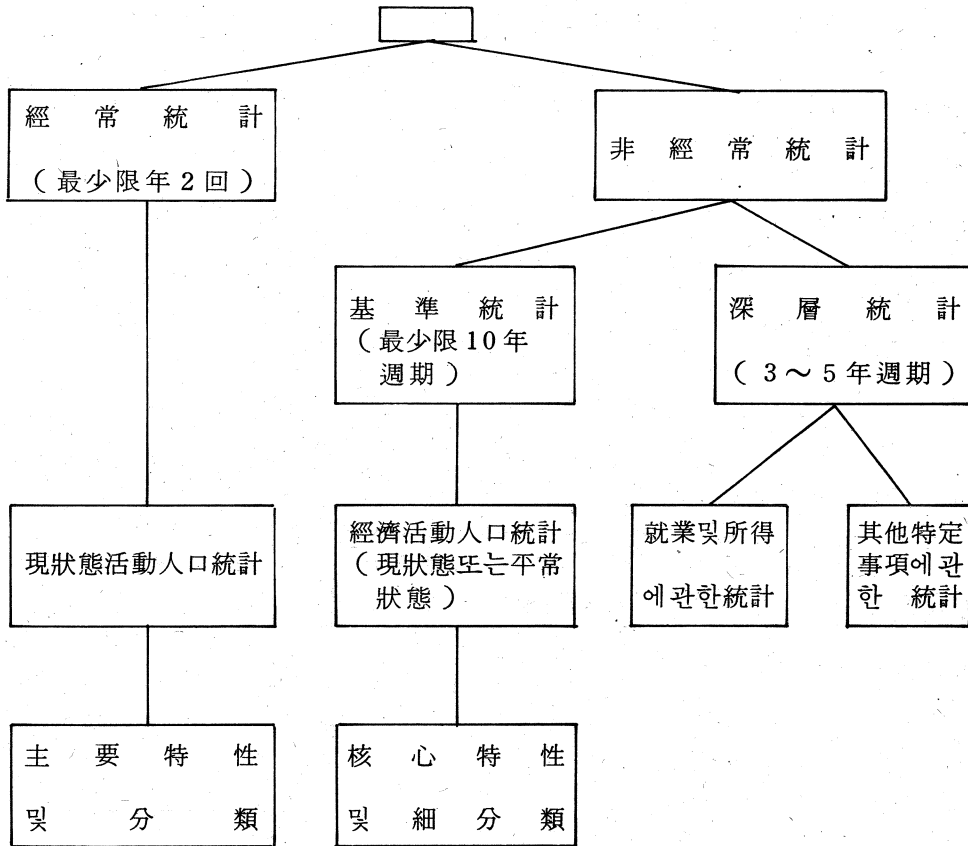
243. 經濟活動人口統計의 作成에 있어서는, 最近의 動向을 把握하기 위한 短期間을 週期로 하는 經常調査와 構造分析의 目的을 위하여 長期間을 週期로 하는 特別調査 두가지를 모두 實施하도록 計劃되어야 한다(圖7 參照)

244. 經常統計作成計劃에는 現狀態의 活動人口와 非活動人口를 모두 包含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計劃에는 可能な 限 第Ⅵ章에서 言及한 主要特性和 分類를 包含해야 한다. 그리고 資料는 적어도 1년에 2回程度는 蒐集하여 總計를 推定함으로써 季節性を 適切히 把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資料는 家口標本調査에 依하여 蒐集되는데, 이 境遇 調査를 1년에 여러번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閑暇한 季節과 바쁜 季節의 두 時點에는 調査할 수 있도록 標本이 設計되어야 한다.

또한 賃金勞動力을 構成하는 特性, 特히 雇傭水準이나 失業水準 및 失業率의 月別이나 分期別變動을 測定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주 調査를 實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資料는 月別 또는 分期別 家口調査에 依하거나 事業體調査結果와 行政記錄資料를 綜合하여 얻을 수 있다.

(圖 7) 資料蒐集을 위해 提案된 細部計劃體系案

(1982. 第 13 次 ICLS)



245. 長期間을 週期로 하여 實施되는 特別調査는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基本資料나, 어떤 特殊局面에 관한 深層統計를 提供해 준다. 最少限 10 年 間隔으로 實施되는 人口센서스에 依하여 蒐集되는 基準資料에는 몇가지 特性이 包含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分類는 보다 詳細히 細分되어야 한다.²⁾ 核心的인 特性으로서는 性別

年齡, 婚因狀態, 教育程度, 職業, 產業, 從事上的地位, 就業의 部門, 就業時間 等を 들 수 있다. 分類는 可及的 細分되어 經濟活動人口와 非經濟活動人口의 地域的, 人口學的 및 職業的 特性과 其他 構造的 側面에 關한 詳細한 情報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事業體의 雇傭과 給與에 關한 基準資料는 產業統計의 一部로서 蒐集할 수 있다.³⁾

246. 深層統計는 每3年 또는 每5年마다 週期的으로 蒐集되어야 하며 特定分野의 就業者나 經濟活動의 特殊分野에 關한 具體的인 分析이 可能하도록 調査되어야 한다. 深層調査에 있어서의 調査項目의 選定은 그 重要性이나 開發計劃如何에 따라 每番 달라질 수 있다. 前章에서 言及한 바 있는 深層調査를 必要로 하는 몇가지 主要統計에는 就業과 所得에 關한 統計, 靑少年과 女性에 關한 統計 및 家口의 屬性에 關한 統計가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時間利用에 關한 統計이다. 이들 統計는 그것이 지닌 細分性과 實測性 등으로 해서 特히 女性과 어린이들의 活動에 關한 生産性을 研究하거나, 經濟活動人口統計自體를 分析・解釋하며 改善하는데 有用하다.

247. 深層統計資料의 蒐集을 經常調査計劃에 包含시켜 이들 두 統計를 繼續調査로 發展시킬 수 있다. 이러한 統合計劃의 利點은 經濟活動人口統計와 所得消費, 出產力 및 人口移動統計나, 이미 言及한 바 있는 다른 統計와의 聯關統計 作成이 可能하다는 것이다.⁴⁾

測定上の 問題點

248. 다른 統計와 마찬가지로 經濟活動人口統計에도 誤差가 있게 마련이다. 資料蒐集計劃을 잘 짜서 이러한 誤差를 最少限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도, 약간의 誤差는 發生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結果를 慎重히 解釋하기 위해서는 資料의 質에 관한 약간의 知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資料의 質에 관한 評價는 앞으로의 調査業務遂行에 있어서 資料蒐集, 資料處理 및 推計方法 등을 改善하는데 必要하다. 評價節次는 可及的 資料蒐集計劃 自體의 一部分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經濟活動人口統計에 影響을 주는 測定上の 몇 가지 問題點 즉, 特히 女性 屬性의 偏倚라든가, 代理應答, 應答忌避 및 職業과 產業의 符號記入過程上的 問題點에 對하여 다루고자 한다.

249. 性 屬性 偏倚. 여러가지 社會・經濟・文化的 理由로 해서 家口調査에 依하여 計測하고자 하는 “일”이나 “經濟活動”이 正確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應答者는 勿論 調査員에게도 때로는 確實치 않을 때가 많다. 이러한 問題는 特히 女性들의 活動을 把握하고자 할 때 그러하다. 性 屬性의 잘못된 생각으로 男子應答者는 意識的이건 無意識的이건 自己事業을 돕고 있는 自己婦人의 經濟活動을 잘못 對答하여 無給家族從事者를 過少推定케 하는 수가 있다. 또한 即時 就業이 可能的 求職中인 女子가 自己를 “家庭主婦”로 밝혀두는 것이 社會적으로 便利하다고 생각해서 家庭主婦라고 對答함으로써 失業者數를 過少推定케 하는 例도 있다. 또한 調査員

이 對象家口를 訪問하여 집에 있는 女子를 보고 時間制 일이나 家內 事業에의 從事與否를 묻지도 않은 채 獨斷的으로 非經濟活動으로 分類함으로써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을 過少推定케 하는 수도 있다.

250. 調査上 性 屬性에 依한 잘못된 생각으로 因한 應答誤差는 報告된 結果가 矛盾되거나 잘 맞지 않은 境遇에 이를 分析하여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同一한 條件이나 보다 詳細한 時間利用研究에 依하여 深層的인 再調査라든지 또는 獨立的인 別途의 調査를 綿密하게 設計하여 實施한다면, 性 屬性에서 오는 應答誤差를 解明할 수 있을 것이다.⁵⁾ 男子 代身 女子調査員을 活用할 境遇의 效果도 檢討해 보아야 한다.

251. 代理應答. 大部分의 境遇, 勞動力調査에서 調査되는 結果는 代理應答者로부터 얻어진다. 例를 들면 本人이 아닌 다른 家口員이 應答하는 境遇이다. 家口員의 어떤 特性에 對하여는 應答者가 잘 알 수 없으며(實際就業時間같은 것) 또한 그 特性이 主觀的인 것(即時 就業可能性같은 것)일 수도 있음으로 代理應答을 하였을 때에는 誤差를 隨伴하기 마련이다.

252. 一般的으로 代理應答으로 因한 誤差는 가끔 다른 것에 依한 結果와 混同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評價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獨自的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調査와 連結시켜서 하든지 代理應答에서 오는 誤差를 評價하기 위한 細心한 實驗的 設計가 必要하다.

253. 應答忌避. 性 屬性으로 因한 誤差나 代理應答으로 因한 誤差外에도 應答者가 어떤 銳敏한 事項에 對하여는 意圖的으로 眞實

을 歪曲시킴으로써 發生되는 誤差가 있다. 銳敏한 調査事項으로서는 許可를 받지 못한 일, 流動勞動者의 計上에 影響을 주는 質問, 未申告의 副業, 不法하거나 社會적으로 容納될 수 없는 活動, 어린이 勞動 그리고 所得 等を 들 수 있다. 또한 失業保險登錄者가 失業保險給與를 받지 못할 것을 念慮하여 때때로 한 經濟活動을 應答하지 않는 境遇도 있다.

254. 忌避的인 項目에 對한 調査結果의 質을 評價하는 方法은 이를 考案해 내기도 어렵고 이를 管理하기란 더욱 어렵다. 이태리에서는 標準的인 勞動力調査方法으로써 把握할 수 없는 秘密事業을 索出해내기 위한 方法으로 時間利用資料를 蒐集하는 實驗을 하고 있다.⁶⁾ 銳敏한 項目을 調査하기 위한 또 하나의 方法은 任意應答技法이다.

255. 符號記入, 符號記入誤差는 주로 職業과 産業分類의 符號記入에서 發生한다. 勞動力調査나 人口센서스의 資料處理에서의 職業 및 産業分類 符號記入에 관한 研究結果를 보면 錯誤가 대단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例를 들어, 1970年에 實施한 스웨덴의 人口센서스 結果에서는 세 자리 수 職業分類 符號記入의 錯誤率이 13.5%, 産業分類符號記入(네 자리)은 9.9%이었다.⁷⁾ 같은 해 美國의 境遇에는 各各 13.3%(標準誤差 0.4%)와 9.1%(標準誤差 0.34%)였다.⁸⁾ 勞動力標本調査에 있어서는 職業과 産業의 大分類나 中分類程度만 把握하고 있으므로 符號記入의 誤差는 合計過程에서 서로 相殺된다. 그러나 이러한 誤差의 相殺는 全體誤差의 절반에 미치지 못

하고 있음이 經驗的 結果로 알려져 있다. 또한 職業과 產業, 主業과 副業 그리고 職業間 流動을 聯關 製表할 때에는 符號記入 誤差는 더욱 複合된다는 點에 有意해야한다.

256. 誤差率의 크기를 勘案하여 이의 管理 및 評價節次와 獨立的인 審査體系를 大規模 符號業務要領에 併合해서 作成해 두어야 한다. 表面上 符號의 質은 첫째로 符號體系의 構造나 應答者의 應答內容에 左右되므로 適切한 職業 및 產業分類의 開發이나 調査現地에서의 明確한 符號要領이 必須的이며, 따라서 이에 보다 重點을 두어야 한다.

公 表

257. 傳統的이고 아직도 가장 普偏的인 統計情報의 公表方法은 統計表를 冊子로 發刊하는 것이다. 經濟活動人口統計의 適時性은 特히 重要하기 때문에 主要項目의 集計가 끝나는데로 優先 暫定的인 速報를 發刊 公表 하고 그다음에 確定值라던가 보다 詳細한 統計를 收錄한 最終報告書를 迅速히 發表해야 한다.

258. 컴퓨터의 處理能力이 增大됨에 따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보다 詳細한 統計情報나 主要項目資料를 컴퓨터에 蓄積된 資料에서 또는 一般使用을 위하여 開放된 테이프 또는 大量蓄積裝置로 부터 直接 얻을 수 있다. 컴퓨터에 蓄積된 基礎 原資料는 要請에 따라 特別製表를 할 때에는 有用하다. 그러나 이러한 原資料를 取扱할 때는 언제나 秘密保護를 위한 安全裝置나 情報의 濫用을 防止할 수 있는 措置를 반드시 取해야 한다.

259. 어떠한 방법으로 統計를 公表하던 間에 經濟活動人口에 關한 統計資料를 發表할 때에는 反復調查結果이던 1回調查의 結果이던 間에 統計의 性格이나 技術上의 解析을 반드시 記述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記述은 範圍, 主要概念과 定義, 資料蒐集方法, 標本調査時에는 標本設計, 季節調整을 했을 境遇에는 그 計算方法, 標本誤差와 非標本誤差를 包含한 資料의 質, 調査의 沿革 및 다른 出處의 資料와의 關係 등을 包含해야 한다.⁹⁾ 各國의 概念이나 定義가 國際基準의 概念 및 定義와 一致하지 않을 때에는 說明을 加하고 可能하면, 主要項目은 各國의 定義와 國際的 定義에 依하여 各各 計算해 놓아야 한다.

註 記

(1) 其他行政記錄, 예컨대 對民奉仕機構 (Civil Service Administrations), 政府企業 및 公共機關의 給與臺帳과 公文書記錄들도 公共部門에서 雇傭에 關한 情報를 蒐集하는데 쓰인다.

(2) U.N : 「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시리즈 M. 第 67 號 (New York, 1980). 販賣用 No. E.80. XVII. 8

(3) U.N : 「 Recommendations for The 1983 World Programme of Industrial Statistics 」, 統計文書 시리즈 M. 第 71 號 第 1 部 및 第

II 部 (New York, 1981), 販賣用 No. E. 81. XVII. 12

(4) 資料蒐集에 관한 集約的 프로그램이 지니는 諸般長點을 論한 U.N의 「 The National Household Survey Capability Programme : Prospectus 」 (New York, 1980) 參照. 技術的인 內容明細는 「 Handbook of household Sarveys 」, U.N 刊行物 (編纂準備中임) 의 改訂版草案에 掲載되었음.

(5) 좀더 詳細한 內容은 UN의 「 Sex-based Stereotypes, Sex biases and National Data Systems 」 (文獻, ST/ESA/STAT/99, 1980年6月11日) 의 pp. 23 ~ 31 을 參照.

(6) Grazia Giacomini Arangio-Ruiz : 「 Recent ISTAT experience concerning the monitoring of unrecorded employment 」 ; 雇傭 및 失業統計에 관한 OECD 實務團의 第4次會議用 文書 (制限文獻 MAS /W p.7(80) 3, Paris, 1980年4月 14 ~ 16日)

(7) Sweden, Lars Lyberg : 「 Control of the Coding Operation in Statistical Investigations - Some Contributions 」 Urval 紙, (Stockholm, Statistiska Centralbryan) 第13卷 1981年3月, p.28.

(8) 美國센서스局的 「 Coding Performance in the 1970 Census », Evaluation and Research Program PHC(E)-8 (Washington, D.C., 1974年4月), p.10.

(9) 家口 또는 個人調査에서의 統計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國際的基準 (International Guidelines) 은 現在 유럽統計人團會議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에서 開發中임.

附 錄 · 決 議 案 草 案

決 議 案 草 案

이 決議案草案에는 報告書가 印刷에 回附된 후에 變更된 概念과 用語가 追加되었음.

經濟活動人口, 就業, 失業, 不完全就業 및 就業所得

統計에 관한 決議案 草案

第 13 次 國際勞動統計人會議를 ILO 事務局 主管下에 1982 年 10 月 18 日부터 29 日까지 Geneva 에서 開催하였음.

第 8 次會議(1954 年)에서 採擇된 決議案 I 에 包含된 現行 勞動力, 就業 및 失業統計에 對한 國際基準과 第 11 次會議(1966 年)에서 採擇된 決議案 III 에 包含된 不完全就業과 人力의 不完全活用の 測定 및 分析方法에 관한 國際基準을 再檢討하고,

모든 나라 特히 統計의 發展途上國에 보다 適合하고 有用한 技術上的 指針을 마련하기 위한 現行基準의 改正 및 擴大適用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또한 國際比較에 있어서의 同 基準의 有用性을 認定하여,

이 改正基準을 第 8 次會議에서 採擇된 決議案 I 과 第 11 次 會議에서 採擇된 決議案 III 에 代替한다.

一般的 目的과 範圍

1. 各國은 經濟活動人口統計의 包括的인 體系를 發展시켜서 各國

의 必要性과 環境을 勘案하여 多様な 統計需要에 副應할 수 있는 適切한 統計的 基盤을 構築해야 한다. 特히 이러한 體系는 活用이 可能하면서도 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人力資源의 質과 量을 計測하여 巨視經濟的 評價와 人力開發計劃樹立에 寄與하고, 또 就業과 所得間의 關係를 測定하여 雇傭創出政策과 所得保障計測 및 職業訓練計劃 等を 立案하고 施行 評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以上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經濟活動人口統計는 原則的으로 모든 經濟活動, 經濟部門, 地位別 集團(被雇傭者, 自營就業者)等を 對象으로 하며 可能한 限度內에서 最大限 다른 經濟 및 社會統計와 調和되도록 發展시켜야 한다.

3. 綜合的 計劃은 短期的인 反復調查에 依하여 蒐集되는 動態的 統計와 構造 分析이나 深層分析을 爲하여 長期的인 週期로 蒐集되는 統計 모두를 作成하도록 樹立되어야 한다.

(a) 經常統計는 現狀態의 活動人口 및 非活動人口가 包括되어 趨勢나 季節變動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b) 非經常統計는 (i)經濟活動人口에 관한 基準資料를 提供할 수 있고 (ii) 就業과 所得間의 關係에 관한 深層統計라든지, 長期的이고 繼續的인 必要에 依하여 決定되는 其他 特定事項, 例컨데, 靑少年, 女性, 家口屬性關聯事項等에 관한 深層統計를 提供할 수 있어야 한다.

4. 標本調査 또는 全數調査에 依하든 家口調査는 一般的으로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거나 다른 有關資料와 連結시키는

데 가장 適合한 手段이며, 事業體 調査와 行政記錄 역시 經濟活動 人口의 特定 構成要素나 特性에 관한 統計를 蒐集할 수 있는 基盤으로서의 役割을 한다.

5. 經濟活動人口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한 全國家口調査나 其他方法의 調査를 設計하고자할 때에는 可能한 限 國際基準을 反映하도록 해야한다. 國家間의 統計比較性を 提高시키는 데 있어서 各國의 概念이나 定義가 國際基準과 다를 境遇에는 이에 관한 明文을 만드지 불이고 可能한 合計値는 自國基準 및 國際基準에 依한 두가지를 다 計算해 놓아야한다. 또한 이와 代替的인 方法으로 必要한 構成要素를 分明히 하여 別途로 把握함으로써 國際基準에 依한 轉換이 可能하도록 해야한다.

概念과 定義

經濟活動人口

6. “經濟活動人口”란 一定期間中 經濟財나 서비스의 生産에 勞動의 供給을 提供한 모든 男女를 말한다. 이것은 現狀態活動人口” 또는 “平常狀態活動人口”를 測定하여 計量化할 수 있다.

現狀態活動人口

7. “現狀態活動人口”란 一定 時點(一週間을 넘지 않는 短期의 調査對象期間이 一般的이다)에서의 總勞動力을 말한다.

즉, 現狀態活動人口는 다음 第9~18項에서 定義된 就業者와 失業者의 要件을 갖춘 一定年齡以上の 사람들로 構成된다.

平常狀態活動人口

8. (1) “平常狀態活動人口”란 “지난 12個月”이나 “昨年 1年間”과 같이 一定 長期間中 大部分의 期間동안 就業하였거나 失業하였던 一定年齡以上の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이러한 概念을 使用하는 境遇에는 人口를 “平素活動人口”와 “平素非活動人口”로만 分類하는 것에 局限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活動狀態를 보다 細分하는 것은 非實用的이며 無意味하다.

就業者

9. (1) “就業者”란 一週間을 넘지않은 一定短期間의 調査對象期間中 다음의 第10項 및 11項에서 定義하고 있는 “賃金就業者”나 “自營就業者”의 要件을 갖춘 一定年齡以上の 男女人口를 말한다.

(2) 하나以上の “就業者”範疇에 分類될 수 있는 사람을 어느 하나의 範疇에 分類되도록하기 위하여는 基準의 設定이 必要하다.

10. (1) “賃金就業者”는 다음의 範疇에 屬하는 사람들로 構成된다.

(a) “일하였음”; 調査對象期間中 現金 또는 現物이든간에 賃金이나 俸給을 얻기위하여 조금이라도 일을 한사람

(b) “一時休職”; 지금까지 就業하였던 사람이 調査對象期間中 缺勤한 境遇로서 이들의 일자리는 繼續해서 確固한 保障이되어있는 사람들이다. 確固한 就業保障의 與否는 各國의 實情에 비추어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基準에 맞추어 決定되어야 한다.

(i) 缺勤, 休暇 또는 一時解雇의 經過期間.

(ii) 偶發적인 災難이나 休暇期日이 끝나면 職場으로 復歸하도록 保障되었거나 歸任日字가 決定되어 있는 境遇.

(iii) 賃金, 또는 俸給을 繼續받고 있는 境遇.

(2) 疾病이나 傷害, 勞動爭議, 休暇, 教育休職, 出產休暇等の 理由로 職場을 쉬고 있거나, 日氣不順, 施設裝備의 故障, 休業等の 理由로 因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賃金就業者로 看做되나, 이 境遇 職場 復歸에 對한 確固한 保障이 있어야 한다.

(3) 遂行한 用役의 代價를 直接 받는 自營者 즉, 現金 또는 現物의 報酬를 받는 見習生, 時間制 (Part-time) 이든 常勤制 (Full-time) 이든 報酬를 받고 일한 學生들은 賃金就業者로 看做되며, “일하였음” 과 “일하지 않았음” 의 分類는 다른 賃金就業者에서의 分類基準과 같다.

(4) 軍人은 賃金就業者에 包含되며, 最近改正版 ISCO (國際標準 職業分類) 規定에 따라 正規軍人이든 非正規軍人이든 모두 包括한다.

(5) 다음의 範疇에 該當하는 사람은 賃金就業者로 보지 않는다.

(a) 雇傭主, 自營業者 (上記한 賃金就業者에 該當하는 自營者는 除外) 無給家族從事者, 生産者協同組合員

(b) 일자리를 떠났거나 解雇된 사람으로서 그 職場에 復歸하도록 確固한 保障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11. (1) “自營就業者”란 다음의 範疇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a) “일하였음” ; 調査對象期間中 現金이든 現物이든간에 收益 또는 家計收入을 目的으로 조금이라도 일한 사람

(b) “一時休業” ; 調査對象期間中 해야할 일거리는 있었으나 疾病이나, 傷害, 休暇, 祝祭, 日氣不順 또는 其他 類似한 理由로 暫時 休業한 사람

(2) 雇傭主, 自營業者(用役을 提供하고 그 代價를 直接받는 自營者는 除外), 生産者協同組合員, 無給家族從事者 等은 就業時間과 關係없이 自營就業者로 看做하고, 狀況에 따라 “일하였음” 또는 “一時休業”으로 分類한다.

(3) 다음의 範疇에 속하는 사람들은 自營就業者로 보지 않는다.

(a) 家事者, 無給의 地域社會 自願奉仕者, 또는 經濟活動範疇以外의 일에 無給으로 從事한 사람.

(b) 한가한 季節에 있어서의 季節的 自營業者 또는 無給家從事者로서 調査對象期間中 일하지 않은 사람.

失業者

12. (1) “失業者”는 다음의 第13 ~ 18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狹義” 또는 “廣義”의 定義에 따른다.

(2) 狹義나 廣義中 어느 것을 擇할 것이냐하는 問題는 各國의 實情에 따라 決定되어야하나, 狹義의 定義를 擇할 때에는 廣義의 定義를 適用하였을 境遇의 失業者에 屬하는 사람들을 把握하여 非

活動人口와는 別途로 區分할 수 있어야하며, 反對로 廣義의 定義를 適用하였을 境遇에는 狹義의 定義에 依한 失業者를 別途로 分類할 수 있어야 한다.

13. “失業者”란 狹義의 定義에 따르면, 一定年齡以上の 男女中 特定調査對象期間 동안에 求職活動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第14項 및 15項에서 定義하고 있는 “賃金就業求職者”나 “自營就業求職者”를 말한다.

14. (1) “賃金就業求職者(狹義)”란 다음의 範疇에 모두 該當하는 사람을 말한다.

(a) 調査對象期間中에 다음과 같은 狀態에 있었던 사람 즉,

(i) “일거리가 없음” 예를 들면, 調査對象期間동안에 賃金 就業者도 自營就業者도 아니었던 사람.

(ii) “有給의 일거리를 찾고있음” 예를 들면 最近 一定期間(지난 1個月間)동안 賃金이나 俸給을 받는 有給의 일거리를 求하기 위하여 具體的인 活動을 한 사람.

(iii) “有給의 일거리가 있다면 即時 就業이 可能함” 예를 들면, 求하던 일거리가 생겼을 때 即時 또는 가까운 時日內에 就業이 可能한 사람

(b) 調査對象期間中에 일거리는 없었으나 有給의 일거리가 생기면 即時就業이 可能하고 調査對象期間이 經過하면 곧 새로운 有給의 일에 就業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

(2) 最近 一定期間中 失職 또는 一時解雇等の 理由로 職場에

나가지 않고 있으며, 또 復職에 對한 確固한 保障도 되어있지않은 사람으로서, 有給의 일거리를 찾고있는 사람이나 見習의 일거리를 찾고있는 사람 또는 放學中에 常勤制일이나, 學期中에 時間制일을 찾고있는 學生은 모두 賃金就業求職者에 包含된다.

(3) 다음 範疇에 속하는 사람들은 賃金就業求職者로 보지않는다.

(a) 일거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最近 一定期間中 有給의 일거리를 求하기 위한 具體的인 活動을 하지 않았거나 有給일거리가 있더라도 即時就業할 수 있는 處地에 있지 못한 사람

(b) 最近 一定期間中 失職 또는 一時解雇等の 理由로 職場에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有給의 일거리를 찾기위한 求職活動도 하지 않은 사람

15. “自營就業求職者(狹義)”란 調査對象期間中 일거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最近一定期間(지난 1個月間)동안 自營業을 하기위하여 일거리를 찾고있었던 사람이나 自己業體를 設立하기 위한 具體的인 節次를 取한 사람을 말한다.

16. 擴義의 定義에 依한 “失業者”란 一定年齡以上の 男女中 特定한 調査對象期間 동안 就業이 可能하였던 사람으로서 第17項 및 18項에서 定義하고있는 “賃金就業 可能者” 및 “自營就業 可能者”를 말한다.

17. (1) “賃金就業可能者(廣義)”란 다음 範疇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a) 上記 第14項의 狹義의 定義에 따른 모든 賃金就業求職者

(b) 有給의 일거리가 생기면 即時 賃金就業이 可能하나 現在 일거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最近 一定期間中 다음과 같은 理由로 해서 求職하지 않은 사람 즉, ①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求職하는 길을 몰라서, ③ 復職待機, ④ 求職結果待機 및 ⑤ 其他特別한 事由

(2) 最近一定期間中 失職 또는 一時解雇等の 理由로 일을 쉬고 있는 사람으로서 確固한 復職保障도 없이 求職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即時就業이 可能하면 廣義의 定義에 따라 “賃金就業可能者”에 包含시켜야 한다.

(3) 다음 範疇에 속하는 사람은 賃金就業可能者로 보지않는다.

(a) 家事나 通學等の 理由로 求職하지 않은 사람.

(b) 即時就業이 不可能한 季節的 勤勞者

18. “自營就業可能者(廣義)”란 다음의 範疇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a) 上記 15項의 狹義의 定義에 따른 自營就業求職者

(b) 自己 自身 또는 家口가 企業을 갖고 있으나 調査對象期間中 裝備나 資金不足, 농사철 待期等の 理由로 全然 일을 하지 못한 사람

現狀態의 非活動人口

19. (1) “現狀態의 非活動人口”란 短期의 調査對象期間中 就業者도 失業者도 아닌 男女人口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範疇의 사람들이 여기에 包含된다.

(a) “家事” : 家庭主婦나 其他家族이 집안일이나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自己집안일에만 從事하며 經濟活動을 하지 않은 사람

(b) “學生” : 公私立의 正規學校에 다니는 男女學生으로서 經濟活動을 하지 않은 사람

(c) “不勞所得者” : 資產 또는 投資 所得者, 年金受惠者等 勤勞를 하지 않고 所得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經濟活動을 하지 않은 사람

(d) “其他” : 公共 또는 私的의 生活補助를 받고 있는 사람, 未就學兒童, 入院患者, 收監者, 또는 民間施設收容者 등과 같은 上記의 範疇에 該當되지 않은 사람

(2) 必要하다면, (i) 無給의 地域社會奉仕 및 自願奉仕者와 (ii) 經濟活動範疇以外의 活動에 無報酬로 從事하고 있는 사람을 把握하기 위하여 보다 細分된 範疇를 마련할 수도 있다.

分析的 概念

20. (1) “賃金就業者”와 “賃金就業求職者(또는 即時 就業可能者)”를 合計하면 “賃金勞動力”이 된다.

(2) “自營就業者”와 “自營就業求職者(또는 即時 就業可能者)”를 合計하면 “非賃金勞動力”이 된다.

(3) “賃金勞動力”과 “非賃金勞動力”을 合計하면 “總勞動力”이 된다.

(4) “民間勞動力”은 “總勞動力”에서 “軍人”을 뺀 것이다.

21. 上記 各種要素에 依하여 分析的인 計量을 導出할 수 있으며, 特히 두가지의 失業率을 計算할 수 있다:

(a) “總勞動力”에 對한 失業者의 構成比

(b) “賃金勞動力”에 對한 賃金就業求職者(또는 即時就業可能者)의 構成比

不完全就業

22. 不完全就業이란 各人の 就業狀態를 그들의 職業上的 技術水準(訓練이라든지 業務經驗)을 勘案하여 特定勞動基準量 또는 다른 就業樣態와 比較하여 不適當할 때 存在한다. 不完全就業은 可視的 및 不可視的의 두가지 主要形態로 區分할 수 있다.

23. 可視的 不完全就業은 原則的으로 統計的 概念으로서 勞動力 調査나 다른 調査에 依하여 直接 計測이 可能하며 이는 就業量의 不充分度를 反映하는 것이다.

(2) 不可視的 不完全就業은 原則的으로 分析的 概念으로서 勞動力 資源의 그릇된 配分이나 勞動과 其他 生産要素간의 構造的인 不均衡을 反映하는 것이다. 特徵的인 特性으로서는 低所得, 技術의 不完全利用, 低生産性 等を 들 수 있다.

24. 實用上 不完全就業의 計測은 可視的 不完全就業에 限한다.

25. 可視的 不完全就業의 測定要素에는 (a) 不完全就業者와 (b) 不完全就業量 두가지가 있다.

不完全就業者

26. (1) “不完全就業者”는 “就業者”의 한 부분으로서 다음 두 가지 範疇에 該當하는 사람을 말한다.

(a) 調査對象期間中 賃金就業을 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就業時間이 本人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다만 經濟的 理由로 完全 就業時間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b) 調査對象期間中 自營就業을 한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追加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

(2) 完全 時間이라는 概念은 各國 實情에 따라 就業時間數 또는 就業日數(實際上이거나 平常的이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組合)를 基準으로 決定되어야 하며 이러한 基準은 經濟活動의 모든 分野에서 같을 수도 있고 또 어떤 分野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非自意的인 經濟的 理由란 일거리가 적다든지, 일거리가 없는 閑散季節, 資材不足, 施設裝備의 補修, 常勤制 일거리를 求하지 못함 등의 理由를 말하며 日氣不順이나 個人 또는 家族의 일로 일한 事由 등은 여기에 包含하지 않는다.

不完全就業量

27. “不完全就業量(失業量包含)”은 다음과 같이 勞動力의 勞動投入時間比率을 計算함으로써 推計할 수 있다.

(1) 勞動力을 構成하고 있는 個個人에 對하여 調査對象期間中 日別 또는 半日別로 다음 事項에 관한 情報를 蒐集한다.

(a) 調査對象期間中の 就業(出勤 또는 缺勤)日數 또는 半日數
(b) 就業하지 못하였으나 即時就業이 可能했던 日數 또는 半日數

(c) 일도하지 않았고 即時就業도 不可能했던 日數 또는 半日數

(2) 이렇게 하여 처음의 두값을 가지고, (a)와 (b)의 합계에 대한 (a)의 比率을 計算하여 不完全就業量을 推計한다.

(3) 이 比率은 또한 延就業日數의 不完全就業總量을 推計하는 데도 利用된다.

就業과 所得關係

28. 이 兩者의 關係를 두가지의 形態로 區分할 수 있다.

(a) “就業”과 “就業所得”과의 關係는 다른 經濟活動의 所得創出能力을 決定하기 위해서 測定하는 것이다.

(b) “就業”과 “就業所得” 및 “家計所得”과의 關係는 그들 自身이나 家口에게 주어지는 就業機會로 가름하여 經濟的 安寧을 維持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數와 이들의 特性을 把握하기 위하여 測定하는 것이다.

就業者

29. 就業 및 所得 統計에 있어서 “就業者”란 다음의 範疇에 속하는 一定年齡以上の 모든 男女를 말한다.

(a) “賃金就業所得者” : 지난 12個月 또는 昨年1年과 같은 特定期間中 어느 時點에서든 就業하였던 民間人으로서, 주로 賃金이나 俸給 또는 其他給料를 받은 사람

(b) 自營就業所有者：特定期間中 어느 時點에서든 就業하였던 民間人으로서, 주로 企業所得을 얻은 사람

就業所得

30. 就業者의 “就業所得”은 다음과 같다.

(a) “賃金就業所得”：現金 또는 現物形態의 賃金이나 俸給 및 其他 給料

(b) “自營就業所得”：一定期間中 投入한 勞動의 代價에 該當되는 現金 또는 現物形態의 總企業收入金の 一部分

家計所得

31. (1) “家計所得”은 다음의 두가지 概念中 하나가 適用된다.

(a) “總家計所得”：税金, 社會保障分擔金 및 年金寄與金を 空除하기 以前의 家口의 年間 總收入

(b) “可處分家計所得”：總家計所得에서 直接稅, 社會保障分擔金 및 年金寄與金を 控除한 金額.

分 析

32. 就業과 所得間의 關係는 (i) 就業期間, (ii) 就業所得 및 (iii) 家計所得別 就業者 分布를 分析하여 測定할 수 있다. 實際로는 假定과 分析方法에 따라 여러가지로 推計가 나온다.

分 類

33. 經濟活動人口, 就業者와 失業者의 職業分類 (失業者는 前職業에

依함)은 國際標準職業分類(ISCO) 改訂版에 따르든가 또는 이에 맞추어 轉換할 수 있어야한다.

34.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및 失業者의 產業分類(經濟活動分野)는 國際標準產業分類(ISIC) 改訂版에 따르든가 轉換할 수 있어야 한다.

35.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失業者, 從事上の 地位 分類는 最近 改訂版 國際分類에 따르든가 轉換할 수 있어야 하며, 無給家族從事者の 最低就業時間基準(正常就業時間의 1/3 以上)은 더 以上 必要 없으므로 이를 適用하지 않는다.

36.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失業者, 非經濟活動人口 等の 年齡別分類는 다음의 年齡階層別로 分類하거나 이에 맞추어 轉換할 수 있어야 한다.

(a) 最下位分類: 15 歲未滿, 15~24, 25~44, 45~64, 65 歲以上

(b) 最上位分類: 15 歲未滿, 15~19, 20~24, 25~34, 35~44, 45~54, 55~59, 60~64, 65~69, 70~74, 75~84, 85 歲以上

37. 就業者를 時間制(part-time) 또는 常勤制(full-time)로 分類하고자 할 때에는(또는 可視的 不完全就業者를 把握하거나 投下 勞動時間을 推計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就業者를 就業期間別로 分類해야한다.

나라마다 또는 目的에 따라서 “就業期間”을 適當時間 또는 日數, 年間日數 또는 週間 等으로 計測할 수 있다. 國際比較의 觀

念에서 볼 때 就業期間을 1週日로 잡는 경우, 自體分析目的을 위하여 어떠한 分類基準을 使用하든간에 다음과 같은 分類로 轉換할 수 있도록 하면 有用할 것이다.

(a) 週當就業時間 : 8時間未滿, 8~14, 15~34, 35~39, 40~47, 48~56, 57時間以上

(b) 週當就業日數 : 2日未滿, 2~4, 5日以上

38. (1) 失業統計에 있어서의 失業期間別 分類는 다음과 같은 間隔으로 集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一週日未滿, 1週日~1個月未滿, 1個月~3個月未滿, 3個月~6個月未滿, 6個月~1年未滿, 1年以上

(2) 失業期間에 관한 統計에서 使用되는 期間이란 現 失業狀態가 始作된 날로부터 起算하여 調查當日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統計의 性格

基準 (Benchmark) 統計

39. (1) 人口센서스는 적어도 每 10年마다 한번씩 實施해야하며,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및 非經濟活動人口에 관한 詳細한 統計는 勿論 性別 및 아래 項目別로 分類된 資料도 마련되어야 한다.

(a) 年齡階層別

(b) 活動狀態나 機能的範疇別

(c) 職業別

(d) 產業別 (經濟活動部門)

- (f) 就業期間別
- (g) 婚姻狀態
- (h) 教育程度別
- (i) 常住地別
- (j) 居住期間別
- (k) 地域別

(2) 可能하다면 正規軍인과 非正規軍인을 區分한 軍人 統計를 別途 作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0. 産業部門(鑛業, 製造業, 電氣, 가스 및 用水業)을 對象으로 하는 産業統計調査와 非工業部門(農業, 小賣業 等)이라도 有意性이 있고 測定이 可能하다면 이에 關한 調査를 적어도 每 10 年에 한번씩은 實施하여 賃金就業者(被傭人)數, 就業 所得(賃金이나 俸給)이나 就業時間 또는 日數(生産職) 等に 關하여 性別로 다음 項目別 統計를 作成하여야 한다.

- (a) 産業別(經濟活動部門)
- (b) 地域別
- (c) 事業體規模別(就業者數 基準)
- (d) 所有形態別

經常統計

勞動力資料

41. 各國은 적어도 年 2 回씩 가장 바쁜 季節과 한가한 季節을 擇하여 性別, 年齡階層別 總勞動力을 推計해야 한다. 그리고 可能

하다면 “賃金勞動力”과 “非賃金勞動力”을 區分해야 한다.

就業에 關한 資料

42. 就業動向에 關한 主要統計系列에는 적어도 다음의 情報가 反映되어 있어야 한다.

(1) 年 2 回 性別로 아래 項目別 就業者數를 分類해야 한다.

- (a) 年齡階層別
- (b) 職業別
- (c) 產業別 (經濟活動部門)
- (d) 從事上の 地位別

(2) 아래 事項에 關한 別途의 統計를 年 2 回 作成해야 한다.

(a) 就業者로서 特定期間中 休職하였던 사람에 對하여 그 事由에 따라 (i) 疾病 또는 傷害 (ii) 勞動爭議 (iii) 一時解雇 및 (iv) 其他 理由로 分類한다.

(b) 就業者를 賃金就業者와 自營就業者로 區分하고, 實際就業 時間數에 따라 分類한다.

(3) 適切한 定義가 開發되면, 賃金就業者에 關한 統計를 就業의 性格에 따라 定期的으로 作成해야 한다.

- (a) 時間制 (part-time), 常勤制 (full-time)
- (b) 正規, 臨時, 季節 (契約期間基準)
- (c) 正規, 非正規 (報酬規定基準)

(4) 可視的 不完全就業을 測定하기 爲하여는 다음 統計를 定期的으로 作成해야 한다.

(a) 完全就業時間에 未達하는 賃金就業者에 對하여 自意 또는 非自意與否를 區分하고, 完全就業時間未滿 就業理由別로 分類한다.

(b) 自營就業者는 追加就業 可能性 與否別로 分類한다.

(c) 現狀態活動人口의 勞動投入時間比率: 就業日數 또는 半日數, 就業하지 못하였으나 即時就業이 可能했던 日數 또는 半日數, 일도 하지 않았고 即時 就業도 不可能하였던 日數 또는 半日數를 把握한다.

(5) 有意性和 可能性이 있다면 復數職業保有者에 관한 統計를 다음과 같이 定期的으로 作成해야 한다.

(a)(i) 2개 以上の 有給의 일거리를 갖고 있는 就業者, (ii) 有給의 일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自己 또는 家口의 企業에 從事하고 있는 者 및 (iii) 2개 以上の 自己企業을 運營하고 있는 者를 分類 把握.

(b) 復數職業保有者의 性別, 年齡階層, 主業의 職業 및 産業 主業 및 副業의 從事上의 地位 그리고 主業 및 副業의 平素 就業時間과 이를 모두 合計한 總就業時間別로 分類 把握.

失業에 관한 資料

43. 失業動向에 관한 主要統計系列은 적어도 다음의 情報를 包含해야 한다.

(1) 적어도 年2回 男女 失業者數를 다음과 같은 項目으로 分類 把握해야 한다.

(a) 年齡階層別

(b) 前職有無別

(c) 最近 前職의 職業

(d) 最近 前職의 産業(經濟活動分野)

(e) 最近 前職의 從事上の 地位

(f) 失業期間

(g) 地 域

(h) 찾고 있는 일거리의 性格(또는 就業可能性), 찾고 있는 일거리가 賃金就業 인지 自營就業인지, 만일 賃金就業이라면 常勤制(full-time)인지 時間制(Part-time)인지와 常傭, 臨時, 季節의 雇傭인지의 如否

(2) 賃金就業이나 自營就業求職者에 관한 統計는 定期的으로 作成하되, 다음의 事項에 對하여는 別個로 分類 把握되어야 한다.

(a) 求職方法: 公·私立 職業紹介所に 登錄, 雇傭主를 直接面談, 工事場이나 工場을 直接訪問, 新聞廣告를 내거나 應募, 親戚이나 親知에게 付託 等

(b) 失業理由: 적어도 (i) 學校卒業 (ii) 一時解雇 또는 (iii) 其他事由等에 關한 失業理由 統計를 別途로 作成

(3) 適切한 定義가 開發되면, 就業可能者の 非求職理由別 例컨대, 適當한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求職하는 길을 몰라서, 復職待機, 農事질 待機 등으로 分類 別途의 統計를 定期的으로 作成해야한다.

非活動人口에 관한 資料

44. 扶養人口와 豫備勞動力의 規模 및 構成 等を 計測하고, 보다

効率的인 勞動市場政策이나 人力計劃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追加的인 統計를 定期的으로 作成해야한다.

(1) 男女別로 “現狀態의 非活動人口”를 다음과 같은 項目別로 分類한다.

(a) “平常活動狀態” : 지난 1年間 거의 대부분의 期間中 經濟活動에 從事하였음. 지난 1年中 바쁜 季節에만 活動하였음. 지난 1年間 전혀 經濟活動을 하지 않았음.

(b) “機能的範疇” : 家事, 通學, 不勞所得者 및 其他

(2) 狹義의 失業概念을 採擇할 경우, “現狀態의 活動”으로 分類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a) 即時就業이 可能하면서 求職하지 않은 理由

(b) 最近就業經驗 : 전에 일한적이 있음. 전에 일한적이 없음 →
지난 6個月以內, 6~12個月以內, 12個月以前

非經常 統計

就業 및 所得에 관한 資料

45. 就業과 所得에 관한 統計는 적어도 5년에 한번은 特別히 設計한 家口調査에 依하여 蒐集해야 한다.

46. 就業과 所得에 관한 資料는 적어도 다음의 情報가 마련되어야 한다.

(1) 年間平均 賃金就業所得과 自營就業所得을 다음 項目別로 分類하여야 한다.

(a) 性 別

- (b) 年齡階層別
 - (c) 就業期間別
 - (d) 職業別
 - (e) 產業別 (經濟活動部門)
 - (f) 教育程度別
- (2) 賃金就業者와 自營就業者를 性別로 아래項目別로 分類한다.
- (a) 年齡階層別
 - (b) 就業所得別
 - (c) 就業期間別
 - (d) 家口の 關係別
 - (e) 家計所得別

特殊內容에 관한 資料

47. 學業에서 所得活動에로의 轉換方法을 보다 効率的으로 하고, 靑少年의 不當한 就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靑少年들을 就學狀態와 그들의 經濟活動參加에 關聯한 特定 統計를 定期的으로 作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經濟活動人口測定을 目的으로 設定한 最低年齡基準 未滿의 靑少年에 관한 資料를 追加로 蒐集해야 한다.

48. (1) 女性の 開發參與와 男女平等의 增進을 위한 計劃을 보다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女性の 經濟活動參加에 關한 適切한 統計의 基盤이 必要하다. 따라서 이와 關聯하여 經濟活動人口, 就業, 失業, 不完全就業 및 就業所得 등에 관한 統計가 가능한 限 擴大되어 男女別로 作成되어야 한다.

(2) 더우기 女性の 經濟活動參加에 관한 보다 正確한 統計를 얻기 위하여는 이의 計測方法이 典型的인 性屬性으로 因하여 發生될수 있는 偏倚를 統制管理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必要하다면 特別히 考案된 小規模의 方法論的인 調査를 實施하여 이러한 偏倚의 크기, 性格, 源泉 等を 把握하고 또한 이를 줄일 수 있는 適切한 方法을 開發하여야 한다.

49. 個個人的 經濟活動參加는 다른 家口員이나 家口の 環境에 따라 左右되는 境遇가 많으며, 또한 大部分의 나라, 特히 開發國의 農村地域에 있어서는 經濟活動이 家族이나 家口單位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失業이나 就業 및 所得에 관한 統計는 家族 또는 家口에 관한 統計에 依하여 定期的으로 補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失業者를 다른 家口員과의 關係로서 把握을 하거나 家口內의 다른 就業者的 有無 또는 어린이 數에 依하여 把握한다든가 하는 것은 勿論, 家口를 失業者數에 依하여 把握하거나 家族의 生計責任者の 有無와 이들의 性別에 依하여 把握하는 것 等이다.

50. 就業과 失業 및 不完全就業에 관한 보다 改善된 詳細한 情報를 提供하고 또한 複數의 活動이나 限界的 活動을 把握하기 위하여는 經濟活動人口調査의 一環으로 副次標本에 依하여 時間利用 (time - use)에 관한 統計를 定期的으로 蒐集하도록 試圖해야 한다.

51. 非組織化 部門에서의 活動이 就業增加에 着實히 寄與해 왔으며 또한 이 部門의 成長潛在力은 앞으로의 經濟開發計劃이나 人力

計劃樹立에 반드시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이 認定되고 있음으로 各國도 適切한 定義와 分類를 開發하여 都市의 非組織化 部門과 農村의 非農業部門의 經濟活動人口를 把握, 分類하도록 하는 것이 要請된다.

評價와 公表

52. 다른 資料와 마찬가지로 經濟活動人口, 就業, 失業, 不完全就業 및 就業所得에 관한 統計에서도 誤差는 있게 마련이다. 誤差를 最小限으로 줄이기 위하여 精密하게 資料蒐集計劃을 樹立하였고 해도 多少의 誤差는 생긴다. 따라서 結果의 慎重한 解析을 위하여는 資料의 質에 관한 知識이 必要하다. 또한 다음 調査에서의 資料蒐集, 處理 및 推計方法의 改善을 위하여는 資料의 質에 對한 評價가 必要하다. 可能な 限 評價節次는 資料蒐集計劃의 一部分으로 包含 作成되어야 한다.

53.(1) 經濟活動人口, 就業, 失業, 不完全就業 및 就業所得에 관한 統計는 迅速히 그리고 널리 利用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重要한 項目의 集計가 끝나는대로 速報로 公表한 다음 이어서 確定值나 詳細한 內容을 最綜報告形式으로 發表한다.

(2) 可能하다면 보다 詳細한 基礎資料를 컴퓨터 테이프나 大量蓄積 裝置에 收錄하여 一般에게 公開利用되도록 해야 한다.

54. 經濟活動人口, 就業, 失業, 不完全就業 및 就業所得에 관한 統計를 發表할 때에는 그것이 週期的으로 反復되는 것이든 아니면 1

회에 그치는 것이든 資料의 性格을 明示하고 또한 技術上의 解說
을 具體的으로 記述해 놓아야 한다. 特히 이러한 解說에는 範圍
나 對象, 概念과 定義, 資料蒐集方法, 標本調査일 때는 標本の 크기
와 設計內容, 季節調整을 包含한 推定 및 調整方法 그리고 標本
또는 非標本誤差 等 資料의 質에 關하여 記述되어 있어야 함은 勿
論 沿革, 國際基準과의 差異點 및 다른 資料나 統計體系와의 關係
에 對하여도 記述되어야 한다.

